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47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136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조례 제6137호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38호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39호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0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1호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2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2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3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3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4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5호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4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6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7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8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49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0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1호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	59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2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3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4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5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6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7호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59호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0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1호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2호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4호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	9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5호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6호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7호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8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69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0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1호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2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3호 인천광역시 전물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4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5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6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7호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	12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8호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79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0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1호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3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2호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3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3호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4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5호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6호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7호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8호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89호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0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1호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2호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5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3호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94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9

###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11호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61
○ 인천광역시규칙 제3112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63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6호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16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8호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	19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9호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19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1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8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228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3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	2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6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23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63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2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65호 인천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3-1단계 실시계획 공고.열람 .....	2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77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2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8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7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84호 공시송달 공고(국제물류주산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	27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9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277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03호 무연분묘개장 공고(2차) .....	27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0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2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6호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2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3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4호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5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5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9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0

**군 구**

- 인천광역시용진군고시 제2019-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474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4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476

## 조 례

## 인천광역시 조례 (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인천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 상징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징물 중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5조제2항)
- 시장은 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36 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려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기탁자의 기부금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함(제3조)
- 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4조)
- 다. 기부증서를 발급 및 기부자의 명단 체계적 관리(제5조)
- 라.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 지원(제6조)
- 마.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부터 제9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37 호

###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제83조 및 제84조”로 수정하여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범위를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 결산검사 위원회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함(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 등을 정비함(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
- 상위법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함(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38 호

###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결산보고서”를 “결산서”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출자·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함(제14조의2)
-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할 사항을 규정함(제14조의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39 호

###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를 “이 조례는”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출자·출연의 절차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 기타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8. 출자·출연 기관 성과보고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19.7.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사항 및 '19년 시행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수준의 세제지원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9.7.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예정임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종전 감면대상자(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행수준으로 지원함(제2조)
-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일정 감면을 내에서 각 조례로 취득세 감면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년 시행 법 개정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년까지만 연장('21년부터 법으로 감면율 규정)되었으므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2020.12.31.)을 명확히 규정함(제3조)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대상을 개인주소지분 균등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19년 시행 「지방세법」 제77조에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 제8조제3호의 만 19세 미만 감면규정을 삭제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0 호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

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 “대하여 법 제38조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를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등분”을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제2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 수 조정 및 위원의 자격 구체화(제3조)
- 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 신설(제6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등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제8조)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제12조)
-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1 호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분석·평가하고 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인천광역시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소집회의를 서면심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 심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집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존속기한) ①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 조례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유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인천시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제4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제7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교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10조)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5조)
-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16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2 호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한계를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소재산업, 로봇산업, 전자통신기술, 항공 기술 등의 융합체인 나는 자동차 파브(PAV) 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및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시장에게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제3조)
- 파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함(제4조 ~ 제5항)
-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3 호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의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을 “비행장치를”로 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함 (제22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기능 신설함. (제23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 우선구매 촉진 홍보
- 위탁 및 관리 운영 (제24조)
  -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유통지원센터 운영 위탁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4 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중전의 제2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제24조(중전의 제22조)제2항은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로, “관리 및 운영에”를 “운영에”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정이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농어촌민박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농어촌민박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5 호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

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

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매관리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치매관리사업 중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4호, 제6조의2)
-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 조치사항 등 반영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6 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시정 현안에 맞춰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제명 등)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의2)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2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제13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7 호

###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제5조제1호”와 “제5조제2호”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5조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3항의 “법무”를 “도시재생(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설치 되도록 유도 하기 위하여 시장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건축주는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때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8조의2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8 호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①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 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른 대행 요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 모 요 청 사			
	요 구 사 항			
	공 모 요 청 작 품 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1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49 호

###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용어를 정비(제7조 및 제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0 호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폐지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별도 조례위임 근거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1 호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  
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정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 정비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제3조제2항)
-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정비(제4조제1호 및 별표 1)
- 직접과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별표 1)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2 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법 제36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구배”를 “경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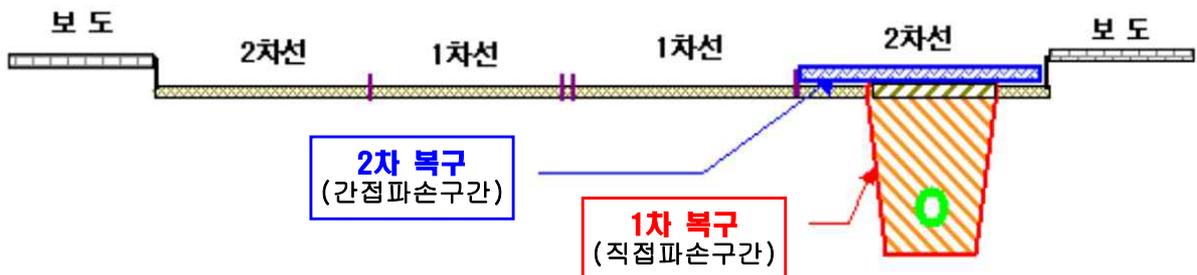
-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 1)

##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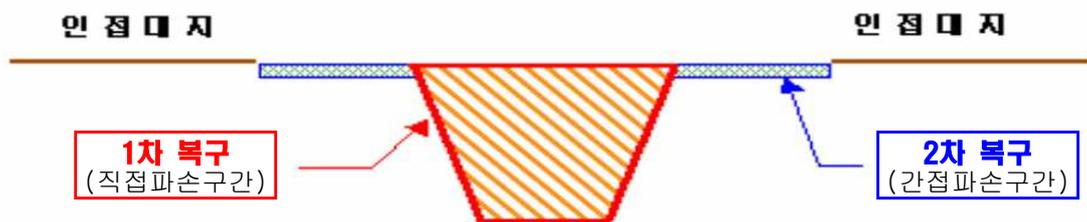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2)

##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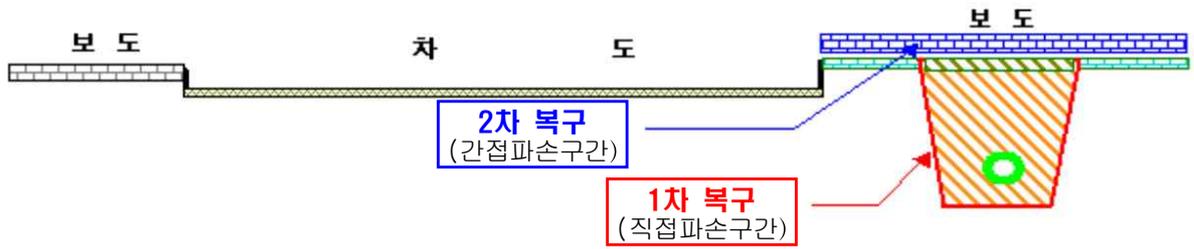
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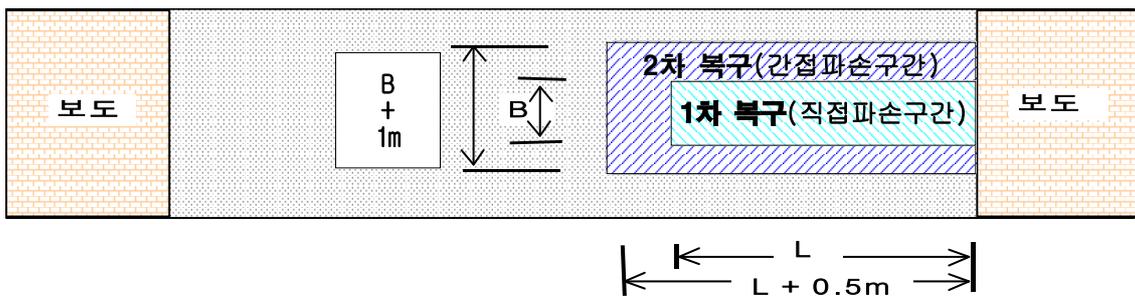
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 (1차 복구)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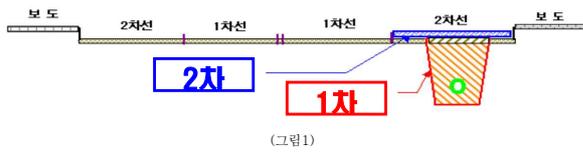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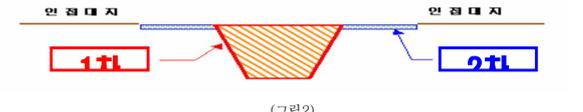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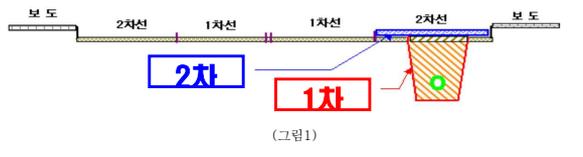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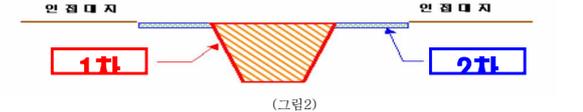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연장 20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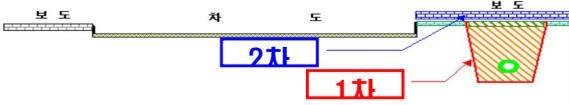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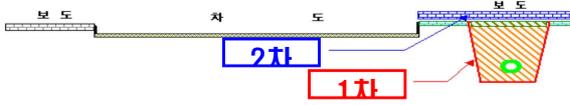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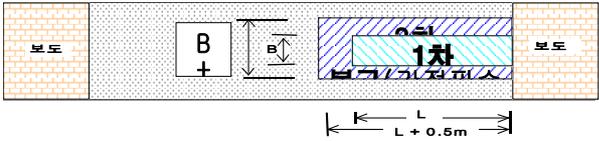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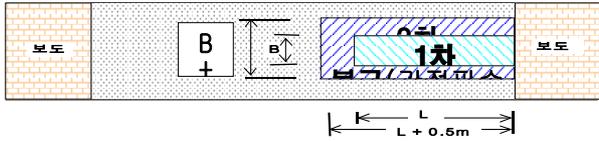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p><b>[별표 1]</b>  <b>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b></p> <p>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b>구배</b>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b>구배</b>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b>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1)</p> <p>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b>구배</b>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b>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2)</p>	<p><b>[별표 1]</b>  <b>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 관련)</b></p> <p>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b>경사</b>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b>경사</b>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b>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1)</p> <p>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b>경사</b>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b>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2)</p>

현행	개정안
<p>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p> <p>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p> <p>나.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p> <p><b>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p> <p>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3)</p>	<p>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p> <p>가.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 × 1.2미터로 한다.</p> <p>나.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p> <p><b>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p> <p>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3)</p>
<p>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p> <p>가.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p> <p><b>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p> <p>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연장 20m 이하)</p> <p>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4)</p>	<p>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p> <p>가. 굴착표준 최적경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p> <p><b>나. 직접파손비용은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으로 산정한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b></p> <p>다.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p> <p>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연장 20m 이하)</p> <p>바. 복구표준단면</p>  <p>(그림4)</p>
<p>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 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p>	<p>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 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p>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인용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 중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 광역교통정책관을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균형계획과, 교통정책과로 변경된 부서명으로 정비(제11조제3항)
- 위원회 등의 수당 지급 근거 조례의 제명을 변경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비(제20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3 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를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로, “광역교통정책관”을 “교통정책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원 및 과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6조제2항)
  -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4 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제1조)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5 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장학생 선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의무조항과 사문화된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사항 반영(제5조제1항4호)
  -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를 “그 밖의 유공자의 자녀”로 변경
- 장학생 의무 조항 일부삭제 반영(제10조)
  -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를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로 변경
-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이 일반회계운영으로 사문화 조항 삭제 반영(제11조)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 조치)의 제목을 명확히 변경 반영(제12조)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 조치)”를 “제12조(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6 호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를 “그 밖의 유공자의 자녀”로 한다.

제10조 중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중 “장학기금의 확보”를 “장학재원의 확보”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조문의 간결화를 통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및 장학생 선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문의 자구수정 변경사항 반영(제2조제1호)
  -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세계 속의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으로 변경
- 법률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로 변경사항 반영(제6조제2항)
  - ☞ 조례 정비 통보(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3799 ; 2019.2.14)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7 호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세계 속의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남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33조, 제38조, 제42조 및 제58조)
  -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8 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중 “남구”를 각각 “미추홀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5조제7항)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59 호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행정차지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관리수탁 기준 및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경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기준 마련(제20조제3항 신설)
-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에 대한 이용료 수입의 배분 근거 규정 정비(제22조제5항)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제2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요율 감경 추가(제28조제5항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0 호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를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8제1항제25호”를 “영 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 2가 삭제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4조)
  -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인증된”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1 호

###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의”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이 없는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설물 사용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2 호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489호, 2007.5.25. 전부개정)에 따라, “납골”이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제4조)
  - “납골당”을 “봉안시설”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3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 중 “납골당”을 “봉안시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00,000원
2.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3.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00,000원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무자	270,000원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

개정이유

- 2003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던 자치행정모니터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 활동내용 및 구성인원이 다수 중복되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모니터에 자치행정모니터를 흡수·통합하여 운영 중으로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4 호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상 인정 범위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의 직무 중에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소방 안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2조제1호)
  - 제16조의3 추가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반영(제7조)
  - “일반회계”를 “소방특별회계”로 명칭 변경(제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5 호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를 “제16조, 제16조의2, 16조의3 및 제17조”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를 “소방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2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6 호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7 호

### 인 천 광 역 시    주 택 의    소 방 시 설    설 치 에    관 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주택소방시설”을 각각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소방시설”을 각각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제4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주택소방시설”을 “주택

용 소방시설”로 한다.

별표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소화 기구	소화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li> <li>2.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li> </ol>
	자동확산소화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할 것. 다만, 주택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할 것</li> <li>2.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li> </ol>
단독경보형감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할 것)</li> <li>2.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li> <li>3.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li> <li>4.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li> </ol>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 변경사항 반영(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8 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10시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19. 7.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사항을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사항 반영(제6조제3항)
- 2019. 7.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제7조)
-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분야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를 확대 개정(별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69 호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중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제나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표2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액감면 대상 중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6조제1항 관련)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	독립유공자로 수급자	국가유공자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으로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65세부터 69세까지 노인으로 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 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인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4조 개정으로 대상(중증장애인→장애인) 확대 및 명칭 변경되고,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이 탈시설-자립생활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시설·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변경
-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 확대 반영(제1조, 제2조제1호 등)
  -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로 변경
- 지원센터 명칭 변경 반영(제7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
- 시설 퇴소자에 지원 근거규정 마련 (제1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0 호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체험홈”을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최초 체험”을 “체험”으로 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립정착 생계비”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10.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증장애여성”을 “여성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각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년 이상 실무”를 “실무”로 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6.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주택 포함)사업

제10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를 “제2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전환”을 “통합”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5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7조 중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을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지원 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2.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초기 정착금
3. 자립정착 생계비
4.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19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로, “시설”을 “센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2조)
  -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1 호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되므로 공적 게재 시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적 게재대상 변경(제5조제3호 및 제4호)
  -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 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2 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각각 “희생·공헌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전물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대한 규정 삭제(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3 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 배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반영( 제 3조)
  - “제3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변경
- 환수 방법을 규정한 문구 삭제(제7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4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 중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를 “환수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학교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15339호」(2017.12.30.) 일부개정에 의거 지정 운영중인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개정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없어져 폐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교정화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4조제1항제2호)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을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으로 변경
- 일부 금연구역 지정 폐지사항 반영(제4조제1항제6호및제7호)
  -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아파트,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폐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5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정이유

- 2018. 7. 1 자치구 명칭변경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 2018. 7. 1자치구 명칭변경(제6조)
  -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 제13조 [별표1]에 명칭 및 위치변경
  -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용현동)”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용현동)”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6 호

### 인 천 광 역 시 여 성 관 련 시 설 의 설 치 와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용현동)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 공포안

개정이유

- 조례의 적용기간(2008. 1. 1.~2008. 12. 31.)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7 호

인 천 광 역 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 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특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2018. 7. 1 자치구 명칭변경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3조)

인천광역시회의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특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8 호

인천광역시 특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특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일본식 표기 법령의 일제정비를 통해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정양’을 ‘요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본식 표기인 정양을 요양으로 변경사항 반영(제6조제3호)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을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79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정양”을 “요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정하고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려 것임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없는 손해배상관련 규정 삭제(제19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0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개정이유

- 관련 사업이 완료되고 조례 유효기간(2018.12.31.)이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1 호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개정이유

- 관련 사업이 완료되고, 조례의 유효기간(2015.12.31.)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 것임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2 호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이유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정하고,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직종에 대한 이중규정의 삭제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개정(제12조제2항)
  - “계리”를 “처리”로 변경
- 경기직종 규정 삭제(제18조제1항)
  - 별표1 삭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3 호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기직종은 별표1과 같이 전국대회 직종을 중심으로 시 기능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을 실시한다”를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직종을 중심으로 시 기능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제5조, 제7조제1항)
  - 동물등록제 제외 시 전제조건으로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추가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 조정(“2천 마리 이상”을 “1천 마리 이상”으로 변경)
- 법률 인용 조항 수정(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변경(이 외 3건)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4 호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를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천 마리 이상”을 “1천 마리 이상”으로,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15조제7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 인용 조항 수정(제7조제2항)
  -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변경
  -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5 호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유

- 조문 정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문정비 사항 반영(제5조제1항)
  - “전문자격을 갖춘 농기계담당지도사”를 “농기계담당지도사”로 변경
  - “기능직(기계직),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6 호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문자격을 갖춘 농기계담당지도사, 기능직(기계직), 무기계약직”을 “농기계담당지도사,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농기계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농번기 농민의 농사활동에 편리를 도모하기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

주요내용

- 조문정비 사항 반영(제8조제1항)
  - “임대기간을 한차례만 연장”을 “임대기간을 연장”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7 호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임대기간을 한차례만 연장”을 “임대기간을 연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1조, 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8 호

###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16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89 호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 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지득한’을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 일본식 한자용어 정비(제6조제2호)
  -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0 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차장법」 개정 반영(제2조제6호)
  - “노상·노외주차장”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으로 변경
- 나.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를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로 변경(제2조제8호)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제3조제1항제5호)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1 호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노상·노외주차장”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제8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를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94조제5항제5호”을 “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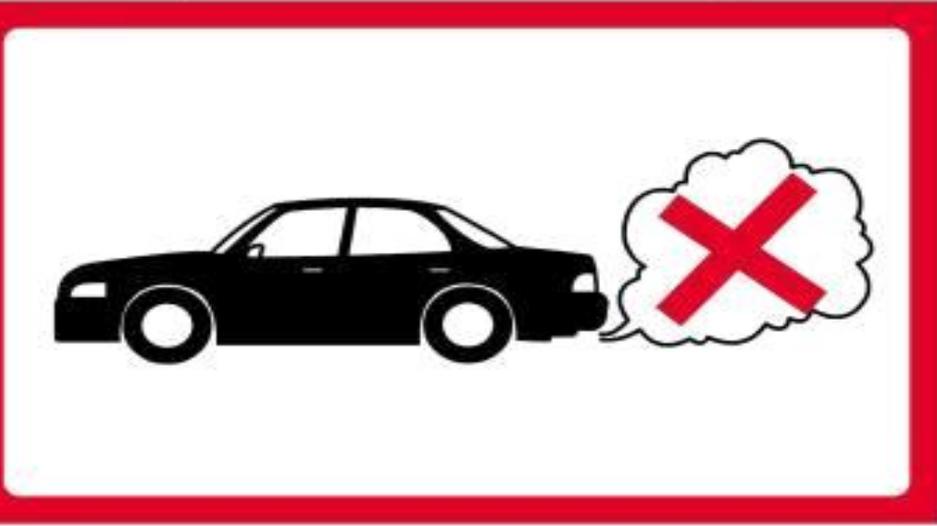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제3조제2항 관련)

<p style="text-align: center;"><b>공회전 제한지역</b> (IDLING RESTRICTED AREA)</p>	<p style="text-align: center;">130 mm</p>
	<p style="text-align: center;">250 mm</p>
<p>※ 유의사항</p> <p>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p> <p>2. 따라서 이 지역에서 3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군수)</p>	<p style="text-align: center;">220 mm</p>
<p style="text-align: center;">550mm</p>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일본식 한자어를 시민이 알기쉽게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문 중 일본식 용어인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함. (제12조, 제19조, 제20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2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계기”를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법령상 근거 없는 용어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용어 정비(제5조제1항)
  - 조례에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용어를 삭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3 호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를 “사항을 준수하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됨(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18조제2항)
  -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94 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명칭 및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명칭 및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 명칭 변경사항 반영  
(제1조 및 제2조)
-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제3조)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11 호

###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자도입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진흥관실”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한다.

제2조 중 “진흥관실”을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진흥관실”이라 한다)”로,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진흥관실의 기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같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예능연구수당 및 예능조정수당을 예능수당으로 통합, 보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18년 12월 26일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의 예능연구수당을 월 9만원 인상 후 예능조정수당과 통합하여 ‘예능수당’으로 명칭 변경함(제10조, 제17조제2항)
-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 및 예능수당 초임호급 책정표를 변경하고, 예능조정수당지급표는 삭제함(별표 13 및 별표 14, 현행 별표 15 삭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12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예능연구수당 및 예능조정수당)”을 “(예능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능연구수당”을 각각 “예능수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예능연구수당, 예능조정수당”을 “예능수당”으로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7조제2항,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3]

##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급	수 당 액
1	330,000
2	340,000
3	350,000
4	360,000
5	370,000
6	380,000
7	390,000
8	400,000
9	410,000
10	420,000
11	430,000
12	440,000
13	450,000
14	460,000
15	470,000
16	480,000
17	490,000

호 급	수 당 액
18	500,000
19	510,000
20	520,000
21	530,000
22	540,000
23	550,000
24	560,000
25	570,000
26	580,000
27	590,000
28	600,000
29	610,000
30	620,000
31	630,000
32	640,000
33	650,000
34	660,000

[별표 14]

## 예능수당 초임호급 책정표 (제10조제2항 관련)

직 책 별	초임 호급	비 고
1 ~ 3 등급 연봉계약자를 제외한 간부단원	10호급	
4 ~ 6 등급 상임단원		
7 등급 상임단원	1호급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6호

##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97호(2018.04.30.)로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532),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6. 3.

## 인 천 광 역 시 장

### I.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면 적: 75,084.3m<sup>2</sup>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성 명: 주식회사 삼정유앤디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2016.11.14. ~ 2020.11.13.
- 시행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75,084.3	75,084.3	-	100.0	100.0	-		
주거 용지	소 계	30,122.9	29,778.9	감)344.0	40.1	39.7	감)0.4	
	공동주택용지	26,290.0	25,946.0	감)344.0	35.0	34.6	감)0.4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시설용지	3,832.9	3,832.9	-	5.1	5.1	-	준주거지역
상업 용지	소 계	13,970.1	13,970.1	-	18.6	18.6	-	
	상업용지	13,970.1	13,970.1	-	18.6	18.6	-	일반상업지역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0,991.3	31,335.3	증)344.0	41.3	41.7	증)0.4	
	도 로	15,630.8	15,974.8	증)344.0	20.8	21.2	증)0.4	
	주차장	1,404.0	1,404.0	-	1.9	1.9	-	1개소
	어린이공원	5,284.0	5,284.0	-	7.0	7.0	-	1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6,669.0	6,669.0	-	8.9	8.9	-	1개소
연결녹지	2,003.5	2,003.5	-	2.7	2.7	-	1개소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	-	-	75,099	75,099	75,099	75,099	-	-	-	-	-	-
1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	587-6	장	29,061	29,061	29,061	29,061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2	"		587-287	도	6,394	3,628	6,394	3,628	-	국 (국토해양부)	-	-	-	-
3	"	587-287	587-293	잡	-	2,010	-	2,010	-	국 (국토해양부)	-	-	-	-
4	"		587-294	잡	-	756	-	756	-	국 (국토해양부)	-	-	-	-
5	"	587-36	587-36	구	858	858	858	858	-	국 (국토해양부)	-	-	-	-
6	"	587-37	587-37	장	31,393	31,393	31,393	31,393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7	"	587-50	587-50	장	5,862	5,862	5,862	5,86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8	"	587-184	587-184	잡	102	102	102	10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9	"	587-202	587-202	장	512	512	512	51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10	"	587-203	587-203	장	602	602	602	602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11	"	587-210	587-210	장	144	144	144	144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12	"	587-211	587-211	장	171	171	171	171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에스동 2101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주식회사 삼정유엔디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억원)	비용부담 주체	비고
용현학익 7블록	①독배로 확폭 (대로2-10)	•L=282(구역내 연장) •B=30m~50m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	2	사업 시행자	
	소 계		2	-	-
	②남측도로 개설 (대로3-187)	•L=229(구역내 연장) •B=29m~32m	2.5	사업 시행자	구역 외 구간의 비용부담은 1블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정산
	소 계		2.5	-	-
합 계			4.5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
- 열람내용: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따로 붙임

## II.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공장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 면 적: 75,084.3m<sup>2</sup>

### 4. 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주)삼정유앤디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21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썬타)

### 5.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11.14. ~ 2020.11.13.

###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따로 붙임

## 8. 인가된 관계 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5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
- 열람내용: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

## 10.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용현학익 7블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75,084.3	-	75,084.3	100.0
주거지역	54,892.0	-	54,892.0	73.1
제3종일반주거	46,128.8	-	46,128.8	61.4
준주거	8,763.2	-	8,763.2	11.7
상업지역	14,853.3	-	14,853.3	19.8
일반상업	14,853.3	-	14,853.3	19.8
자연녹지지역	5,339.0	-	5,339.0	7.1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 1) 교통시설(변경)

##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	1,202	15,630.8	1	197	2,127.9	3	682	7,943.4	2	323	5,559.5
	변경	6	1,202	15,974.8	1	197	2,127.9	3	682	7,943.4	2	323	5,903.5
대로	기정	3	857	12,694.8	-	-	-	2	628	7,418.1	1	229	5,276.7
	변경	3	857	13,038.8	-	-	-	2	628	7,418.1	1	229	5,620.7
소로	기정	3	345	2,936	1	197	2,127.9	1	54	525.3	1	94	282.8
	변경	3	345	2,936	1	197	2,127.9	1	54	525.3	1	94	282.8

주) 대로3개 노선 연장 및 면적은 확폭 구간임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	30 (30~50)	주간선 도로	9,200 (282)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8	일반 도로	-	건고2706 66.09.22	
변경	대로	2	10	30 (30~70)	주간선 도로	9,200 (282)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6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2	7	30 (30~45)	보조 간선도로	9,727 (346)	광2-1	대1-20	일반 도로	-	건고45 71.01.29	
기정	대로	3	187	29 (29~32)	보조 간선도로	1,635 (229)	대2-10	광3-5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47 (17.10.23.)	
변경	대로	3	187	29 (29~38)	보조 간선도로	1,635 (229)	대2-10	광3-5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47 (17.10.23.)	
기정	소로	1	113	10	국지 도로	197	대2-10	대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기정	소로	2	432	8	국지 도로	54	소1-113	학익동 587-6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기정	소로	3	712	3	보행자 전용도로	94	대3-187	소1-113	특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주) 연장의 ( )는 구역 내 연장, 폭원의 ( )는 변화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0	대로2-10	○노선변경 -폭원: 30m(30~50m) ⇒ 30m(30~70m) -연장: 9,200m(282m) -종점: 동춘동 광2-8 ⇒ 동춘동 광2-6	○ 변화폭원 및 종점표기 오기에 따른 정정
대로3-187	대로3-187	○노선변경 -폭원: 29m(29~32m) ⇒ 29m(29~38m) -연장: 1,635m(229m)	○ 공동주택지 주진입부 일원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증가

주) 연장의 ( )는 구역 내 연장이며, 폭원의 ( )는 변화폭원 임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1,404	-	1,404	인고 제2017-275 (17.11.20.)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늘봄 공원	어린이 공원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5,284	-	5,284	인고 제2017-275 (17.11.20.)	-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연결 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2,003.5	-	2,003.5	인고 제2017-275 (17.11.20.)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	미추홀구 학익동 587-50번지 일원	6,669	-	6,669	인고 제2017-275 (17.11.20.)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1) 어린이공원(늘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 ○ 공원 총괄 조서(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구 분	기 정						변 경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5,284.0	2,313.2	-	-	-	-	5,284.0	2,465.0	-	-	-	-		
공 원 시 설	소계	2,313.2	2,313.2	-	-	-	-	2,465.0	2,465.0	-	-	-	-	
	기 반 시 설	소계	1,050.6	1,050.6	-	-	-	-	1,202.4	1,202.4	-	-	-	-
		도로	931.5	931.5	-	-	-	-	1,083.3	1,083.3	-	-	-	-
		광장	119.1	119.1	-	-	-	-	119.1	119.1	-	-	-	-
	휴양시설	374.0	374.0	-	-	-	-	374.0	374.0	-	-	-	-	
	유희시설	703.3	703.3	-	-	-	-	703.3	703.3	-	-	-	-	
	운동시설	166.5	166.5	-	-	-	-	166.5	166.5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18.8	18.8	-	-	-	-	18.8	18.8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2,970.8	-	-	-	-	-	2,819.0	-	-	-	-	-		

## ○ 시설조서(변경)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기 정					변 경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 닥 면 적 (㎡)	연면적 (㎡)				바 닥 면 적 (㎡)	연면적 (㎡)	
합	계		학약동	5,284.0	2,313.2	.	.	.	5,284.0	2,465.0	.	.	.
기본 시설	계			1,050.6	1050.6	.	.	.	1,202.4	1,202.4	.	.	.
	도 로 (소계)			931.5	931.5	.	.	.	1,083.3	1,083.3	.	.	.
	광 장 (소계)			119.1	119.1	.	.	.	119.1	119.1	.	.	.
	진입광장1			119.1	119.1	.	.	.	119.1	119.1	.	.	.
휴양 시설	계			374.0	374.0	.	.	.	374.0	374.0	.	.	.
	휴게소1			102.8	102.8	.	.	.	102.8	102.8	.	.	.
	휴게소2			58.5	58.5	.	.	.	58.5	58.5	.	.	.
	휴게소3			212.7	212.7	.	.	.	212.7	212.7	.	.	.
유희 시설	계			703.3	703.3	.	.	.	703.3	703.3	.	.	.
	어린이 놀이터1			303.9	303.9	.	.	.	303.9	303.9	.	.	.
	어린이 놀이터2			246.4	246.4	.	.	.	246.4	246.4	.	.	.
	유아 놀이터1			153.0	153.0	.	.	.	153.0	153.0	.	.	.
운동 시설	계			166.5	166.5	.	.	.	166.5	166.5	.	.	.
	체육시설			166.5	166.5	.	.	.	166.5	166.5	.	.	.
편익 시설	계			18.8	18.8	.	.	.	18.8	18.8	.	.	.
	편익시설			18.8	18.8	.	.	.	18.8	18.8	.	.	.
기타 시설	계			2,970.8	.	.	.	.	2,819.0	.	.	.	.
	녹지 및 기타			2,970.8	.	.	.	.	2,819.0	.	.	.	.

## ○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323.6) 344.3	(1,050.6) 1,083.3				
당초 변경	소로	계			111.4 111.4	630.9 630.9				
당초 변경		(1) 2	(6) 1	1.8~10.0 1.8~10.0	99.3 99.3	511.8 511.8	주도로 주도로	휴2-1 휴2-1	소1-8 소2-2	
당초 변경		(1) 2	(7) 2	9.5 9.5	12.1 12.1	119.1 119.1	주도로 주도로	부지남측 부지남측	소1-7 소2-1	
당초 변경		계			(212.2) 232.9	(419.7) 452.4				
당초 변경		(1)	1 1	2.0 2.0	92.4 92.4	184.8 184.8	산책로 산책로	소1-8 소2-2	휴2-3 휴2-3	
당초 변경		(1)	2 2	2.0 2.0	15.0 15.0	29.9 29.9	산책로 산책로	산1-1 산1	산1-1 산1	
당초 변경	산책로	(1)	3 3	1.5 1.5	8.0 8.0	12.0 12.0	산책로 산책로	소1-7 소2-1	휴2-2 휴2-2	
당초 변경		(1)	4 4	1.5~3.2 1.5~3.2	49.8 49.8	107.8 107.8	산책로 산책로	휴2-3 휴2-3	산1-5 체4-1	
당초 변경		(1)	5 5	1.5~3.2 1.5~3.2	47.0 47.0	85.2 85.2	산책로 산책로	산1-4 산4	소1-7 소2-1	
신설			6	1.5	17.4	26.1	산책로	산1-4	부지동측	
신설			7	2.0	3.3	6.6	산책로	소2-1	부지서측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총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A-1	A	-1	40,246.5	A-1	26,290	○공동 주택용지	A-1	A	-1	39,902.5	A-1	25,946	○공동주택 진 입부 일원 가감속 차로 확보
A-2		-2		A-2	6,669	○공공문화 체육시설	A-2		-2		A-2	6,669	
A-3		-3		A-3	5,284	○어린이 공원	A-3		-3		A-3	5,284	
-		-		-	2,003.5	○연결녹지 (획지계획 제외)	-		-		-	2,003.5	
B-1	B	-1	13,970.1	B-1	13,970.1	○상업용지	B-1	B	-1	13,970.1	B-1	13,970.1	
C-1	C	-1	5,236.9	C-1	2,164	○준주거 시설용지	C-1	C	-1	5,236.9	C-1	2,164	
C-2		-2		C-2	1,668.9	○준주거 시설용지	C-2		-2		C-2	1,668.9	
C-3		-3		C-3	1,404	○주차장 용지	C-3		-3		C-3	1,404	

○ 공동주택용지(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A-1	A	-1	40,246.5	A-1	26,290	○공동주택용지	A-1	A	-1	39,902.5	A-1	25,946	○공동주택 진 입부 일원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C-1	C	-1	5,236.9	C-1	2,164	
C-2		-2		C-2	1,668.9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B-1	B	-1	13,970.1	B-1	13,970.1	

○ 공공시설용지(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A-2	A	-2	40,246.5	A-2	6,669	○공공문화체육 시설	A-2	A	-2	39,902.5	A-2	6,669	○공동주택 진입부 일원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가구 면적 변경

○ 공공시설용지(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C-3	C	-3	5,236.9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지 일원	1,404	○주차장

○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A-3	A	-3	40,246.5	A-3	5,284	○어린이공원	A-3	A	-3	39,902.5	A-3	5,284	○공동주택 진입부 일원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가구 면적 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미추홀 구 학익동 587-37 번지 일원	용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3%이하(부대복리시설 제외)	
			용적률	○ 기준: 220%이하	
		○ 허용: 250%이하			
			높 이	○ 공동주택: 40층 이하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색 채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단, 아파트주동 이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공동주택	주차장 지하배치	○ 주차장의 95%이상 지하 배치	10%
	건폐율	○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 시	5%
		○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 시	7%
		○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 시	10%
		※ 부대 및 복리시설은 산정대상 제외	-
①생태환경 조성계획 등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1.5%
	투수성 바닥처리	-	1.5%
	벽면녹화	-	1.5%
	비오톱 조성 (생물서식공간)	-	2%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2%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1.5%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설치 이용 시	-	시설별 2%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 시	-	2%이내	
②에너지 절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 용적률의 5% 이내
③공공시설 (공익기여)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①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 이내임

##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미추홀구 학익동 587-6번 지 일원	허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불 허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추가 불허 건축물 - 주거복합건축물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 이	○ 1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	
		형 태	○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 저층부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을 구성 ○ 차양시설은 건물 내 설치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을 갖도록 형성 ○ 옥상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은 차폐 및 옥상녹화 유도 ○ 보행안전을 위한 저층부 야간조명 권장	
		색 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1	미추홀구 학익동 587-37 번지 일원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li> <li>○ 판매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8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li> <li>○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 및 녹지형 완충공간 으 로 조성</li> <li>○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시설배치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벽면선을 통일시켜 연속적인 보행공간 창출</li> <li>○ 건축물 옥상부분은 옥상녹화 및 옥상공원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li> <li>○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li> <li>○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li> </ul>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1-113호선 변으로부터 1.0m</li> <li>-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li> <li>-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li> </ul> </li> <li>※소로1-113호선 전면공지는 보도조성</li> </ul>			

○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2	미추홀구 학익동 587-50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li> </ul>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li> <li>-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li> </ul>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3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 전용건축물 포함)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어린이공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3	미추홀구 학익동 587-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공원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원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공동주택 용지	대지내 공 지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상의 주차장을 확보	
B-1	상업용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상의 주차장을 확보	
		부가차로 계획	○ 독배로 교통 연속류 확보 및 소로1-113의 교통혼 잡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진출입을 위한 부가차 로(1개차로:3m)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진입차량과 기 타 차량을 분리토록 하며 주변 교통망과 연계된 유기적 인 교통계획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부문별 계획: ③교통처리계획 중 부가차로운영계획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준주거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li> <li>○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li> </ul>	
A-2	공공·문화 체육시설	대지내 공 지	-	
A-3	어린이 공원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C-3	주차장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li> </ul>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7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6. 3.

### 인천광역시장

####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는 사항임

####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163번길 3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용유배수지)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163번길 3 일원	-	25,568	25,568	-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결정 사유
1	수도공급설비 (용유배수지)	· 신설 - 면적: 25,568m <sup>2</sup>	· 장래 증가될 급수수요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배수지 신설 · 간접배수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합리화 도모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28호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통·도로·철도·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모집분야 : 교통, 도로, 도시계획, 철도

2. 모집인원 : 00명

3. 위원임기 : 2년(2019. 7. 1. ~ 2021. 6. 30.)

4. 응모자격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단, 여성은 전임강사급 이상)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책임자급) 이상

마. 기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5. 제출서류

가.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추천서) 1부.

※지원서(추천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5.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6. 3(월) ~ 6. 14(금) 18:00 까지

나. 제출처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다. 제출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주소 : (우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교통정책과

- 전화 : (032) 440-3856                      - 이메일 : saltjin@korea.kr

※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6. 선정기준

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로 우리시 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나. 전문분야, 소속기관, 연령대 등을 적정하게 배분

다. 여성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전문가 우대

라. 인천광역시 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실적, 경험 우수자 우대

마. 기타 연임기간, 타 위원회 중복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

##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다. 적격자 심사 후에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 됩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전화 032-440-385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첨부 : 1.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추천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1부.

〈서식 1〉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추천서)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사 진
성 명			지원분야	교통·도로·철도· 도시계획·건축		
성 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				
	자 택	(우)				
연 락 처	직 장	Tel	Fax			
	휴대폰			E-mail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주 요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속기관	직위(급)	담당업무		
연 구 수 행 실 적	과제명	과제수행기관	총수행 기간	비고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 별			비고	

## 〈서식 2〉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	--	-----	--

본인은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직업, 학력, 주요경력 등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2년(해축 시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관계부서에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단체), 연락처

- 정보의 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황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해축 시 관련 자료 삭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위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29호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3호(2019. 2. 2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6. 3.

## 인 천 광 역 시 장

### I. 개발계획 수립(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문학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면적: 81,250m<sup>2</sup>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 시행자: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1년 12월 26일 ~ 2019년 10월 31일
  - 변경) 2011년 12월 26일 ~ 2020년 10월 31일
- ※ 변경사유: 지구 외 기반시설 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연장
- 시행방법: 환지방식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81,250.0	100.0	
주 거 용 지	48,137.4	59.2	
기 반 시 설 용 지	31,237.1	38.5	
도 로	15,332.1	18.9	
보 행 자 도 로	78.0	0.1	
공 원	6,970.0	8.6	어린이1, 소1
녹 지	7,573.0	9.3	완충4
주 차 장	713.0	0.9	1개소
공 공 · 문 화 체 육 시 설	571.0	0.7	1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1,875.5	2.3	
종 교 용 지	634.5	0.8	1개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241.0	1.5	

7. 인구 및 주택배분계획: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층수	용적률	세대수		인구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48,213.9	<b>48,137.4</b>			992	<b>992</b>	2,500	<b>2,500</b>	
공동주택	A-1	1BL	60~85m <sup>2</sup> 미만	4,957.4	<b>4,957.4</b>	5층이하 (필로티층수포함)	200%이하	100	<b>98</b>	252	<b>247</b>
			85m <sup>2</sup> 초과					-	-	-	-
			소계					100	<b>98</b>	252	<b>247</b>
		4BL	60~85m <sup>2</sup> 미만	11,975.0	<b>11,975.0</b>			228	<b>246</b>	574	<b>619</b>
			85m <sup>2</sup> 초과					-	-	-	-
			소계					228	<b>246</b>	574	<b>619</b>
	5BL	60~85m <sup>2</sup> 미만	11,885.0	<b>11,885.0</b>	244	<b>228</b>	614	<b>574</b>			
		85m <sup>2</sup> 초과			-	-	-	-			
		소계			244	<b>228</b>	614	<b>574</b>			
	계			28,817.4	<b>28,817.4</b>			572	<b>572</b>	1,440	<b>1,440</b>
	A-2	60~85m <sup>2</sup> 미만	2BL	2,033.9	<b>1,957.4</b>	5층이하 (필로티층수포함)	200%이하	48	<b>48</b>	121	<b>121</b>
			7BL	2,257.5	<b>2,257.5</b>			42	<b>42</b>	106	<b>106</b>
			8BL	2,343.7	<b>2,343.7</b>			56	<b>56</b>	141	<b>141</b>
			9BL	2,063.0	<b>2,063.0</b>			48	<b>48</b>	121	<b>121</b>
			10BL	2,045.6	<b>2,045.6</b>			48	<b>48</b>	121	<b>121</b>
			12BL	2,809.1	<b>2,809.1</b>			72	<b>72</b>	182	<b>182</b>
			13BL	1,601.7	<b>1,601.7</b>			40	<b>40</b>	101	<b>101</b>
			14BL	1,306.4	<b>1,306.4</b>			32	<b>32</b>	81	<b>81</b>
15BL			897.3	<b>897.3</b>	16			<b>16</b>	41	<b>41</b>	
계			17,358.2	<b>17,281.7</b>					402	<b>402</b>	1,015
A-3	9BL	60~85m <sup>2</sup> 미만	2,038.3	<b>2,038.3</b>	3층이하 (필로티층수포함)	180%이하	18	<b>18</b>	45	<b>45</b>	
세대당 인구			세대당 인구수 : 2.52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인구밀도			307인/ha(순밀도 518인/ha)								

※ 변경사유

1. 총 세대수(인구) 변경 없이 공동주택용지 블록 간 세대수 조정 (변경)
2. 기정 고시문 면적 오기 정정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 없음

- 게재생략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소로 1-1 도로개설공사 】**

- 위 치 : 북동측 주거용지 진입도로
- 시설내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폭(B)	10m	소로 1-1
연 장(L)	377m	
면 적(A)	2,260㎡ (구역내=872㎡, 구역외=1,388㎡)	

-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지구 외 도로 교통개선대책 】**

- 위 치 : ① 북측 진입도로 문학길 및 매소홀로 526번길  
② 소1-1호선 및 소2-8호선
- 시설내역 : ① 중앙선 및 주정차금지 도로 도색  
② 노상주차장 도로 표면 도색
-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게재생략

## II.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면적: 81,250m<sup>2</sup>

### 4. 시행자: 변경 없음

- 시행자: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조용구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 5.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1년 12월 26일 ~ 2019년 10월 31일
- 변경) 2011년 12월 26일 ~ 2020년 10월 31일
- ※ 변경사유: 지구 외 기반시설 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연장

###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조서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4487)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인가조건: 세부내용 생략):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문학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1,2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0호 (2006.5.29)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81,250	100.0	
주거 지역	소계	81,25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1,250	10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17	2,008	15,410.1	2	486	1,989.0	11	1,417	12,866.1	4	105	555.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7	2,008	15,410.1	2	486	1,989.0	11	1,417	12,866.1	4	105	555.0

주) 도로면적 및 연장은 사업구역 내의 면적 및 연장임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사항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05	소로1-2	소로1-1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78-49호	구역외
기정	소로	2	3	6~8	국지도로	62	소로1-2	소로1-1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78-49호	구역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627	소로1-2	소로3-2	일반도로		인천시고시 제87-1204호	구역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77	소로2-6	소로2-3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09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9	소로1-1	문학동161-4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04	소로1-1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0	소로1-1	소로2-2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9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76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2	소로2-6	소로2-8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598	소로2-6	소로2-1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63	소로2-3	소로2-11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03	소로2-3	소로2-5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72	소로2-6	소로2-10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3	소로2-8	문학동143-1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50	소로2-8	문학동 55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3	소로3-48	소로3-2	일반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기정	소로	3	4	4	특수도로	19	소로3-2	문학동80-13	보행자 전용도로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 2) 주차장

##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표 면 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노외주차장	남구 문학동 80번지 일원	713	2011.12.26. (인교 제011-336호)	

## 나. 공간시설

## 1) 공원

## 가)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m <sup>2</sup> )		시가화구역(m <sup>2</sup>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	6,970		
어린이공원	1	2,205		
소 공원	1	4,765		

나)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삼신공원	소공원	남구 문학동 산20-1번지일원	4,76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①	문학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남구 문학동 152번지 일원	2,20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학공원은 결정 조서에서 제외

2) 녹 지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7,573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161-1번지 일원	1,04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147-1번지 일원	3,775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81-2번지 일원	2,572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남구 문학동 178-3번지 일원	181	2011.12.26. (인고 제011-336호)	

4.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가. 문학 어린이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m <sup>2</sup> )	시설면적 (m <sup>2</sup>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계	2,205	891	-	-	-	33		
공 원 시 설	기반 시설	계	549	549	-	-	-	
		도로	366	366	-	-	-	
		광장	183	183	-	-	-	
	조경시설	90	90	-	-	-	1	
	휴양시설	-	-	-	-	-	6	
	유희시설	166	166	-	-	-	5	
	운동시설	86	86	-	-	-	4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17		
녹지 및 기타	1,314	1,314	-	-	-	-	녹지율(59.6%)	
시설율(%) (법정 60%이하)	(891 ÷ 2,205) × 100 = 40.4%							
건폐율(%) (법정 5%)	-							

2)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05	891					33	
기반시설	소계			549	549						
	도로		문학동152번지	366	366						
	광장	가	문학동152번지	183	183						
조경시설	소계			90	90					1	
	화계	나	문학동152번지	90	90						
	파고라	①	문학동152번지	-	-					(1)	
휴양시설	소계			-	-					6	
	평의자	②	문학동152번지	-	-					(3)	
	연식의자	③	문학동152번지	-	-					(3)	
유희시설	소계			166	166					5	
	놀이터	다	문학동152번지	166	166					-	
	조합놀이대	④	문학동152번지	-	-					(1)	
	바람개비자전거	⑤	문학동152번지	-	-					(2)	
	시소	⑥	문학동152번지	-	-					(1)	
	그네	⑦	문학동152번지	-	-					(1)	
운동시설	소계			86	86					4	
	체력단련장	라	문학동152번지	86	86					-	
	체력단련시설	⑧	문학동152번지							(4)	
관리시설	소계									17	
	종합안내판	⑨	문학동152번지							(1)	
	시설안내판	⑩	문학동152번지							(1)	
	공원표지석	⑪	문학동152번지							(1)	
	공원등	⑫	문학동152번지							(14)	
기타시설	소계			1,314	1,314						
	녹지 및 기타			1,314	1,314						

3) 도로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66					
신설	소계					78					
	소로	3	1	4	19.5	78	진입로	남측경계	산책로3		
	소계					288					
	산책로			1	2	55.0	110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2	
				2	2	34.0	68	진입로	북측경계	산책로3	
				3	2	50.0	100	연결로	소로3-1	산책로3	
				4	1	4.0	4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1	
				5	2	3.0	6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3	

## 나. 삼신 소공원

##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765	727	-	-	-	36		
공원 시설	계	677	677	-	-	-		
	기반 시설	도로	506	506	-	-	-	
	광장	171	171	-	-	-	-	
	조경시설	50	50	-	-	-	-	
	휴양시설	-	-	-	-	-	11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8	
	편의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17	
녹지 및 기타	4,038	4,038	-	-	-	-	녹지율(84.7%)	
시설율(%) (법정 20%이하)	$(727 \div 4,765) \times 100 = 15.3\%$							
건폐율(%) (법정 5%)	-							

## 2)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765	727					36	
기반 시설	소계			677	677						
	도로		문학동산20-1번지	506	506						
	광장	가	문학동산20-1번지	171	171						
	광장 1	가-1	문학동산20-1번지	(151)	(151)						
	광장 2	가-2	문학동산20-1번지	(20)	(20)						
조경 시설	소계			50	50						
	초화원	나	문학동산20-1번지	50	50						
휴양 시설	소계									11	
	파고라	①	문학동산20-1번지							(1)	
	평의자	②	문학동산20-1번지							(3)	
	등의자	③	문학동산20-1번지							(7)	
운동 시설	소계									8	
	체력단련 시설	④	문학동산20-1번지							(8)	
관리 시설	소계									17	
	공원등	⑤	문학동산20-1번지							(17)	
기타 시설	소계			4,038	4,038						
	녹지 및 기타			4,038	4,038						

3) 도로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337.3	506				
신설	소계				337.3	506				
	산책로	1	1.5	114.7	172	진입로	광장 가-2	초화원		
		2	1.5	8.0	12	진입로	북서측경계	초화원		
		3	1.5	7.3	11	진입로	광장가-2	산책로1		
		4	1.5	92.6	139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6		
		5	1.5	22.7	34	연결로	산책로4	광장가-1		
6		1.5	92	138	연결로	초화원	광장가-1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정 획지구도	비고
주거용지	300m <sup>2</sup>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계획 내용 반영</li> <li>단독·연립용지 (A-2, A-3)</li> </ul>

1) A-1용도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분	기정				변경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위치	면적(m <sup>2</sup> )				위치	면적(m <sup>2</sup> )										
A-1	1	4,957.4	①	4,957.4	A-1	1	4,957.4	①	1,358.7										
								②	881.5										
								③	888.2										
								④	891.8										
								⑤	937.2										
	4	11,975.0	①	2,439.5		4	11,975.0	①	2,439.5	②	4,438.2								
										④	4,192.1								
										⑥	585.8								
										⑦	319.4								
										5	11,885.0	①	4,030.2	5	11,885.0	①	5,567.3	③	1,145.5
																		④	2,892.6
																		⑤	2,279.6
	②	1,537.1																	
				③		1,145.5													
				④		2,892.6													
			⑤	2,279.6															

※ 변경사유: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획지 계획 변경

## 2) A-2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 분	기 정				도면번호	변 경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위 치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A-2	2	3,162.9	①	400.0	A-2	2	3,162.9	①	400.0	
			④	283.2				④	283.2	
			⑤	274.9				⑤	274.9	
			⑥	699.3				⑥	699.3	
			⑧	300.0				⑧	300.0	
	7	2,257.5	①	300.0		7	2,257.5	2,257.5	①	300.0
			②	317.1					②	317.1
			③	300.0					③	300.0
			④	300.0					④	300.0
			⑤	392.8					⑤	392.8
			⑥	300.0					⑥	300.0
			⑦	347.6					⑦	347.6
	8	2,343.7	①	395.2		8	2,343.7	2,343.7	①	395.2
			②	395.2					②	395.2
			③	353.3					③	353.3
			④	300.0					④	300.0
			⑤	300.0					⑤	300.0
			⑥	<b>300.0</b>					⑥	<b>600.0</b>
			⑦	<b>300.0</b>						
	9	4,101.3	①	318.9		9	4,101.3	4,101.3	①	318.9
			②	324.1					②	324.1
			③	376.5					③	376.5
			④	370.1					④	370.1
			⑤	373.4					⑤	373.4
			⑥	300.0					⑥	300.0
	10	2,045.6	①	<b>408.9</b>		10	2,045.6	2,045.6	①	<b>708.9</b>
			②	300.0					②	300.0
			③	359.7					③	359.7
			④	302.8					④	302.8
			⑤	374.2					⑤	374.2
			⑥	<b>300.0</b>						
	12	2,809.1	①	300.0		12	2,809.1	2,809.1	①	300.0
			②	300.0					②	300.0
			③	300.0					③	300.0
			④	300.0					④	300.0
			⑤	429.5					⑤	429.5
			⑥	300.0					⑥	300.0
			⑦	293.2					⑦	293.2
			⑧	293.2					⑧	293.2
			⑨	293.2					⑨	293.2
	13	1,601.7	①	300.0		13	1,601.7	1,601.7	①	300.0
			②	300.0					②	300.0
			③	354.3					③	354.3
			④	323.7					④	323.7
			⑤	323.7					⑤	323.7
14	1,306.4	①	300.0	14	1,306.4	1,306.4	①	300.0		
		②	300.1				②	300.1		
		③	359.1				③	359.1		
		④	347.2				④	347.2		
15	897.3	①	530.7	15	897.3	897.3	①	530.7		
		②	366.6				②	366.6		

※ 변경사유: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획지 계획 변경

## 3) A-3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A-3	9	4,101.3	⑦	308.4	
			⑧	308.3	
			⑨	308.3	
			⑩	308.3	
			⑪	431.1	
			⑫	373.9	

## 4) B용도 (종교집회장)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B	2	3,162.9	③	634.5	

## 5) C용도 (교육연구시설)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C	17	6,006.0	①	895.2	
			③	345.8	

## 6) D용도 (공공문화체육시설)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sup>2</sup> )	
D	2	3,162.9	②	571.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변경

【 기 정 】

구 분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1-① 2-①,④,⑤,⑥,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용도	허용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li> </ul>																																
			A-2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li> <li>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li>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주거용도</li> </ul>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1, A-2 : 200% 이하</li> <li>A-3 : 18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li>(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li>A-3(9가구 ⑦~⑫획지) : 3층 이하(필로티 포함)</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li> <li>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li> <li>(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li>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5층에 한하여 교통소음차단체 설치</li> <li>(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A-2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li>A-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가 구 별 세 대 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세대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A-1</td> <td>1가구</td> <td>100</td> </tr> <tr> <td>4가구</td> <td>228</td> </tr> <tr> <td>5가구</td> <td>244</td> </tr> <tr> <td rowspan="7">A-2</td> <td>2가구</td> <td>48</td> </tr> <tr> <td>7가구</td> <td>42</td> </tr> <tr> <td>8가구</td> <td>56</td> </tr> <tr> <td>9가구</td> <td>48</td> </tr> <tr> <td>10가구</td> <td>48</td> </tr> <tr> <td>12가구</td> <td>72</td> </tr> <tr> <td>13가구</td> <td>40</td> </tr> <tr> <td rowspan="3">A-3</td> <td>14가구</td> <td>32</td> </tr> <tr> <td>15가구</td> <td>16</td> </tr> <tr> <td>9가구</td> <td>18</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100	4가구	228	5가구	244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A-3	14가구	32	15가구	16	9가구	18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100																																
4가구	228																																			
5가구	244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A-3	14가구	32																																		
	15가구	16																																		
	9가구	18																																		

• A-1용지 : 획지별 세대수는 가구별 전체 세대수를 획지면적 비율로 배분  
 • A-2용지 : 획지당 8세대 이하  
 • A-3용지 : 획지당 3세대 이하

【 변 경 】

구 분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1-①~⑤ 2-①,④,⑤,⑥,⑧ 4-①,②,④,⑥,⑦ 5-①,③,④,⑤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도 용 허 용 A-1 A-2 A-3 불 허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부속시설		
			A-2 A-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A-1, A-2 : 200% 이하 • A-3 : 18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A-3(9가구 ⑦~⑫획지) : 3층 이하(필로티 포함)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5층에 한하여 교통소음차단재 설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A-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A-2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A-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가 구 별 세 대 수		구 분	세대수		
A-1	1가구	①획지	26		
		②획지	18		
		③획지	18		
		④획지	18		
		⑤획지	18		
		4가구	①획지	47	
			②획지	90	
			④획지	87	
			⑥획지	14	
			⑦획지	8	
		5가구	①획지	107	
			③획지	22	
			④획지	55	
				⑤획지	44
		A-2	2가구	48	
7가구	42				
8가구	56				
9가구	48				
10가구	48				
12가구	72				
13가구	40				
14가구	32				
15가구	16				
A-3	9가구	18			

• A-1용지 : 획지별 세대수는 가구별 전체 세대수를 획지면적 비율로 배분  
• A-2용지 : 획지당 8세대 이하  
• A-3용지 : 획지당 3세대 이하  
\* 추후 가구별 획지의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세대수는 금회 변경 세대수 이하로 한다.

※ 변경사유 1.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획지별 세대수 배분  
2.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따른 획지번호 수정

2) 종교용지: 변경 없음

구분	위치 (가구-획지)	구분	계획내용
B	2-③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축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 변경 없음

구분	위치 (가구-획지)	구분	계획내용
C	17-①, ③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축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4)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변경 없음

구분	위 치 (가구-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D	2-②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li>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li> <li>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li>제11호 노유자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li>(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li> <li>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li> <li>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li> <li>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li> </ul>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 기 정 】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A-1 A-2 A-3	1-① 2-①, ④, ⑤, ⑥, 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 ②	대지내 공 지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li> <li>• 공공보행통로지정(4, 5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방향 중앙 획지(4가구 ①~⑤, ⑦) / 5가구 ①, ③, ④)에 대하여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폭 3M) 지정</li> <li>- 소1-2호선 및 소2-3호선과 접하여 있는 획지에 대해서는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공공보행통로 지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ul> </li> <li>•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지하시설물 포함)은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예외)</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소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li> </ul>	
			-	
B C D	2-③ 17-①, ③ 2-②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름)</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li> </ul>	

## 【 변 경 】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A-1 A-2 A-3	1-①~⑤ 2-①,④,⑤, ⑥,⑧ 4-①,②,④, ⑥,⑦ 5-①,③,④, ⑤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대지내 공 지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li> <li>• 공공보행통로지정(4, 5가구) -동서방향 중앙 획지(4가구 ①,②,④,⑦획지 / 5가구 ①,③, ④획지)에 대하여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폭 3M) 지정</li> <li>-소1-2호선 및 소2-3호선과 접하여 있는 획지에 대해서는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공공보행통로 지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li> <li>•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지하시설물 포함)은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예외)</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소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li> </ul>	
B C D	2-③ 17-①, ③ 2-②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름)</li> </ul>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li> </ul>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li> </ul>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li> </ul>	

※ 변경사유: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따른 획지번호 수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6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9호(2018.7.30.)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 변경사유

- 주민편익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미매각 부지인 근린 생활시설용지(Cn)와 지식기반서비스용지(Ks3, Ks4)용지 간 위치 변경 및 신설부지(Ks11)에 대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 투자유치 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지식기반 서비스용지(Ks5)에 제조시설 추가 수용을 고려한 건축물 허용 용도 비율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b>합계</b>	<b>3,541,285.3</b>	-	<b>3,541,285.3</b>	<b>100.0</b>	<b>100.0</b>
주 택 건 설 용 지	330,753.1	-	330,753.1	9.3	9.3
공 동 주 택	330,753.1	-	330,753.1	9.3	9.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6,144.2	증) 95.9	26,240.1	0.7	0.7
상 업 시 설 용 지	105,558.6	-	105,558.6	2.9	2.9
주 상 복 합 용 지	97,558.6	-	97,558.6	2.7	2.7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	8,000.0	0.2	0.2
산 업 시 설 용 지	1,234,785.6	감) 95.9	1,234,689.7	34.9	34.9
지식기반제조용지	911,908.1	-	911,908.1	25.8	25.8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17,881.6	감) 95.9	217,785.7	6.1	6.1
지식기반R&D용지	104,995.9	-	104,995.9	3.0	3.0
연 구 시 설 용 지	183,057.3	-	183,057.3	5.2	5.2
교 육 연 구 용 지	183,057.3	-	183,057.3	5.2	5.2
공 공 기 반 시 설 용 지	1,660,986.5	-	1,660,986.5	47.0	47.0
도	863,950.8	-	863,950.8	24.4	24.4
도	862,450.0	-	862,450.0	24.3	24.3
보행자전용도로	1,500.8	-	1,500.8	0.1	0.1
공	569,027.5	-	569,027.5	16.1	16.1
육 지 부	569,027.5	-	569,027.5	16.1	16.1
공 공 녹 지	116,842.4	-	116,842.4	3.3	3.3
학 교	55,573.4	-	55,573.4	1.6	1.6
종 교 시 설	7,874.5	-	7,874.5	0.2	0.2
충 전 · 주 유 소	2,499.9	-	2,499.9	0.1	0.1
기 타 등 등	45,218.0	-	45,218.0	1.3	1.3
주 차 장	19,792.8	-	19,792.8	0.6	0.6
공 공 청 사	10,598.8	-	10,598.8	0.3	0.3
복 지 시 설	6,000.1	-	6,000.1	0.2	0.2
공 급 처 리 시 설	8,826.3	-	8,826.3	0.2	0.2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21(2016.11.14.)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나. 면적: 3,541,285.3m<sup>2</sup>

##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20년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lt;붙임1&gt;

##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같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위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근린생활 시설(Cn)	Cn	Cn	26,144.2	-	Cn	26,144.2	-	획지분할 가능
	Cn1	Cn1	-	18,604.5	Cn1	-	18,604.5	획지분할 가능
	Cn2	Cn2	-	7,635.6	Cn2	-	7,635.6	획지분할 가능
소계	-	-	26,144.2	26,240.1	-	26,144.2	26,240.1	-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폐지	Cn	Cn	26,144.2	Cn	26,144.2	○ 지식기반서비스(Ks3, Ks4) 용지 간 위치 변경으로 획지 신설·폐지
신설	Cn1	Cn1	18,604.5	Cn1	18,604.5	
신설	Cn2	Cn2	7,635.6	Cn2	7,635.6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지식 기반 제조업	Ki8	Ki8	68,250.1	68,250.1	Ki8	68,250.1	68,250.1	획지분할가능
	Ki9	Ki9	55,927.1	55,927.1	Ki9	55,927.1	55,927.1	
	Ki10	Ki10	79,109.1	79,109.1	Ki10	-	-	획지분할가능
					1~7	68,968.6	68,968.6	
					-8	10,140.5	10,140.5	-
	Ki11	Ki11	144,810.1	144,810.1	Ki11	144,810.1	144,810.1	획지분할불허
	Ki12	Ki12	44,074.4	44,074.4	Ki12	44,074.4	44,074.4	획지분할가능
	Ki13	Ki13	29,220.3	29,220.3	-1	18,220.3	18,220.3	획지분할가능
					-2	11,000.0	11,000.0	획지분할불허
	Ki14	Ki14	273,675.0	273,675.0	Ki14	273,675.0	273,675.0	획지분할불허
Ki15	Ki15	185,672.7	185,672.7	Ki15	185,672.7	185,672.7		
Ki16	Ki16	31,169.3	31,169.3	-1	17,946.3	17,946.3		
				-2	13,223.0	13,223.0		
소계	-	911,908.1	911,908.1	-	911,908.1	911,908.1	-	
지식 기반 서비스	Ks1	Ks1	23,365.2	23,365.2		23,365.2	23,365.2	획지분할가능
	Ks2	Ks2	29,798.2	29,798.2	Ks2	29,798.2	29,798.2	
	Ks3	Ks3	18,604.5	-	Ks3	18,604.5	-	
	Ks4	Ks4	7,635.6	-	Ks4	7,635.6	-	
	Ks5	Ks5	22,693.3	22,693.3	Ks5	22,693.3	22,693.3	획지분할불허
	Ks6	Ks6	24,434.4	24,434.4	Ks6	24,434.4	24,434.4	
	Ks7	Ks7	28,722.4	28,722.4	Ks7	28,722.4	28,722.4	
					-1	4,818.3	4,818.3	
					-2	10,955.2	10,955.2	
					-3	4,854.8	4,854.8	
					-4	4,081.9	4,081.9	
Ks8	Ks8	37,052.9	37,052.9	-5	3,304.9	3,304.9		
				-6	3,158.9	3,158.9		
				-7	3,025.6	3,025.6		
				-8	2,853.3	2,853.3		
Ks10	Ks10	25,575.1	25,575.1	Ks10	25,575.1	25,575.1	획지분할가능	
Ks11	Ks11	-	26,144.2	Ks11	-	26,144.2	획지분할가능	
소계	-	217,881.6	217,785.7	-	217,881.6	217,785.7	-	
지식기반 R&D	Kr1	Kr1	26,109.2	26,109.2	-1	5,056.5	5,056.5	획지분할불허
					-2	5,264.9	5,264.9	
					-3	5,386.9	5,386.9	
					-4	10,400.9	10,400.9	획지분할가능
	Kr2	Kr2	35,886.4	35,886.4	Kr2	35,886.4	35,886.4	획지분할가능
Kr4	Kr4	43,000.3	43,000.3	Kr4	43,000.3	43,000.3		
소계	-	104,995.9	104,995.9	-	104,995.9	104,995.9	-	
총계	-	1,234,785.6	1,234,689.7	-	1,234,785.6	1,234,689.7	-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폐지	Ks3	Ks3	18,604.5	Ks3	18,604.5	○ 근린생활시설용지(Cn) 간 위치 변경으로 획지 신설·폐지
폐지	Ks4	Ks4	7,635.6	Ks4	7,635.6	
신설	Ks11	Ks11	26,144.2	Ks11	26,144.2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Cn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li> <li>○ 판매시설(다목에 한함)</li> <li>○ 업무시설(단, 1층 불허, 오피스텔 전층 불허)</li> <li>○ 운동시설(가목에 한함)</li> </ul>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60% 이하
		변경	○ 50% 이하
	용적률	기정	○ 350% 이하
		변경	○ 400% 이하
	높이	기정	○ 60m 이하
		변경	○ 100m 이하
	<변경> Cn1 Cn2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li> <li>○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li> <li>-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li> </ul> </li> <li>○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li> <li>○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li> <li>○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li> <li>-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li> </ul> </li> <li>○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li> <li>○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토록 함)</li> </ul>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p>○ 건축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가로변</li> <li>-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li> <li>- 9m 건축한계선: 35m이상 간선가로변</li> <li>- 9m 저층부벽면지정선: 35m이상 간선가로(광로3-37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하</li> </ul> </li> </ul>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 건축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 건축한계선: 20m이하 가로변</li> <li>- 6m 건축한계선: 20m초과 35m미만 가로변</li> <li>- 9m 건축한계선: 35m이상 간선가로변</li> <li>- 9m 저층부벽면지정선: 35m이상 간선가로(광로2-20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 이상~5층 이하</li> </ul> </li> </ul>
<p>&lt;기정&gt; Cn</p> <p>&lt;변경&gt; Cn1 Cn2</p>	기타 사항	<p>■ 교통처리계획</p> <p>○ 차량진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가로(폭 35m 이상)변 및 각각부 5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li> <li>-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li> </ul> <p>○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p> <p>○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p> <p>○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다만 소규모 획지(600㎡ 미만) 및 자주식 주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li> </ul> <p>■ 대지내 공지계획</p> <p>○ 전면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li> </ul> <p>○ 차폐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li> </ul> <p>○ 공공보행통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서비스용지와 교육·연구시설용지를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li> </ul> <p>■ 대지내 조명·옥외광고물·기타 경관계획</p> <p>○ 조명·옥외광고물·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p>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구분		계획내용		
<p>&lt;기정&gt;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p>	<p>지식 기반 제조업 (Ki)</p>	<p>허용 용도</p>	<p>○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5% 이상 - 공 장(Ki9·11·12·13)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부용도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허용함 -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공장의 범위 이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Ki8: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p>	
		<p>불허 용도</p>	<p>○허용용도 이외의 용도</p>	
		<p>지식 기반 서비스 (Ks)</p>	<p>허용 용도</p>	<p>○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7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amp;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Ks1, Ks2의 부용도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이하</p>
			<p>불허 용도</p>	<p>○허용용도 이외의 용도</p>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용도 지식 기반 R&D (Kr)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0% 이상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연구소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건축연면적의 4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구,아 파트형 공장), 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1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함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건폐율	기정 ○ 40%이하 ○ 50%이하	Ki8 Ki9, Ki11, Ki12, Ki13-2	- Ks1~Ks4, Ks7	- Kr1(-2,-3,-4), Kr2, Kr4
		변경 ○ 40%이하 ○ 50%이하	Ki8 Ki9, Ki11, Ki12, Ki13-2	- Ks1~Ks2, Ks7	- Kr1(-2,-3,-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용적률	기정 ○ 200%이하 ○ 250%이하 ○ 300%이하 ○ 350%이하 ○ 400%이하	Ki9, Ki12, Ki13-2	-	-
			Ki11	-	-
			Ki8	-	Kr1(-2,-3,-4), Kr2, Kr4
			-	Ks7	-
			-	Ks1~Ks4	-
			-	-	-
		변경 ○ 200%이하 ○ 250%이하 ○ 300%이하 ○ 350%이하 ○ 400%이하	Ki9, Ki12, Ki13-2	-	-
			Ki11	-	-
			Ki8	-	Kr1(-2,-3,-4), Kr2, Kr4
			-	Ks7	-
			-	Ks1~Ks2	-
			-	-	-
높이	기정 ○ 170m이하 ○ 100m이하 ○ 90m 이하 ○ 80m 이하 ○ 60m 이하	-	Ks2	-	
		-	Ks1, Ks3~Ks4	-	
		Ki8	-	-	
		-	Ks7	-	
		Ki9, Ki11, Ki12, Ki13-2	-	Kr1(-2,-3,-4), Kr2, Kr4	
		-	-	-	
	변경 ○ 170m이하 ○ 100m이하 ○ 90m 이하 ○ 80m 이하 ○ 60m 이하	-	Ks2	-	
		-	Ks1	-	
		Ki8	-	-	
		-	Ks7	-	
		Ki9, Ki11, Ki12, Ki13-2	-	Kr1(-2,-3,-4), Kr2, Kr4	
		-	-	-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서터 :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Ki, Ks, Kr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Ks5 ~ Ks6  <변경> Ks5 ~ Ks6	용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 (Ks)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Ks5	용도	지식기반서비스업(Ks)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R&amp;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li> </ul> </li> <li>-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ul> </li> </ul> </li> <li>○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li> <li>- 판매시설(다목에 한함)</li> <li>- 노유자시설(나목 제외)</li> <li>- 운동시설(가목에 한함)</li> </ul> </li> </ul>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R&amp;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li> </ul> </li> <li>-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공장에 한하여 부용도 비율(20% 이하) 만큼 추가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된 비율 만큼 부용도는 허용되지 않음(공장은 부용도 비율 포함 시 50% 미만임)</li> <li>·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ul> </li> </ul> </li> <li>○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li> <li>- 판매시설(다목에 한함)</li> <li>- 노유자시설(나목 제외)</li> <li>- 운동시설(가목에 한함)</li> </ul> </li> </ul>
			변경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li> <li>○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li> </ul>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Ks5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li> <li>○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 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li> <li>○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li> <li>○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li> <li>-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li> </ul> </li> <li>○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li> <li>-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li> </ul> </li> <li>○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li> <li>○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li> <li>○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li> <li>-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li> <li>-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li> <li>-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li> </ul> </li> </ul> </li> </ul>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정> Ks10 <변경> Ks10 Ks11	용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 (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R&amp;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li> </ul> </li> <li>-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li> </ul> </li> </ul> </li> <li>○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li> <li>- 판매시설(다목에 한함)</li> <li>- 노유자시설(나목 제외)</li> <li>- 운동시설(가목에 한함)</li> </ul> </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8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li> <li>○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li> <li>○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li> <li>○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li> <li>○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li> <li>-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li> </ul> </li> <li>○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li> <li>-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li> </ul> </li> <li>○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li> <li>○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도록함)</li> <li>○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li> </ul>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li> <li>-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li> <li>-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li> <li>-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li> </ul> </li> </ul> </li> </ul>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8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9호(2019.1.16.)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7번지(청라A4블록) 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 5. 2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 청라A4블록 공동주택(외국인 임대)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변경) 대표이사 박용필 → 김태호

가. (주) 시티건설 대표이사 김태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390-1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7번지(청라 A4블록)(변경 없음)

나. 대지면적: 20,041.8㎡(변경 없음)

다. 연면적: 45,015.3267㎡(증12.2221㎡)

라. 규모: (변경 없음)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17층 / 6개동 / 270세대

· 84A형 112세대, 84B형 79세대, 84C형 79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1개동

4. 사업기간: (변경)

가. 2019. 02. ~ 2021. 01. → 2019. 06. ~ 2021. 07.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변경 없음)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33호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장

##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9-4	부평 문화원	인천시 부평구 굴포로 151	○ 2019년도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지원	99	인천 서울	2019.6.3.~11.30 (5개월)
						2019.6.3.~11.30 (5개월)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관 (☎032-440-33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60호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 인천광역시장

####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제320236호	(주)티에스에스 최 인 흥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07번길 23(항동7가)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월 (2019.5.29. ~ 2019.8.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63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4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장

가. 심의일시 : 2019. 5. 23.(목) 14: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12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12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t;별첨&gt;

## 2019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위치 및 건물명	연번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고
				가결	부결	
1. 서구 오류동 인천오류지구 45블럭 1로트 외 9필지	1	조각	보금자리	○		
2. 미추홀구 송의동 76-12번지 외 2필지	2	조각	유기체 2019_8	○		(권고사항) 부리부분을 안전하게 등글게 처리
3. 서구 가정동 597-1 인천가정 택지개발지구 내 1BL	3	조각	판타지	○		(권고사항) 틈을 좁게 해서 안전하게 제작
4. 서구 가정동 2-1002외 2필지	4	조각	행복한 하루	○		
5. 중구 운서동 3098-2	5	회화	돌아서니 옥구슬이 있네	○		
	6	회화	이슬비 내리는 버스정거장에 나는 서있다	○		
	7	회화	run-빛 속으로	○		
	8	회화	run-봄	○		
	9	회화	무엇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		
	10	회화	거닐다-우주 속 존재	○		
	11	회화	흐름-진달래	○		
12	회화	깊은고요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65호

## 인천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3-1단계 실시계획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인천가족공원)3-1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0 .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10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공원)사업
- 명 칭 : 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원 총면적 : 1,681,139㎡
- 당초시행면적(3-1단계 사업) : 247,441㎡ 변경시행면적 : 214,668㎡
- 사업내용(규모) : 관계도서 참조(게시 생략)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이후
- 당초준공예정일 : 2020. 12. 31. 변경 준공일 :2021.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별첨”****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노인정책과, 032-440-2834 남동구 정각로 27)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건축부, 032-440-5252 미추홀구 한나루로607)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노인정책과, 032-509-6912 부평구 부평대로 168)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편입토지 조서

용 지 조 서(기정)

NO	소재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80,703	247,441.3				
1	부부평구동	산15-2	임	2,574	2,222	산림청			
2	부부평구동	산 15-4	임	992.0	908.0	인천시 부평구			
3	부부평구동	산 15-5	임	99.0	99.0	인천시 부평구			
4	부부평구동	산 15-6	임	298.0	298.0	인천시 부평구			
5	부부평구동	산 15-7	임	99.0	99.0	인천시 부평구			
6	부부평구동	산15-14	임	16,462	15,630	인천광역시			
7	부부평구동	산17-1	임	10,809	10,542.3	이*진 외 11인			
8	부부평구동	산18	임	27,273	9,737	장*철 외 13인			
9	부부평구동	산 43-2	임	3,682.0	3,682.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1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10	부부평구동	산 43-6	임	1,612.0	1,612.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24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11	부부평구동	산 44-1	임	30,121.0	30,121.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1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12	부부평구동	산 44-30	임	2,718.0	2,718.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2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13	부부평구동	산 45-1	임	31,754.0	31,754.0	이** 외1	서울종로구명륜동 1가36-18	인천교사 전력 인 공 사	인천남동구 경인로674( 간석동)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14	부부평구동	산 45-4	임	264.0	264.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부 평구 부평동1	서울 중구 소공동 70	인천교 통 공 사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15	부부평구동	산 49-3	임	8,865.0	985.0	산림청			
16	부부평구동	산 49-4	임	1,710.0	805.0	산림청			
17	부부평구동	산 52-1	임	14,876.0	14,876.0	산림청			
18	부부평구동	산 52-5	임	1,587.0	1,587.0	인천시 부평구			
19	부부평구동	산 52-6	임	4,661.0	4,661.0	산림청			
20	부부평구동	산 52-7	임	1,190.0	1,190.0	인천시 부평구			

## 용 지 조 서(기정)

NO	소재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1	부평구 부평동	산 52-8	임	34,920.0	46.0	산림청			
22	부평구 부평동	산 52-15	임	856.0	856.0	산림청			
23	부평구 부평동	산 52-26	임	22,671.0	21,740	산림청			
24	부평구 부평동	산 52-27	임	723.0	485.0	산림청			
25	부평구 부평동	산 52-29	임	581.0	581.0	산림청			
26	부평구 부평동	산 52-30	임	3,139.0	3,139.0	산림청			
27	부평구 부평동	산 53-1	임	27,956.0	27,956.0	산림청			
28	부평구 부평동	산 53-2	임	99.0	99.0	인천시 부평구			
29	부평구 부평동	산 53-3	임	595.0	595.0	인천시 부평구			
30	부평구 부평동	산 54-4	임	2,876.0	1,810.0	인천광역시			
31	부평구 부평동	산 54-7	임	198.0	198.0	인천시 부평구			
32	부평구 부평동	산 54-8	임	298.0	298.0	인천시 부평구			
33	부평구 부평동	산 54-9	임	198.0	198.0	산림청			
34	부평구 부평동	산 54-10	임	118,048.0	52,791.0	산림청			
35	부평구 부평동	산 54-11	임	1,289.0	186.0	인천시 부평구			
36	부평구 부평동	산 54-28	임	4,610.0	2,673.0	산림청			

## 용 지 조 서(변경)

NO	소재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28,943. 0	214,668. 0				
1	부평구 부평동	산 15-4	임	992.0	908.0	인천시 부평구			
2	부평구 부평동	산 15-5	임	99.0	99.0	인천시 부평구			
3	부평구 부평동	산 15-6	임	298.0	298.0	인천시 부평구			
4	부평구 부평동	산 15-7	임	99.0	99.0	인천시 부평구			
5	부평구 부평동	산 43-2	임	3,682.0	3,682.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1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6	부평구 부평동	산 43-6	임	1,612.0	1,612.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24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7	부평구 부평동	산 44-1	임	30,121.0	30,121.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1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8	부평구 부평동	산 44-30	임	2,718.0	2,718.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2 인	서울 중구 소공동 70		
9	부평구 부평동	산 45-1	임	31,754.0	31,754.0	이** 외1	서울중로구명륜동 1가36-18	인천교 통공사 한국전 력공사	인천남동구 경인로674( 간석동)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10	부평구 부평동	산 45-4	임	264.0	264.0	재단법인관정 이**재단외1	서울 중구 소공동 70	인천교 통공사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11	부평구 부평동	산 49-3	임	8,865.0	985.0	산림청			
12	부평구 부평동	산 49-4	임	1,710.0	805.0	산림청			
13	부평구 부평동	산 52-1	임	14,876.0	14,876.0	산림청			
14	부평구 부평동	산 52-5	임	1,587.0	1,587.0	인천시 부평구			
15	부평구 부평동	산 52-6	임	4,661.0	4,661.0	산림청			
16	부평구 부평동	산 52-7	임	1,190.0	1,190.0	인천시 부평구			
17	부평구 부평동	산 52-8	임	34,920.0	46.0	산림청			
18	부평구 부평동	산 52-15	임	856.0	856.0	산림청			
19	부평구 부평동	산 52-16	임	5,358.0	5,358.0	산림청			
20	부평구 부평동	산 52-26	임	22,671.0	21,740.0	산림청			

## 용 지 조 서(변경)

NO	소재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1	부평구 부평동	산 52-27	임	723.0	485.0	산림청			
22	부평구 부평동	산 52-29	임	581.0	581.0	산림청			
23	부평구 부평동	산 52-30	임	3,139.0	3,139.0	산림청			
24	부평구 부평동	산 53-1	임	27,956.0	27,956.0	산림청			
25	부평구 부평동	산 53-2	임	99.0	99.0	인천시 부평구			
26	부평구 부평동	산 53-3	임	595.0	595.0	인천시 부평구			
27	부평구 부평동	산 54-4	임	2,876.0	1,810.0	인천광역시			
28	부평구 부평동	산 54-7	임	198.0	198.0	인천시 부평구			
29	부평구 부평동	산 54-8	임	298.0	298.0	인천시 부평구			
30	부평구 부평동	산 54-9	임	198.0	198.0	산림청			
31	부평구 부평동	산 54-10	임	118,048.0	52,791.0	산림청			
32	부평구 부평동	산 54-11	임	1,289.0	186.0	인천시 부평구			
33	부평구 부평동	산 54-28	임	4,610.0	2,673.0	산림청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77호

## 도로구역(광역시도 52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광역시도 52호선(사업명: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3.

### 인천광역시장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변경)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광역시도	52호선	-	서구 오류동 ~ 왕길동 일원	161,012㎡	서구 오류동 1693	서구 왕길동 163-4	-	2.94 (전체: 9.31)
변경	광역시도	52호선	-	서구 오류동 ~ 왕길동 일원	160,783㎡	서구 오류동 1693	서구 왕길동 163-4	-	2.94 (전체: 9.31)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에 의한 사업면적 변경

####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변경 사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3	40 (40~46)	주간선 도로	10,630	동측 행정구역계	중로1-514 (오류동 1114)	일반 도로	-	인고118 (98.6.12)	
변경	광로	3	23	40 (40~46)	주간선 도로	10,630	동측 행정구역계	중로1-514 (오류동 1114)	일반 도로	-	-	변경없음

## 4. 사업내용 (변경없음)

- 사업명 :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규모 : L=2.94km, B=20m→40~46m(4→8차로)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2022.12.31.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청(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 붙임과 같음

##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9.6.3. ~ 2019.6.17.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 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032-440-5211), 서구청(건설과, ☎ 032-560-4522)

## 8. 도로계획 평면도: 게재생략

편입용지조서

입원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1638-8	공	4,676	43	1638-12	공	414.1	414.1	371	공	인천광역시서구	공	인천광역시서구							1 분할정정	
2	1693	도	69,042	4,818	1693-1	도	4,797.2	4,797.2	-21	공	인천광역시서구	공	인천광역시서구							2 분할정정	
3	1665-2	공	10,869	415	1665-3	공	33	33	-382	공	인천광역시서구	공	인천광역시서구							3 분할정정	
4	434-508	도	352	352	434-508	도	352	352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4	
5	410-718	도	3,900	61	410-751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5	
6	410-726	도	144	97	410-755	도	97	9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6	
7	410-724	도	303	218	410-753	도	218	21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7	
8	434-509	도	1,205	1,173	434-571	도	1,173	1,17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8	
9	410-674	도	297	115	410-749	도	115	115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9	
10	410-736	잡	1,306	64	410-756	잡	64	64		김**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현대아파트 ***동 ***호	김**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현대아파트 ***동 ***호							10	
11	410-597	잡	17	17	410-597	잡	17	17		김** 외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현대아파트 ***-***	김** 외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현대아파트 ***-***							11	
12	410-2	잡	2,613	46	410-740	잡	46	46		김** 외4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현대아파트 ***-***	김** 외4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현대아파트 ***-***							12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업 은행	을지로*가**(화 성발안지점)		당권 설정			
	소 계			25,944				25,912	-32										
21	434-525	잡	310	3	434-572	잡	3	3		주식 회사 하이 퍼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식 회사 하이 퍼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 기업 은행 중소 기업 은행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화 성발안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화 성발안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화 성발안지점)	근저 당권 설정 근저 당권 설정 근저 당권 설정	21		
22	434-476	도	365	365	434-476	도	365	365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2	
23	434-475	도	65	65	434-475	도	65	65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3	
24	434-474	염	822	42	434-568	염	42	42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7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7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24	
25	434-332	장	3	3	434-332	장	3	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5	
26	434-81	장	1,675	266	434-548	장	266	266		주식 회사 새롬 판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식 회사 새롬 판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식 사민 이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가)( 검단산업단지지 점)	근저 당권 설정	26		
27	434-303	장	99	27	434-557	장	27	27		주식 회사 새롬 판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식 회사 새롬 판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주식 사민 이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가)( 검단산업단지지 점)	근저 당권 설정	27		
28	434-334	염	132	82	434-560	염	82	82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8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9	434-314	도	6,567	6,567	434-314	도	6,567	6,56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9	
30	434-302	장	1,871	28	434-556	장	28	28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 (가좌공단지점)		근저 당 설정	30	
31	434-301	장	1,537	68	434-555	장	68	68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 (가좌공단지점)		근저 당 설정	31	
32	434-530	염	53	53	434-530	염	53	53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 ***호(목동,목동롯데 캐슬위너아파트)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 ***호(목동,목동롯데 캐슬위너아파트)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운용 주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가*** (옥 련동지점)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가*** 서울특별시강서 구공향대로**길* *,***동***호( 염창동,삼정그린 코아아파트)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회현동 *가)(옥련동지점)		근저 당 설정 상 설 정 근저 당 설정 근 당 권 정 지 당 권 정 설 정	32	
33	434-529	잡	62	33	434-574	잡	33	33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 ***호(목동,목동롯데 캐슬위너아파트)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 ***호(목동,목동롯데 캐슬위너아파트)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운용 주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가*** (옥 련동지점)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가*** 서울특별시강서 구공향대로**길* *,***동***호( 염창동,삼정그린 코아아파트)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회현동 *가)(옥련동지점)		근저 당 권 정 상 설 정 근저 당 권 정 지 당 권 정 설 정	33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4	434-315	도	109	109	434-315	도	109	109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4
35	434-319	잡	1,184	60	434-559	잡	60	60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7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7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35
36	434-316	제	764	34	434-558	제	34	34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7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7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36
37	850-17	제	63	3	850-30	제	3	3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7
38	863-5	도	767	729	863-12	도	729	729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8
39	410-593	잡	198	186	410-748	잡	186	186		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동 ***호	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9
40	410-725	도	627	534	410-754	도	534	534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0
소 계				9,257			9,257												
41	410-719	도	6,802	431	410-752	도	431	431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41
42	410-204	잡	6,439	1,893	410-741	잡	1,893	1,893		김**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	김**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						42
43	410-528	잡	4,320	514	410-747	잡	514	514		김** 외4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	김** 외4 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						43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4	410-524	제	2,282	299	410-742	제	299	299	이** 외 1인	인천 동구 만석동 *** 만석비치타운주공 아파트 ***동 ***호	이** 외 1인	인천 동구 만석동 *** 만석비치타운주공아 파트 ***동 ***호						44	
45	434-425	잡	244	238	434-563	잡	238	23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45	
46	434-58	잡	989	372	434-545	잡	372	372	김**	인천 중구 운북동 ***-*	김**	인천 중구 운북동 ***-*						46	
47	434-57	잡	141	141	434-57	잡	141	141	김**	인천 중구 운북동 ***-*	김**	인천 중구 운북동 ***-*						47	
48	434-59	장	1,232	659	434-546	장	659	659	김**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번길 **(운북동)	김**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번길 **(운북동)	엘지전 주식사 엘에스 전주식 회사	서울영등포구여 의도동** 경기도안양시동 안구호계동****- * 경기도안양시동 안구엘에스로*** (호계동)	근저 권설 정지 당설 정지 당설 정지 당설		48		
49	434-457	잡	15	15	434-457	잡	15	15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무지개마을 ****동 ***호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무지개마을 ****동 ***호						49	
50	434-179	잡	4,314	307	434-553	잡	307	307	장**	인천 남구 관교동 **-* 삼환아파트 ***동 ***호	장**	인천 남구 관교동 **-* 삼환아파트 ***동 ***호						50	
51	434-399	잡	232	232	434-399	잡	232	232	정**	인천 서구 신현동 *** 주공아파트 **동 ***호	정**	인천 서구 신현동 *** 주공아파트 **동 ***호						51	
52	434-442	잡	576	496	434-567	잡	496	496	서** 외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서초래미안아파트	서** 외1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서초래미안아파트 ***-***	일산 새마 을금 고	경기도고양시일 산서구고양대로* **(일산동) 경기도고양시일	근저 당권 설정 지상		52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강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일산 새마을금 고	산서구고양대로* **(일산동)	권설 정			
53	434-51	잡	858	486	434-543	잡	486	486	조** 외1인	인천 북구 부평동 ***-** 대림아파트 *동 ****호	조** 외1 인	인천 북구 부평동 ***-** 대림아파트 *동 ****호					53		
54	434-52	잡	1,155	504	434-544	잡	504	504	김**	인천 동구 만석동 **	김**	인천 동구 만석동 **					54		
55	434-40	잡	2,448	767	434-542	잡	767	767	김** 외1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 *** 풍림아파트 ***동 ***호	김** 외1 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 *** 풍림아파트 ***동 ***호					55		
56	434-287	잡	392	211	434-554	잡	211	211	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원당동, 엘지원당 자이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원당동, 엘지원당자 이아파트)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검단지점)	근저 당권 설정		56		
57	434-478	잡	862	229	434-569	잡	229	229	정** 외 25인	인천 서구 검안동 *** 상보해피하임 ***-****	정** 외 25인	인천 서구 검안동 *** 상보해피하임 ***-****					57		
58	434-431	잡	3,243	2,770	434-565	잡	2,770	2,770	김** 외8인	인천 남구 송의동 ****-*	김** 외8 인	인천 남구 송의동 ****-*					58		
59	434-448	잡	57	57	434-448	잡	57	5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59		
60	434-435	잡	2,463	176	434-566	잡	176	176	경** 외21 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경** 외21 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신용 보증 금 고 구 서울 특별시 양구 서울 특 강 서 구	서울특별시마포 구공덕동****( 강서지점)  서울중구남대문 로*가***(서인천 기업금융지점) 서울중구다동**( 경서동지점) 서울특별시중구	가압 류 압 류 압 류 압 류 당 권 청 구 당 권 청 구 당 권 청 구		60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은행	검단지점 )	설정				
65	434-304	장	641	641	434-304	장	641	64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65	
66	434-82	장	716	353	434-549	장	353	353		주식 회사 나노 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왕길동)	주식 회사 나노 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왕길동)					66	
67	434-343	염	15	15	434-343	염	15	15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 *동 ***호(도곡동, 개포*차우성아파트 )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 *동 ***호(도곡동, 개포*차우성아파트)					67	
68	434-91	염	2,708	533	434-550	염	533	533		김**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개포*차우성아파트 *동 ***호	김**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개포*차우성아파트 *동 ***호					68	
69	434-305	염	352	352	434-305	염	352	352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69	
70	434-92	염	253	191	434-551	염	191	19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70	
71	434-10	염	16,564	401	434-538	염	281	281	-120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8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8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71 분할	
72					434-539	염	120	120	120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8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71-1	
73	434-94	장	1,939	822	434-552	장	822	822		김**	서울 양천구 목동 *** 목동신시가지아파 트 ***동 ***호	김**	서울 양천구 목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 ***호					72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평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4	850-16	도	47	4	850-29	도	4	4		국	국토교통부	이**	국토교통부					73	
75	850-9	도	26	26	850-9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4	
76	850-21	도	80	80	850-21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5	
77	850-19	도	385	275	850-31	도	275	275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76	
78	850-20	도	307	307	850-20	도	307	30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77	
79	850-26	도	22	11	850-32	도	11	11		이**	인천 서구 왕길동 ****-*	이**	인천 서구 왕길동 ****-*					78	
80	863-6	도	531	8	863-13	도	8	8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9	
소 계				4,485			4,485												
81	850-12	도	28	28	850-12	도	28	2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80	
82	산28-1	임	48,836	107	산28-7	임	106	106	-1	광주 이씨 이연 공파 중회	인천 서구 오류동 ****-*	광주 이씨 이연 공파 중회	인천 서구 오류동 ****-*	광주 이씨 이연 공파 중회			가처 분	81 분 정 정	
83	850-25	도	16	16	850-25	도	16	16		광주 이씨 이연 공파 중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번길 **, ***동 ****호(송죽동, 희 성연인아파트)	광주 이씨 이연 공파 중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번길 **, ***동 ****호(송죽동, 희성 연인아파트)					82	
84	434-68	장	1,373	189	434-547	장	189	189		디엠 시주 식회 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디엠 시주 식회 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가**(인 천원당지점)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가**(인 천원당지점)	근 저 당 권 정 권 정 당 권 정		83	
85	434-9	잡	4,530	126	434-537	잡	126	126		제스	인천광역시 서구	제스	인천광역시 서구					84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 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5인	원당대로 ***-**(오류동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5인	원당대로 ***-**(오류동						
86	434-8	제	10,817	157	434-577	제	157	157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5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제스 디자 인주 식회 사 외 85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85	
87	무지번2			640	무지번2			640											86
88	850-22	도	1,047	1,047	850-22	도	1,047	1,04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87
89	850-14	답	96	96	850-14	답	96	96		이**	인천 서구 오류동 ***-*	이**	인천 서구 오류동 ***-*						88
90	850-15	답	473	473	850-15	답	473	473		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 ***호 (검암동, 해선빌딩)	이**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 ***호 (검암동, 해선빌딩)	검단 합동 조각 주택 단지 내 합동 주택 단지 내 합동 주택 단지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블럭 *롯데(완정지점 ) 인천광역시서구 마전동***-*(완 정지점)	근 대 합 동 주택 단지 내 합 동 주택 단지 내	지 권 정 지 권 정 지 권 정 지 권 정		89
	소 계			2,879				2,878	-1										
	합 계			53,362				53,329	-33										

편입용지조서

이 면 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무지번3			172					-172									1 경계 정말 소	
2	산171	임	671	322	산171-5	임	322	322		이** 외 5인	인천 서구 오류동 ***	이** 외 5인	인천 서구 오류동 ***					2	
3	598-12	도	229	229	598-12	도	229	229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	
4	산170	임	2,033	423	산170-4	임	423	423		이** 외2 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이** 외2 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	
5	598-18	도	193	193	598-18	도	193	19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5	
6	산169	임	4,566	228	산169-4	임	228	228		오** 외1 인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번길 ***, 에이동 ***호 (주안동, 삼광주택)	오** 외1 인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번길 ***, 에이동 ***호 (주안동, 삼광주택)					6	
7	517-4	도	4,782	3,247	517-26	도	3,247	3,24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7	
8	596-10	도	11,690	11,690	596-10	도	11,690	11,690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8	
9	598	전	1,328	9	598-20	전	9	9		차**	인천 중구 신생동 **	차**	인천 중구 신생동 **					9	
10	598-13	도	174	174	598-13	도	174	174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0	
11	600-1	도	40	40	600-1	도	40	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공	인천광역시 서구					11	
12	596-20	전	1	1	596-20	전	1	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2	
13	596-13	전	54	3	596-23	전	3	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3	

이전면적 (㎡)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596-21	전	415	88	596-24	전	88	88		양** 외4 인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양** 외4 인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14	
15	596-19	전	28	28	596-19	전	28	2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5	
16	594-17	전	41	41	594-17	전	41	4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6	
17	594-19	대	17	17	594-19	대	17	1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7	
18	594-2	도	33	33	594-2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8	
19	594-12	도	112	112	594-12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9	
20	594-10	도	2,040	648	594-23	도	500	500	-14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0 분할	
소 계				17,698			17,378	-320													
21					594-24	도	148	148	148			공	인천광역시							20-1	
22	594-7	도	213	213	594-7	도	213	21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1	
23	626-9	도	85	85	626-9	도	85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24	594-18	도	9	9	594-18	도	9	9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3	
25	626-76	도	3	3	626-76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26	626-10	도	97	12	626-101	도	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27	592-39	도	15	15	592-39	도	15	15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6	
28	592-22	도	2,857	2,857	592-22	도	2,857	2,85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7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9	592-4	도	785	231	592-43	도	231	23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28	
30	626-5	도	7	1	626-98	도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31	626-75	도	4	4	626-75	도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32	64-7	도	1,276	13	64-438	도	13	13		보 중 소 업 협 동 조 합	인천 계양구 효성동 ***	보 중 소 업 협 동 조 합	인천 계양구 효성동 ***					31	
33	64-30	도	2,392	1,265	64-447	도	65	65	-1,200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2 분할	
34					64-448	도	1,200	1,200	1,200			공	인천광역시					32-1	
35	64-24	도	69,364	47,663	64-441	도	47,663	47,66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3	
36	64-286	도	243	243	64-286	도	243	24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4	
37	605-5	답	312	81	605-11	답	81	81		이**	인천 서구 오류동 ***-*	이**	인천 서구 오류동 ***-*					35	
38	산171-3	임	142	142	산171-3	임	142	142		이** 외 5인	인천 서구 오류동 ***	이** 외 5인	인천 서구 오류동 ***					36	
39	605-8	답	235	235	605-8	답	235	235		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동 ***호 (중동, 포도마을)	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동 ***호 (중동, 포도마을)					37	
40	605-6	답	1,139	678	605-12	답	678	678		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동 ***호 (중동, 포도마을)	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 ***동 ***호 (중동, 포도마을)					38	
소 계				53,750			53,898	148											
41	604	전	684	684	604	전	684	684		수도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	인천 서구 백석동					39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매지관리공사	**	권매지관리공사	**						
42	605	답	962	730	605-10	답	730	730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 ***동 ***호(마전동, 검단 *차대주피오레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 ***동 ***호(마전동, 검단* 차대주피오레아파트)	주식 국민은행 주식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 대문로**(을지로* 가)(검단지점) 서울특별시중구남 대문로**(을지로* 가)(검단지점)	근저 권설정 근저 권설정	40		
43	605-7	답	523	523	605-7	답	523	523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 ***동 ***호(마전동, 검단 *차대주피오레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 ***동 ***호(마전동, 검단* 차대주피오레아파트)	주식 국민은행 주식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남 대문로**(을지로* 가)(검단지점) 서울특별시중구남 대문로**(을지로* 가)(검단지점)	근저 권설정 근저 권설정	41		
44	604-3	전	151	151	604-3	전	151	151			*	수도 권매지 관리 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지적 재조 사 지구 지정				42	
45	606	전	582	97	606-4	전	97	97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서인 농업 협조 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근저 권설정	43		
46	603-14	답	830	830	603-14	답	830	830		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번길 **, ***동 ****호(경서동, 청 라푸르지오아파트)	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번길 **, ***동 ****호(경서동, 청라 푸르지오아파트)	중소 기업 은행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중구를 지로**(을지로*가) (인천원당지점) 서울특별시중구를 지로**(을지로*가) (인천원당지점)	근저 권설정 근저 권설정	44		
47	603	대	2,446	44	603-16	대	44	44		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번길 **, ***동 ****호(경서동, 청	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번길 **, ***동 ****호(경서동, 청라	중소 기업 은행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중구를 지로**(을지로*가) (인천원당지점) 서울특별시중구를	근저 권설정 근저	45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라푸르지오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기업은행	지로**(을지로*가)(인천원당지점)	당권설정			
48	600-21	전	866	866	600-24	전	855	855	-11	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번길 ** , ***동 ****호(경서동, 경서푸르지오아파트)	구**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번길 ** , ***동 ****호(경서동, 경서푸르지오아파트)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를지로**(을지로*가)(인천원당지점) 서울특별시중구를지로**(을지로*가)(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근저당권	46 분정정		
49	600-4	전	209	199	600-23	전	199	19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48		
50	600-3	전	51	51	600-3	전	51	5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49		
51	600-2	대	47	47	600-2	대	47	4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50		
52	600-17	대	1	1	600-17	대	1	1		손**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손**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51		
53	601-5	전	57	57	601-5	전	57	57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52		
54	601-16	전	24	24	601-16	전	24	24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53		
55	601-8	전	22	22	601-8	전	22	22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이**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54		
56	601-18	묘	136	112	601-21	묘	112	112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동부아파트 ***-****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동부아파트 ***-****				55		
57	601-2	도	1	1	601-2	도	1	1		이**	인천부화령정	이**	인천부화령정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56		

이전도면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8	601-17	도	7	7	601-17	도	7	7		공	인천광역시 서구	공	인천광역시 서구					57	
59	601-15	묘	9	9	601-15	묘	9	9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동부아파트 ***-***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동부아파트 ***-***					58	
60	601-7	묘	2	2	601-7	묘	2	2		공	인천광역시 서구	공	인천광역시 서구					59	
소 계				4,457			4,446	-11											
61	596-17	전	1	1	596-17	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공	인천광역시 서구					60	
62	601-13	도	49	49	601-13	도	49	49		이**	인천부화령정	이**	인천부화령정	지적 재조 사 지구 지정				61	
63	596-15	전	7	7	596-15	전	7	7		공	인천광역시 서구	공	인천광역시 서구					62	
64	601-14	도	63	63	601-14	도	63	63		김** 외1 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	김** 외1 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					63	
65	596-8	전	6	6	596-8	전	6	6		양** 외4 인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양** 외4 인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64	
66	601-6	묘	30	30	601-6	묘	30	30		유**	김포군 경단면 왕길리 ***	유**	김포군 경단면 왕길리 ***					65	
67	601-3	도	314	111	601-20	도	111	111		김** 외1 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	김** 외1 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					66	
68	601-1	묘	408	350	601-19	묘	350	350		유**	김포군 경단면 왕길리 ***	유**	김포군 경단면 왕길리 ***					67	
69	588-7	전	486	402	588-10	전	402	402		수도 권매 립지 관리	인천 서구 백석동 **	수도 권매 립지 관리	인천 서구 백석동 **					68	

이전도면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사		공사							
70	589-4	전	41	41	589-4	전	41	41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69	
71	589-3	전	754	754	589-3	전	754	754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70	
72	588-1	전	248	142	588-9	전	142	142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71	
73	589-1	전	84	84	589-1	전	84	84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 서구 백석동 **							72	
74	579-1	대	122	30	579-38	대	30	30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 (백석동)	수도매지리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 (백석동)							73	
75	589-5	도	1	1	589-5	도	1	1		정**	*	정**	*	지재조사 지구지정				74	
76	589-2	도	16	16	589-2	도	16	16		정**	*	정**	*	지재조사 지구지정				75	
77	626-8	도	83	27	626-100	도	27	27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8	592-2	도	60	19	592-41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7	
79	592-23	도	12	12	592-23	도	12	12		김**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김**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78	
80	592-17	전	255	87	592-47	전	87	87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동 ***호 (왕길동, 동아연립)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동 ***호 (왕길동, 동아연립)	검단연동조합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당하지점)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오왕지점)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오왕지점)		근저권설정 근저권설정 근저권설정 근저권설정	79	
소 계				2,232					2,232										
81	592-14	대	222	222	592-14	대	222	222		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번길***-(왕길동)	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번길***-(왕길동)	인천광역시서구검단연동조합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마전동)(오왕지점)		유저권설정	80	
82	592-9	전	9	9	592-9	전	9	9		송**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송**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81	
83	592-15	전	20	20	592-15	전	20	20		송**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송**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82	
84	592-16	전	112	20	592-46	전	20	20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동 ***호 (왕길동, 동아연립)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동 ***호 (왕길동, 동아연립)	검단연동조합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당하지점)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오왕지점)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근저권설정 근저권설정 근저권설정	83	

이전 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오왕지 점)	정 지권 설정		
85	591-2	대	66	25	591-7	대	25	25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왕길동, 동아연립)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왕길동, 동아연립)	김 단 영 희 조 합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오왕지 점)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오왕지 점)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오왕지 점)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오왕지 점)	김 단 영 희 조 합 지 권 설 정 상 설 지 권 설 정 지 권 설 정	84		
86	591-1	대	401	390	591-6	대	390	390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85	
87	592-7	전	222	215	592-44	전	215	215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86	
88	592-10	대	119	70	592-45	대	70	70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경신아파트 나동 ***호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경신아파트 나동 ***호	김 단 영 희 조 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블럭* 롯데(오왕지점)	김 단 영 희 조 합	87		
89	592-29	전	19	19	592-29	전	19	19		현** 인천 서구 왕길동 ***-**	현** 인천 서구 왕길동 ***-**					88	
90	592-18	대	185	164	592-48	대	164	164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경신아파트 나동 ***호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경신아파트 나동 ***호	김 단 영 희 조 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블럭* 롯데(오왕지점)	김 단 영 희 조 합	89		
91	592-3	대	496	154	592-42	대	154	154		박** 외1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	박** 외1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					90	
92	592-5	전	101	101	592-5	전	101	101		김** 외2 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	김** 외2 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					91	
93	626-7	도	331	67	626-99	도	67	67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92	

이전 면적 (㎡)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4	578-5	전	76	7	578-24	전	7	7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갈산동)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갈산동)					93	
95	626-40	도	3	3	626-40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96	578-3	전	50	50	578-3	전	50	50		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95	
97	626-6	도	80	80	626-6	도	8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98	578-18	전	10	10	578-18	전	10	10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검단농업동조합	인천서구마전동** *-(오왕지점) 인천서구마전동** *-(오왕지점)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97	
99	578-4	전	225	137	578-23	전	137	137		최**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신현동)	최**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신현동)					98	
100	578-6	전	99	28	578-25	전	28	28		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동 ***호 (금곡동, 하나아파트)	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동 ***호 (금곡동, 하나아파트)					99	
소 계				1,791					1,791										
101	578-12	전	761	506	578-26	전	506	506		강**	인천 서구 왕길동 ****	강**	인천 서구 왕길동 ****					100	
102	578-1	임	1,308	453	578-22	임	453	453		유**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유**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101	
103	64-20	잡	693	693	64-20	잡	693	693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 산신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 산신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102	

이전도면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4	64-19	잡	6,517	855	64-439	잡	855	855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103	
105	64-32	잡	4,304	99	64-449	잡	99	99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104	
106	64-21	잡	21,495	1,345	64-484	잡	1,345	1,345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105 분할	
107	64-22	잡	833	833	64-22	잡	833	833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주식 회사 생보 부동 산신 탁 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경암빌딩					106	
108	64-339	잡	152	2	64-457	잡	2	2		김** 외1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문래동*가)	김** 외1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 문래동*가)					107	
109	64-234	잡	3,355	28	64-453	잡	28	28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 ***-** (산곡동)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 ***-** (산곡동)	웅진 협동 조합 웅진 협동 조합	인천광역시중구유 동**-* 인천광역시중구유 동**-* 인천광역시남구주 안동****-** 인천광역시연수구 아트센터대로**번	근저 권 설정 지상 권 설정 근저 권		108	

이전도면번호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주식 인성호 상저은 행이**	길**,****동**** 호(송도동,송도더 샵그린위크*차)	정 저 권 정 설		
110	64-235	잡	747	10	64-454	잡	10	10	장**	인천 부평구 갈산동 *** 태화아파트 *-***	장**	인천 부평구 갈산동 *** 태화아파트 *-***	중 소 업 행 소 업 행 식 사 리 영 컴	서울중구을지로* 가**(청천동지점) 서울중구을지로* 가**(청천동지점) 인천광역시서구경 서동****-**	근 단 정 상 설 정 권 정 설	109	
111	64-176	잡	107	107	64-176	잡	107	107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고잔동)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고잔동)				111	
112	64-232	잡	112	112	64-232	잡	112	112	주식 회사 활링 컴 외 16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주식 회사 활링 컴 외 16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112	
113	64-233	잡	406	406	64-233	잡	406	406	주식 회사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	주식 회사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태평로*가)				113	
114	64-413	잡	93	12	64-459	잡	12	12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동 ***호 (마전동,대원레스 피아*차아파트)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동 ***호 (마전동,대원레스피 아*차아파트)	검 단 정 상 설 정 권 정 설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오왕지 점) 인천광역시서구마 전동****-	근 단 정 상 설 정	115	
115	64-177	잡	278	265	64-452	잡	265	265	보람	인천 계양구	보람	인천 계양구				116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중소기업동조합	효성동 ***	중소기업동조합	효성동 ***						
116	64-178	잡	135	135	64-178	잡	135	135		김**	인천 서구 마전동 *** 영남탑스빌아파트 ***-****	김**	인천 서구 마전동 *** 영남탑스빌아파트 ***-****					117	
117	64-411	잡	2,895	6	64-458	잡	6	6		한**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한**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8	
118	64-159	잡	14,480	3	64-481	도	3	3		보람소기업동조합	계양구 효성동 ***	보람소기업동조합	계양구 효성동 ***					119 지목 변경	
119	64-289	도	281	279	64-455	도	279	279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20	
120	64-29	잡	1,382	1,253	64-444	잡	1,253	1,253		보람소기업동조합	인천 계양구 효성동 ***	보람소기업동조합	인천 계양구 효성동 ***					121	
소 계				7,402			7,402												
121	64-103	잡	810	12	64-451	잡	12	12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 ****동 ****호(상동, 꿈동산)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 ****동 ****호(상동, 꿈동산)	박**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 ****동****호(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근저권 설정	122
122	64-303	잡	760	760	64-303	잡	760	760		장**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장**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삼산동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움아파트)					123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3	63-5	잡	126,411	1,087	63-41	잡	1,087	1,087		김** 외 23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동 ****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김** 외 23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동 ****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124	
124	64-18	잡	5,042	5,042	64-18	잡	5,042	5,042		이** 외 10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이** 외 10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					125	
125	64-17	잡	237,062	5,771	64-480	잡	411	411	-5,300	주식회사 코리아슈트 핑트 레블 외 29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유엔프라자 ***호	주식회사 코리아슈트 핑트 레블 외 29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유엔프라자 ***호					126 분할	
126					64-482	잡	4,932	4,932	4,932			주식회사 코리아슈트 핑트 레블 외 29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유엔프라자 ***호					126-1	
127					64-483	잡	429	429	429			주식회사 코리아슈트 핑트 레블 외 29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유엔프라자 ***호					126-2	
128	64-317	잡	1,004	830	64-456	잡	830	830		김** 외2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양서아파트 *동 *~*~*~*호	김** 외2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양서아파트 *동 *~*~*~*호					127	
129	128-110	도	1,570	287	128-337	도	287	287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28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0	128-136	답	181	34	128-338	답	34	34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129	
131	128-138	답	271	32	128-339	답	32	32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130	
132	128-90	답	1	1	128-90	답	1	1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131	
133	128-96	도	1,365	650	128-335	도	650	650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32	
134	128-309	도	456	456	128-309	도	456	456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33	
135	128-227	도	4	4	128-227	도	4	4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34	
136	128-94	답	551	229	128-334	답	229	229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대림산업주식회사외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수송동)					135	
137	618-7	도	36	2	618-24	도	2	2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36	
138	618-6	도	192	89	618-6	도	76	76	-13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37 분할 정정	
139	64-28	제	1,932	12	64-442	제	12	12		김** 외4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김** 외4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효성동)	주식회사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가)(	근저당권 설정		138	

이전면적(㎡)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도면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효성동)			은행 대한민국	부평북지점 )	근저권 당설정			
140	64-47	도	379	146	64-450	도	146	146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39		
소 계				15,444			15,432	-12											
141	128-162	도	116	89	128-340	도	89	89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40		
142	128-45	장	296	227	128-329	장	227	227		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영남탑스빌아파트 ***-***	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영남탑스빌아파트 ***-***	주식 회사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검단지점 )	근저권 당설정	141		
143	128-294	전	1,050	529	128-343	전	529	529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동 ***호(마전동,영남 탑스빌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동 ***호(마전동,영남 탑스빌아파트)	계양 업종 융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권 당설정	142		
144	128-62	전	1,068	551	128-330	전	551	551		조**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조**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검단 업종 융합 검단 업종 융합 우**	인천서구마전동** *~** 인천서구마전동** *~** 서울특별시동대문 구장안동***~**	근저권 당설정 상설 정 근저권 당설정	143		
145	128-77	전	599	258	128-331	전	258	258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마전동,영 남탑스빌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마전동,영남 탑스빌아파트)	국		근저권 당설정	144		
146	128-132	전	68	68	128-132	전	68	68		손** 외1 인	인천 서구 왕길동 ***~*	손** 외1 인	인천 서구 왕길동 ***~*				145		
147	128-135	답	168	168	128-135	답	168	16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46		

이전면적 (㎡)	당 초				변 경				증감 (㎡)	당 초		변 경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8	128-6	전	2,192	228	128-327	전	228	228		손** 외1 인	인천 서구 왕길동 ***	손** 외1 인	인천 서구 왕길동 ***					147	
149	128-91	전	466	466	128-91	전	466	466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동 ****호 (마전동,영남탑스 빌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동 ****호 (마전동,영남탑스빌 아파트)					148	
150	128-85	전	504	108	128-333	전	108	108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동 ****호 (마전동,영남탑스 빌아파트)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동 ****호 (마전동,영남탑스빌 아파트)	신김 포농 업협 동조 합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 구래동지점 )	근저 당권 설정		149	
151	128-84	전	4,228	97	128-332	전	97	97		고**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고**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150	
152	128-108	답	6	6	128-108	답	6	6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51	
153	128-33	전	406	259	128-325	전	322	322	63	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152 분할 정정	
154	128-73	전	358	238	128-344	잡	174	174	-64	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153 분할 정정	
155	128-17	전	926	587	128-328	전	587	587		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154	
156	128-169	전	412	129	128-341	전	129	129		권**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권**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155	
157	128-101	도	559	525	128-336	도	525	525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156	
158	128-210	답	613	343	128-342	답	343	343		김**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김**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157	
소 계				4,876			4,875	-1											
합 계				107,650			107,454	-196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분할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04 (410-741)	가건물		59㎡	김**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	
			컨테이너(6동)		86㎡			
			담장	가설판넬	93m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04 (410-741)	가건물	철파이프/함석	90㎡	김**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	
			컨테이너(30동)		540㎡			
			담장	가설판넬	131m			
			간판		1식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528 (410-747)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166㎡	김** 외 4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아파트 ***동 ***호	
			컨테이너(2동)		50㎡			
			입간판		1식			
			네온싸인		1식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25 (434-563)	공장(3동)	조립식/함석	339㎡	공	인천광역시	
			컨테이너(2동)		33㎡			
			담장	철재	7m			
			대문	철재	1식			
			이동식화장실		1식			
			입간판		1식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9 (434-546)	공장(3동)	조립식/함석	610㎡	김**	인천광역시중구자연 대로***번길**	
			컨테이너		26㎡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24	공장	철골조/칼라강판	998㎡	여**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산***- 현대아파트 ***동 ***호	
			담장	가설판넬	24m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27 (434-564)	버스정류장	철재	8㎡	공	인천광역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99	공장	조립식/함석	193㎡	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주공아파트 **동 ***호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230㎡			
			컨테이너		18㎡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27 (434-564)	버스정류장	철재	8㎡	공	인천광역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42 (434-567)	담장	가설판넬	31m	서** 외 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서초래미안아파트 ***-***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2 (434-544)	공장	조립식/천막	727㎡	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	
			공장	조립식/함석	72㎡			
			컨테이너(2동)		52㎡			
			담장	가설판넬	15m			
			대문	철재	1식			
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0 (434-542)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331㎡	김** 외1인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풍림아파트***동***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담장	가설판넬	71m			
			대문	철재	1식			
			컨테이너(5동)					
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31 (434-565)	사무실	조립식/함석	49㎡	김** 외 8인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컨테이너(3동)		39㎡			
			담장	철재	85m			
			담장	가설판넬	20m			
			대문	철재	1식			
			간판		1식			
			천막		1식			
1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431 (434-565)	가건물(2동)	철파이프/천막	217㎡	김** 외 8인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가건물	철파이프/함석	15㎡			
			컨테이너(4동)		178㎡			
			담장	철재	54m			
			담장	가설판넬	10m			
1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67 (434-561)	담장	가설판넬	14m	강**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번길 *(오류동)	
			대문	철재	1식			
			공장(2F)	조립식/함석	20㎡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82 (434-549)	담장	가설판넬	54m	주식회사 나노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왕길 동)	
			담장	블록	14m			
1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91 (434-550)	컨테이너(19동)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 개포*차우성아파트 *동 ***호	
			담장	블록	18m			
1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81 (434-548)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476㎡	주식회사 새롬판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컨테이너(2동)		52㎡			
			담장	능형망	68m			
			담장	블록	11m			
1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81 (434-548)	공장	철골조/칼라강판	1,583 ㎡	주식회사 새롬판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오류동)	
			담장	블록	32m			
2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94 (434-552)	공장	철골조/함석	468㎡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 ***호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128㎡			
			컨테이너		24㎡			
			담장	블록	2m			
			담장	철재	21m			
			담장	가설판넬	72m			
			대문	철재	1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입간판		1식			
2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68 (434-547)	사무실	조립식/함석	40㎡	디엠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담장	블록	36m			
			담장	철재	36m			
2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8-12	옹벽		284m	공	인천광역시	
			담장	능형망	174m			
2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04-3	수목	소나무	335주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담장	철재	170m			
			담장					
2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05-7	가건물(2동)	철파이프/함석	37㎡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동 ***호	
			컨테이너		18㎡			
			담장	철재	136m			
2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06 (606-4)	컨테이너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가건물	블럭조/스레트	153㎡			
			컨테이너		37㎡			
2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01-18 (601-21)	컨테이너(3동)			장**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동부아파트 ***-****	
2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6-10	저온저장고		9㎡	공	인천광역시	
2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01-1 (601-19)	사무실	조립식/함석	27㎡	유**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물탱크		1식			
			간판		1식			
2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89-3	컨테이너		18㎡	수도권매 립지관리 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	
			수목	관상수	672주			
			담장	능형망	125m			
3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6-10	버스정류장	철재	8㎡	공	인천광역시	
3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6-10	버스정류장	철재	8㎡	공	인천광역시	
3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2-14	공장	블럭조/함석	205㎡	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번길 ***-*	
3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2-17 (592-47)	창고(2동)	블럭조/스레트	96㎡	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번길 ***-*, *동 ***호(왕길동, 동아연립)	
3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1-1 (591-6)	창고	블럭조/스레트	25㎡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3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1-1 (591-6)	가옥	조적조/슬라브	101㎡	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창고	조적조/슬라브	40㎡			
			담장	적벽돌	38m			
			옹벽		13m			
3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2-10 (592-45)	가옥	블럭조/스레트	77㎡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 경신아파트 나동 ***호	
3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2-22	옹벽		151m	공	인천광역시	
38	인천광역시	592-22	옹벽		113m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서구 왕길동							
3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78-5 (578-24)	창고	블럭조/스레트	35㎡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4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78-12 (578-26)	컨테이너			강**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4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9 (64-439)	컨테이너(2동)			주식회사 생보부동 산신탁 외1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경암빌딩	
4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17 (64-456)	컨테이너(5동)			김** 외2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양서아파트 *동 ***호	
4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45 (128-329)	사무실	조적조/싱글	208㎡	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영남탑스빌아파트 ****-***	
4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62 (128-330)	가건물	목조	9㎡	조**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가건물	함석	10㎡			
4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77 (128-331)	컨테이너		27㎡	이**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동 ****호	
			수목	매실나무	270주			
4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84 (128-332)	컨테이너			고**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4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33 (128-325)	컨테이너(4동)			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4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73 (128-344)	컨테이너			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49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28-169 (128-341)	온실(11동)	철파이프/보온덮 개	972.0 ㎡	권**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	
5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314	버스정류장	철재	8㎡	공	인천광역시	
5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4 (64-441)	버스정류장	철재	8㎡	공	인천광역시	
5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29-22	컨테이너		9㎡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81호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58호	(주)영진전자통신 김성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별말로 584번길 15-4, 1층 (하야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84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자 청문실시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처분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행정처분 원인	예정된 행정처분
18	대경해운항공(주)	박**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이동2109호 (송도동,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9.25.)	4차위반 등록취소
181	(주)에플로지스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에이동 비115-19호(47호)(청천동, 우림 라이온스밸리)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8.26.)	4차위반 등록취소
456	(주)위니지엘	박**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71, 비동1226호 (계산동, 하이베라스)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5.7.)	4차위반 등록취소
502	(주)오션스코리아로지스틱스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동 3102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아이티센터)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8.30.)	4차위반 등록취소
543	하나지엘에스(주)	한**	인천광역시중구인항로6,비동10 13호 (신흥동3가, 정광씨펠리스)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4.30.)	4차위반 등록취소
568	(주)에스앤피로직스	안**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0번길 35 (신흥동3가, 인천항공동물류내)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7.15.)	4차위반 등록취소
574	(주)다정로지스틱	오**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석정로64번 길11,2층 (송의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9.27.)	4차위반 등록취소
608	나이스산업개발(주)	김**	인천광역시 중구 늘목로22번길 11(율왕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2.15.)	4차위반 등록취소
468	(주)성안글로벌	박**	인천광역시중구 서해대로94번길 132, 비동 404호 (신흥동3가, 화인통상)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18.5.30.)	4차위반 등록취소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청문실시

- 일 시 : 2019. 6. 21.(금) 13: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당자 : 해양항만과 이환빈 (032-440-4843)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0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1) 업 체 명 : (주)서호엔텍
- 2) 대 표 자 : 채상윤, 박준상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송도미래로 30, D동 2211호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11호
- 6) 등 록 연 월 일 : 2018. 07. 23.
-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 7) 취 소 일 자 : 2019. 05. 3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03호

## - 무 연 분 묘 개 장 공 고(2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개장 신고 후 이장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2019. 6. 3.

### 인천광역시

#### 종합건설본부장

##### 1. 분묘 위치 및 기수

묘지 또는 분묘 위치			기 수	비고
시	동	지 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10 일원	547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3-1단계) 보상구역

2. 개장사유 :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3-1단계)

3. 개장 후 안치장소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봉안당)내 무연분묘 안치단

4.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6. 21.

6.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후에 기간 내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7. 신고 및 분묘조서 열람장소

가.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 032-510-1960~2)

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2팀 ☎ 032-440-5172, 5173, 5175, 5315)

8. 기 타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 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우선외구역 무연분묘 내역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	E12	나3-220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3-220)있음 ○왼쪽에E13,오른쪽에E11,아래쪽에E45 있음
2	E1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에E20있음
3	E28	묘번무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2	1	○비석(고전주이씨지묘-한자)/단기4286년11월17일별세 ○묘지석없음 ○비석뒷면내용없음 ○왼쪽아래F211,오른쪽아래E26,아래쪽에E27 있음
						상석	화강석	0.6X0.4X0.1	1	
4	E3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에E29,아래쪽에E32,오른쪽아래쪽에E33 있음
5	E3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에E34,오른쪽에E36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6	E45	나3-210	무연	소*영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5	1	○비석(진주소공*영지묘-한자)/1968.7.18. 추 ○묘지석(나3-210)있음 ○왼쪽위E13,오른쪽위E11,아래쪽:E51,위쪽에 E12 있음
						상석	콘크리트	0.6X0.5X0.15	1	
						소나무		8.0	1	
						상수리 나무		4.0	1	
7	E49	나3-186	무연	배*순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에E50,왼쪽아래쪽에E58, 왼쪽위에 E48 있음
8	E51	나3-183	무연	권*술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1	1	○비석(안동권공*술지묘-한자)/1955.6.19. 추 ○묘지석(나3-183)있음 ○오른쪽위에E48,아래쪽에E60,위쪽에E4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1	화강석	4X0.5	1	
						석축2	화강석	6X0.5	1	
9	E7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위에E70,위쪽에E79있음
10	E10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아래E113,아래쪽에E112,오른쪽아래E111있음
11	E124	나3-100	무연	이*영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31X0.11	1	○비석(십자가+고덕수이공*영지묘)/주후1962.4.19. ○묘지석(나3-100)있음
12	E124-1	묘번무	무연	조*용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	1	○비석(십자가+성도조*용의묘-한글)/1973.7.11. ○묘지석없음 ○비석뒷면내용없음 ○위쪽에E124,오른쪽위에E12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비석받침	콘크리트	0.5X0.3X0.13	1	
13	E128	나3-8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3-87) ○위쪽에E127,왼쪽에E130,오른쪽아래E129있음
14	E133	나1-178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178) ○왼쪽에산책로가있고오른쪽아래에E134있음
15	E13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38),자료에는묘번없음 ○위쪽:E139,왼쪽위E137,왼쪽아래E137-2,오른쪽아래에E156있음
16	E137-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41) ○위쪽에E137,왼쪽에E136,오른쪽위에E137-1있음
17	E136	나1-240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178) ○왼쪽위E134,오른쪽위,E137,오른쪽에E137-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8	E138	나1-196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196) ○왼쪽아래:E134○아래쪽:E136있음
19	E139	나1-237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나1-237) ○왼쪽아래에E137,아래쪽에E137-1있음
20	E142	나1-234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1-234) ○오른쪽에E141가있고아래쪽에E139있음
21	E15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77) ○왼쪽위에E152,오른쪽아래E154있음.
22	E152	나1-280	무연	이*복 김해김씨	합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80) ○위쪽에E200,왼쪽아래에E148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3	E15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위에E150, 왼쪽아래E141있음
24	E156	나1-244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11X0.2	1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44) ○왼쪽위에E137-1이있고오른쪽에E155있음
25	E15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고이시(?)창)이하확인불가 (16.5×10×28?) ○왼쪽아래E155있고, 오른쪽아래E157있음 ○비석뒷면내용없음
26	E16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묘지석없음 ○왼쪽위E191있고왼쪽아래E159있음
27	E165	나1-326	무연	-	단장					-
28	E166-1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9	E171	나1-353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53) ○위쪽:E179,왼쪽위E179-1,오른쪽위에E178 있음
30	E173-1	묘번무	무연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70) ○왼쪽위E174,왼쪽E173,오른쪽에도랑있음
31	E174-1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7X0.3	1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94) ○위쪽:E224○왼쪽:E174○오른쪽:도랑
32	E175	나1-391	무연	김해김씨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91) ○위쪽E221,왼쪽E176,오른쪽에E174 ○오른쪽아래E173있음
33	E17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왼쪽위:E179,E178 ○ 오른쪽위 : E176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아래:E179-1있음
34	E179-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52) ○위쪽:E180○오른쪽위:E179○오른쪽아래:E177있음
35	E180	나1-369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나1-369) ○오른쪽위E177,왼쪽아래E277,오른쪽아래E179 ○아래쪽에179-1있음
36	E187	나1-314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14) ○왼쪽위:E210○오른쪽:E189○오른쪽아래:E190
37	E189	나1-37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77) ○왼쪽:E187○왼쪽아래:E190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8	E193	묘번무	무연	-	단장					-
39	E197	나1-184	무연	윤*각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184) ○오른쪽위:E198○오른쪽:E196 ○왼쪽:산책로
40	E198	나1-188	무연	채*복	단장					○비석(고채*복지묘-한자) ○자연석상태임,묘지석있음(나1-188) ○위쪽:E260○왼쪽위:E257○아래쪽:E196 ○왼쪽아래:E197있음
41	E205	나1-28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왼쪽위:E204,먼오른쪽위E20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2	E20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묘지석없음 ○왼쪽에E207있고오른쪽위에E211있음
43	E210	나1-313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찾을수없음 ○위쪽에E211,오른쪽아래에E187있음
44	E21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위쪽에E214있고왼쪽에E212있음
45	E233	나1-387	무연	최*숙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2	1	○비석(고최*숙지묘-한자) ○묘지석있음(나1-387) ○위쪽:시멘트길○오른쪽위:E232○왼쪽:E234 ○왼쪽아래:E219 ○1982.1.18(음)/2.11추
						상석	콘크리트	0.65X0.4X0.2	1	
46	E240	나1-289	무연	조*영	단장	석축	화강석	4X0.8	1	○E240은묘지석(묘번)인식안되고비석없음 ○위쪽:시멘트길 ○ 오른쪽 : E239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7	E263	나1-225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25) ○왼쪽위:E266      ○ 오른쪽위 : E268 ○왼쪽:E262        ○ 오른쪽아래 : E200
48	E26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위쪽:E245(좌),E244(우) ○아래쪽:E262 ○오른쪽아래:E263
49	E268	나1-293	무연	이*춘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293) ○오른쪽위:E243○오른쪽:E269○왼쪽아래:E263 ○아래쪽:E202○오른쪽아래:E203있음
50	E269	나1-292	무연	영흥이씨 정*복	합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2	1	○비석(유인영흥이씨,초계정공*복지묘-한자) (1953.12.10.卒), (1956.2.18.卒) ○묘지석있음(나1-292)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1	E272	나1-289	무연	조*영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25X0.12	1	○비석(밀양박공*원의묘-한글) ○묘지석없음 ○오른쪽:E273○아래쪽:E274 ○1953.1.30卒
52	E277	나1-374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374) ○오른쪽위에E180,오른쪽아래E179-1있음
53	E279	나1-468	무연	최*호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	1	○비석(고최*호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오른쪽아래E318-2있음 ○단기4293.10.19.
54	E28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461) ○오른쪽위E290, 아래쪽 : E294, 왼쪽아래 : E296 ○오른쪽아래E293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5	E29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위E291,왼쪽아래E289,오른쪽아래E293 있음
56	E29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아래E290,오른쪽아래E292,아래쪽에E293있음
57	E29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에E291,왼쪽에E293있음
58	E29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대리석	0.65X0.25X0.1	1	○비석없음,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위E289,왼쪽E297,왼쪽아래E295있음
59	E297	나1-45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457) ○오른쪽E296,아래쪽E298,오른쪽아래E29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60	E30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오른쪽아래E302,오른쪽에E301-1,위쪽에E318-3있음
61	E301-1	묘번무	무연	인식불가	단장	비석	콘크리트	0.3X0.14X0.13	1	○비석은있으나내용확인불가 ○왼쪽위E318-3,왼쪽E301,아래쪽E302있음
62	E30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위에E301-1,왼쪽아래에E303,아래쪽에E319있음
63	E30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440) ○위쪽에E303,왼쪽위에E305 ○오른쪽위에E304,아래쪽에E320있음
64	E312	나1-423	무연	-	단장					○비석없고묘지석(나1-423)있음 ○왼쪽위에E320,위쪽에E306,왼쪽아래E309,아래쪽에E311있음
65	E318-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1-45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위쪽에E318-2,왼쪽에E316,아래쪽에E318-3있음
66	E318-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1-469)있음 ○왼쪽위에E279,왼쪽아래E316,아래쪽에E318-1있음
67	E318-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왼쪽위에E316,위쪽에E318-1 ○아래쪽에E301(좌),E301-1(우)있음
68	E319	나1-448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1-448)있음 ○위쪽에E302,왼쪽에E303,왼쪽아래E304있음
69	E320	나1-438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1-438?)있음 ○왼쪽에E307,오른쪽에E306,아래쪽에E308 ○오른쪽아래에E309있음
70	E373	묘번무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5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나3-14(?)(?))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위쪽E24,오른쪽E22,오른쪽아래E371있음
71	E376	묘번무	무연	해주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13X0.11	1	-
						상석	화강석	0.2X0.2	1	
72	F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E285분묘바로뒤에위치함
73	F3	나1-544	무연	청주사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2	1	○비석(십자가+유인청주사씨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왼쪽에E283,아래쪽에F1,오른쪽아래에F2있음
74	F12	나1-651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대리석	0.75X0.55X0.1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글)/1978.음1.16.후 ○묘지석없음 ○왼쪽위,E337,위쪽E338,오른쪽F13,아래쪽에F35있음 ○비석옆면에묘번있음(나1-65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5X0.5X0.15	1	
						석축1	화강석	6X0.6	1	
						석축2	화강석	6X0.6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측백나무		0.8	2	
75	F1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오른쪽위에F16,왼쪽아래F32,오른쪽아래F31 있음
76	F2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위F22,왼쪽F25,아래쪽F89(좌),F90(우) 있음
77	F3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위에F9,오른쪽에F37,아래쪽에F38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78	F40	묘번무	무연	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3X0.1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자)1983.4.7.卒 ○묘지석없음 ○왼쪽F6,왼쪽아래F42,오른쪽아래F38있음
						상석	화강석	0.75X0.5X0.15	1	
						석축	화강석	4X0.3	1	
						돌받침	화강석		6	
79	F41	묘번무	무연	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	1	○비석(해주최공세인지묘-한자)1974.음11.5.卒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F6,왼쪽아래F42,오른쪽아래 F38 있음
						석축	화강석	6X0.8	1	
80	F5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위쪽F38,아래쪽도랑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81	F55	묘번무	무연	-	단장					-
						석축1	화강석	4X0.5	1	
						석축2	화강석	2X0.2	1	
82	F68	나1-496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1-496)있음 ○왼쪽에F67,왼쪽아래F66,위쪽에F29있음
83	F71	나1-475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나1-475) ○오른쪽:F72○오른쪽아래:F70
84	F7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오른쪽위:F69○왼쪽:F71○왼쪽아래:F70 ○오른쪽:F73○아래쪽:도랑있음
85	F73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86	F75	나1-477	무연	김*복	단장	비석	화강석	0.76X0.3X0.15	1	○비석(김해김공*복지묘-한자)/1989.8.4. 추 ○묘지석없음 ○위쪽:F77(좌),F75-1(우)○왼쪽(F74) ○아래쪽:도랑○오른쪽:F78
87	F81	묘번무	무연	-	단장					-
88	F8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위쪽:F88○왼쪽위:F87○오른쪽:F83 ○ 아래쪽 : F82
89	F83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90	F86	나1-688	무연	한*수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5	1	○비석(청주한공*수지묘-한자)/1972.4.21(음력) ○왼쪽위:F28○오른쪽:F87○오른쪽아래:F84
91	F8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나1-6○○) ○오른쪽:F89○아래쪽:F82○왼쪽:F87
92	F89	묘번무	무연	-	단장					-
93	F90	묘번무	무연	전주이*희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2	1	-
94	F93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95	F94	묘번무	무연	-	단장					-
96	F95	묘번무	무연	-	단장					-
97	F96	묘번무	무연	-	단장					-
98	F98	나1-491	무연	정*성	단장	비석	화강석	0.78X0.26X0.15	1	○비석(연일정공*성지묘-한자) ○묘지석있음(나1-491) ○오른쪽아래:F97,먼오른쪽아래:F62있음 ○1954.3.9.
99	F99	나1-672	무연	조*순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25X0.12	1	○비석(한양조씨*순지묘-한글) ○묘지석없음 ○왼쪽위:F37○오른쪽위:F98○오른쪽:F97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964.음4.14.후
100	F101	묘번무	무연	-	단장					-
101	F10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위쪽에F109,왼쪽아래F104 ○오른쪽에F102,아래쪽에도랑있음
102	F10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F106,아래쪽도랑,오른쪽F104,위쪽F110 있음
103	F11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위에 F110 있고 왼쪽위에 F114 있고 왼쪽에 F112 있고 아래쪽에 F106 있고 오른쪽아래에 F105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묘유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04	F114	나3-1361	무연	이*환	단장	비석	콘크리트	0.65X0.23X0.07	1	○비석(고이*환지묘-한자)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위쪽F128,왼쪽위F115,오른쪽아래F110,아래쪽에F112있음 ○단기4291.7.11.
105	F115	묘번무	무연	연*백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3	1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06	F118	나3-1199	무연	김*근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25X0.12	1	○비석(김해김공*근지묘-한글)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위쪽:F130○오른쪽위:F131○오른쪽:F117 ○아래쪽:도랑있음 ○1988.2.21.추
						석축1	화강석	5X0.7	1	
						석축2	화강석	9X0.6	1	
107	F12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위쪽:F162○오른쪽위:F127
108	F130	나3-1325	무연	서흥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1X0.4X0.15	1	○비석(유인서흥김씨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위쪽:F158○왼쪽위:F157○오른쪽:F131 ○아래쪽:F118 ○서기1972.음.1.25추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09	F137	나2-609	무연	김*환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25X0.12	1	○비석(경주김공*한지묘-한글)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위:F139○왼쪽:F138○아래쪽:도랑 ○1982.음.4.9/5.2.후
						상석	화강석	0.72X0.5X0.15	1	
110	F139	나2-607	무연	경주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	1	○비석(유인경주김씨지묘-한글)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어려움 ○위쪽:F147○오른쪽아래:F137 ○아래쪽:F138 ○ 왼쪽 : F140 ○1982.음.2.16/3.11.후
111	F144	나2-630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25X0.12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글)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나2-6??) ○왼쪽위:F186○오른쪽위:F185○왼쪽아래:F143 ○1988.6.18.후
						상석	화강석	0.72X0.5X0.15	1	
						석축1	화강석	7X0.7	1	
						석축2	화강석	10X0.9	1	
						돌받침	화강석		5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꽃병	화강석		1	
112	F152	나3-1538	무연	김*이	단장	비석	대리석	0.92X0.3X0.12	1	○비석(십자가+장로김*이지묘-한자) ○묘지석있음(나2-920) ○위쪽:F177○오른쪽:F153 ○ 아래쪽 : F136 ○1910.음.8.22.卒/1993.3.2.卒
						돌레석	대리석	2.4X1.7X0.35	1	
113	F157	나3-1288	무연	윤*형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3	1	○비석(윤*형의묘-한글) ○묘지석없음 ○위쪽:F173(좌),F172(우) ○왼쪽:F156 ○ 오른쪽 위 : F158 ○ 오른쪽 아래 : F130 ○1978.7.24.卒
114	F180	나2-657	무연	박*주, 송*철	합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	1	○비석(십자가+고박*주지묘-한자)1963.2.28.卒 ○비석(십자가+고송*철지묘-한자)1963.2.28.卒 ○묘지석있음 ○왼쪽:F181○왼쪽아래:F148○아래쪽:F149
115	F18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위F192,오른쪽위F193,왼쪽F184,오른쪽F182있음
116	F189	나2-645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3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1974.8.31. 추 ○묘지석없음 ○왼쪽위F237,위쪽F236,오른쪽위 F235, 왼쪽 F188, 오른쪽에 F190 있음.
117	F191	나2-648	무연	김*현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2	1	○비석(경주김공*현지묘-한자)-1978.7.11. 추 ○묘지석없음 ○오른쪽위F231,오른쪽F192,아래쪽F185,오른쪽아래F184있음
118	F199	나2-662	무연	배*남	단장	비석	화강석	0.8X0.3X0.12	1	○비석(십자가+성도배*남지묘-한자)-1988.3.18.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나2-6○○) ○왼쪽F198,오른쪽F200,아래쪽F178 ○오른쪽아래F179있음
						상석	콘크리트	0.72X0.5X0.2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1	화강석	4X0.9	1	
						석축2	화강석	5X0.5	1	
119	F211	나3-1376	무연	조*출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3	1	○비석(한양조공*출지묘-한자) ○묘지석있음(나3-1376) ○1970.음.11.25/12.23. ○오른쪽위에E28,왼쪽아래F210 있음
120	F23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 ○위쪽에F253,왼쪽에F231 있음
121	F233	나2-675	무연	광산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X0.3X0.12	1	○비석(유인광산김씨지묘-한자)/1965.음.11.14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위:F253○왼쪽:F234○오른쪽:F232
122	F234	나2-676	무연	진주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3X0.15	1	○비석(근유인진주강씨지묘-한자)/1979.4.1.4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위:F242○왼쪽:F235○오른쪽:F233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23	F243	나2-682	무연	최*순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1	1	○비석(최*순지묘-한자)/1970.음.8.15卒 ○묘지석없음 ○위쪽F248,왼쪽아래F246,오른쪽아래F242있음
124	F25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위쪽에F291,오른쪽에F255있음
125	F259	나2-693	무연	예산송씨	단장	비석	화강석	0.8X0.3X0.1	1	○비석(유인예산송씨지묘-한자/1977.음.7.18.卒 ○묘지석있음(나2-693) ○위쪽:F288○오른쪽위:F261○오른쪽:F260있음
						상석	콘크리트	0.9X0.7X0.2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26	F26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나2-69(?)7) ○왼쪽위:F288○왼쪽아래:F259 ○아래쪽:F260○오른쪽아래:F262있음
127	F26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3-1132) ○위쪽:F262(좌),F263(우)○왼쪽:F260
128	F275	나3-1171	무연	정*수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3X0.11	1	○비석(경주정공*수지묘-한자)/1964.음.11.26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위쪽F272,오른쪽 F273 있음
129	F27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위쪽에F274,왼쪽에F273,오른쪽에F281 ○오른쪽아래 F278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30	F281	나3-1053	무연	김*국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7X0.07	1	○비석(고김*국○○○-한자)/1974.(?)(?)(?) ○왼쪽위:F274○왼쪽:F276○아래쪽:F278있음
131	F282	나3-102	무연	신*일	단장	비석	화강석	0.7X0.25X0.15	1	○비석(고신천강공*병○○○-한글)/1971.6.1./ (음)5.9 ○묘지석없음 ○위쪽:F285○오른쪽:F283○왼쪽아래:F263 ○아래쪽:F268 ○ 오른쪽아래 : F269 있음
132	F299	나2-718	무연	편*우	단장	비석	대리석	0.72X0.3X0.13	1	○비석(고편*우지묘-한글)/1985.2.24. 추/정월. 5. 추 ○묘지석없음 ○비석뒷면표기:목련이어라목련이어라 한없이 불러도 모자랄 들꽃을 바라보며 이십여를 서성이던 이제는 다시 핀 한송이 목련(시로 추정)친구일동, 가족이름 없음 ○왼쪽위F298, 위쪽F297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33	F300	묘번무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15X0.1	1	○비석(전주이공?우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왼쪽위:F56○왼쪽:F57○오른쪽:F59○아래쪽:도랑 ○기일:1970.1.19.
134	G11	나1-826	무연	전*용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X0.12	1	○비석(담양전공*용지묘-한자)/1982.음.1.20, 2.23. ○묘지석없음 ○위쪽:시멘트길 ○ 왼쪽 : G10 있음
						상석	콘크리트	0.4X0.3X0.05	1	
						석축	화강석	8X0.4	1	
135	G2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오른쪽에G25,아래쪽에G27있음
136	G57	나1-768	무연	고*선 임*태	합장	비석	화강석	0.78X0.25X0.1	1	○비석(청주고공*선지묘-한자)1982.음1.6.후 비석(유인평택임씨지묘-한자) 1992.음2.4.후 ○묘지석있음(○○○-768) ○위쪽:G58 ○ 오른쪽 : G56 ○ 아래쪽 : 도랑아래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묘구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4X0.5X0.15	1	
						석축1	화강석	2.3X0.5	1	
						석축2	화강석	4X0.5	1	
						돌받침	화강석		6	
						꽃병	화강석		1	
137	G62	묘번무	무연	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25X0.1	1	○비석(십자가+유인한산이씨지묘-한글)/1985.3.30.후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왼쪽아래:G63○오른쪽아래:G61○위쪽:G4있음
						석축1	화강석	5X1	1	
						석축2	화강석	3X0.7	1	
138	G66	나1-772	무연	문*식	단장	비석	화강석	0.78X0.25X0.1	1	○비석(남평문공*식지묘-한자)/1987.음.11.5, 12.25.후 ○묘지석있음(나2-772) ○왼쪽위G68,오른쪽위G57,왼쪽G69,오른쪽위G57,오른쪽:도랑,다리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5X0.45X0.1	1	
						석축	화강석	4X0.6	1	
						꽃병	화강석		1	
139	G88	묘번무	무연	오*미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05X0.05	1	○비석(고고*미의묘)/1982.1.22.후 ○묘지석없음 ○오른쪽:G89○먼왼쪽아래:E361.E362있음
140	G9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시멘트재질)있으나,글자인식어려움 ○위쪽G97-1,왼쪽G98,오른쪽아래G86있음
141	G9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에G97,왼쪽아래G98,아래에G96있음
142	G9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왼쪽위에G91있고아래쪽에G9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43	G126	나2-447	무연	조*백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	1	○비석(백천조공*백지묘-한글)1965.음2.1./3.21. ○묘지석있음(나2-447) ○위쪽G125,왼쪽위G129,왼쪽G127있음
144	G128	나2-467	무연	박*순	단장	비석	화강석	0.6X0.3X0.1	1	○비석(유인밀양박*순지묘-한글)/1978.음.10.8. ○묘지석(나2-467)있음,시멘트재질비석임 ○위쪽에G127,왼쪽에G136,아래쪽에G102있음
						석축	화강석	2X0.2	1	
145	G153	나2-14	무연	지*봉	단장	비석	화강석	0.68X0.3X0.08	1	○비석(십자가+성도지*봉지묘-한글)/1982.7.13.후 ○묘지석있음(나2-14) ○왼쪽에G152있고오른쪽에G154있음
146	G15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87) ○오른쪽아래G156,아래쪽G157,오른쪽아래G158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47	G174	나2-125	무연	윤*건	단장	비석	화강석	0.78X0.3X0.1	1	○비석(십자가+파평윤공*건의묘-한글) ○묘지석있음 ○왼쪽에G173,오른쪽에G175있음
148	G191	나2-432	무연	이*열	단장	비석	화강석	0.52X0.25X0.08	1	○비석(이*열의묘-한글) ○묘지석있음(나2-432) ○왼쪽위G242-1,왼쪽G192,오른쪽G190있음  ○1972.9.6.生 ○1979.6.16.卒
						상석	콘크리트	0.5X0.3X0.05	1	
						석축	화강석	2X0.5	1	
149	G20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위쪽:G201,오른쪽G202,아래쪽G298있음
150	G203	나2-502	무연	허*도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X0.07	1	○비석(양천허공*도지묘-한글)/1968.6.13. ○묘지석(나2-502)있음 ○위쪽에G204,왼쪽에G201,왼쪽아래G202있음 ○비석뒷면마모로글자해독어려움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콘크리트	0.6X0.4X0.1	1	
						석축	화강석	3X0.3	1	
151	G207	나2-490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위쪽:G208○왼쪽위:G208-1○오른쪽위:G204 ○오른쪽:G205 ○왼쪽아래:G381
152	G20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G208-1,오른쪽위J5,왼쪽아래G207,오른쪽 G204, 아래 G205 있음
153	G208-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위쪽에J6,왼쪽에G210,오른쪽에G208,오른쪽아래G207있음
154	G211	나2-581	무연	고*환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581) ○왼쪽에G212,오른쪽에G209,왼쪽아래G213 ○아래210있음.
155	G21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위쪽에G212,왼쪽에G189,아래쪽에G21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56	G21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420) ○위쪽에G217,오른쪽에G189 있음
157	G218	나2-345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2X0.3	1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345) ○왼쪽아래J15있음
158	G21-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340) ○위쪽G224,왼쪽G222,왼쪽아래G221있음
159	G222	나2-40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407) ○위쪽에G223,오른쪽에G222-1,아래쪽에G221 ○왼쪽아래G382있음
160	G225	묘번무	무연	학생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	1	○비석(학생수(?)성최공지묘-한자) ○묘지석없음 ○비석마모,훼손으로글자해석어려움
161	G226	나2-330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330)있음 ○왼쪽위G224,오른쪽위G229,오른쪽G227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62	G228	나2-338	무연	-	단장					-
163	G229	나2-329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329)있음 ○왼쪽위G244,왼쪽아래G226,오른쪽아래G227 있음
164	G232	나2-332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위쪽G255,왼쪽G250,오른쪽아래G230 ○아래쪽G231 있음
165	G23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아래G235있고오른쪽아래G261 있음
166	G237	나2-292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292)있음 ○왼쪽위에G238,오른쪽위에G235있음
167	G24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위쪽G382,오른쪽G242-1,오른쪽아래G192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68	G24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G382,왼쪽G242,아래쪽G192 ○오른쪽아래G191있음
169	G246	나2-135	무연	박*철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X0.05	1	○비석(박*철의묘-한자,한글)/1975.2.17. 추 ○묘지석있음(나2-135) ○오른쪽G245,위쪽G249,왼쪽아래G198있음
170	G250	나2-159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159)있음 ○왼쪽위G249,왼쪽아래G248,오른쪽:G232,오른쪽아래에G239있음
171	G253	나2-15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157) ○위쪽:G254○왼쪽:G251 ○오른쪽:G256○왼쪽아래:G249
172	G25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앞에아주큰상석있음 ○오른쪽G238, 아래쪽 G255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73	G257	나2-155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155) ○오른쪽아래:G256 ○오른쪽:G258 ○ 아래쪽 : G254
174	G258	나2-161	무연	임*성	단장	측백나무		2.0	1	○비석없음 ○묘지석(나2-161)있음 ○왼쪽:G257 ○왼쪽아래:G254 ○오른쪽아래:G238있음
175	G262	나2-26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267) ○왼쪽G261,왼쪽아래J28,아래쪽에J29있음.
176	G263	나2-269	무연	단양장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X0.1	1	○비석(유인단양장씨지묘-한자) ○묘지석있음(나2-269) ○왼쪽에G264,아래쪽에J30
						석축	화강석	4X0.3	1	
177	G281	나2-173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5X0.3	1	○비석없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나2-173)있음 ○왼쪽위에G283,오른쪽에G279있음
178	G295	나2-81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81)있음 ○위쪽에G294,왼쪽에G296,아래쪽에G171있음
179	G302	나2-73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73)있음 ○왼쪽에G164,아래쪽에G301있음
180	G309	묘번무	무연	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	1	○비석(전주이공지묘-한자)/1972.음.5.13추 ○묘지석있음(나2-68) ○왼쪽위G308,오른쪽에G310있음
						상석	콘크리트	0.7X0.4X0.05	1	
						석축	화강석	4X0.3	1	
181	G31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에G377있고왼쪽아래G317,G316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82	G328	나2-208	무연	이*순	단장					-
183	G33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에G333,오른쪽에G331두분묘사이에있음
184	G338	나2-179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왼쪽위G309,왼쪽G310,아래쪽G311있음
185	G340	나2-181	무연	-	단장					-
186	G341	나2-48	무연	용*식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48)있음 ○왼쪽에G345,아래쪽에G308있음
187	G349	나2-32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나2-32)있음 ○왼쪽위에G366,오른쪽에G348있음
188	G359	나2-2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위쪽에G358,왼쪽위G361,아래쪽G162있음
189	G366	나2-25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X0.2X0.07	1	○비석(유인경주이씨지묘-한자)/1973.12.13. ○묘지석있음(나2-25) ○위쪽G379,왼쪽:G365,오른쪽G366 ○오른쪽아래G349있음
						석축	화강석	3X0.8	1	
190	G375	나2-42	무연	이*구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3X0.08	1	○비석(전주이공*구지묘-한자)/1975.음.2.6. ○왼쪽에G378,오른쪽에G376있음
						상석	화강석	0.6X0.4X0.05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화강석	2X0.2	1	
						측백나무		1.3	2	
191	G380	나2-100	무연	김*영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05	1	○비석(십자가+성도김*영의묘-한글)/1977.6.6 ○묘지석(나2-100)있음 ○위쪽:G168○왼쪽위:G167○오른쪽:G169있음 ○비석뒷면에나는부활이요,생명이니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 겠고,요11장25절
192	G381	묘번무	무연	강*석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	1	○비석(진주강공*석지묘-한자)/1964.12.11. ○묘지석없음 ○오른쪽G207,오른쪽아래G205,오른쪽위에G206있음
193	G382	나2-410	무연	김해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1	1	○비석(유인김해김씨○○○○-한자)/1951.1.4 ○왼쪽위에G221,왼쪽에G222,아래쪽에G242있음
194	H4	나2-202	무연	-	단장					○비석없고묘지석없음 ○위쪽에시멘트도로가있고왼쪽에H5,오른쪽에H13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95	H5	나2-203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2-203) ○위쪽:H3(그위에시멘트도로)○오른쪽위에H1 ○오른쪽에H4있음
196	H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유인청풍김씨지묘-한자)/1971.음.11.14.후 ○위쪽:H4○오른쪽위:H13○오른쪽아래:H2있음
197	H14	나2-216	무연	이*상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25X0.10	1	○비석(전주이공*상지묘-한자)/1974.9.25. ○묘지석있음 ○왼쪽에H13있음
198	H2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아래:H27(그아래시멘트도로)
199	H2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오른쪽위에H32,오른쪽에H30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00	H40	가12-84	무연	구*서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25X0.7	1	○비석(능성구공*서지묘-한자)/1981.10.10.(음),116. ○묘지석있으나훼손되어일부만인식됨 ○위쪽에H54,왼쪽위에H44,왼쪽에H39,오른쪽에H55있음
						소나무			2	
201	H4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유인진천임씨지묘-한자)/1971.음.11.18.후 ○묘지석없음 ○화강석비석(31×11×60) ○오른쪽위에H42,오른쪽에H38,아래쪽에H36, H37있음
202	H4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H43 ○ 오른쪽 위 : H54 ○왼쪽아래:H39○오른쪽아래:H40있음
203	H56	가12-140	무연	남*현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30X0.10	1	○비석(남*현의묘-한글)/1985.4.29.후 ○묘지석없음 ○위쪽에H57,왼쪽위에H55,오른쪽에H5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04	H72	가12-107	무연	이*실리아	단장					○비석(십자가+ 고이*시리아(*숙)지묘/1957.11.25.卒 ○묘지석있음(가12-107) ○왼쪽:H17(좌),H16(우)○오른쪽:H71있음
205	H77	가12-408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완전히해석할수없음 ○위쪽:H104○오른쪽위:H105○왼쪽:H74 ○오른쪽:H78있음
206	H9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X0.1	1	○비석(풍산김공○○○-한자) (유인선성김씨○○-한자) ○왼쪽:H89○왼쪽아래:H61있음
						석축	화강석	3X0.5	1	
207	H94	가12-563	무연	김*현	단장	비석	화강석	0.80X0.30X0.10	1	○비석(안동김공*현의묘-한글)/1974.丁.2.4.卒 ○묘지석없음 ○위쪽:H121○왼쪽:H95○오른쪽위:H93 ○오른쪽에:H9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08	H9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30X0.05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위쪽에H98,오른쪽에H96있음
209	H10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태안이공*진지묘-한자)/1962. ○. ○. ○비석이물혀있고마모가심해글자인식어려움 ○왼쪽아래 H76 있고 오른쪽에 H104 있고 위쪽에 H131 있음
210	H117	가12-605	무연	한*진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25X0.15	1	○비석(청주한공*진지묘-한자)/1962.음.2.12. 추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왼쪽위:H116○오른쪽:H118○왼쪽:H197 ○아래:H100있음
						석축	화강석	4X0.6	1	
211	H11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왼쪽에H117,오른쪽에H119,아래 H98 있음
212	H119	묘번무	무연	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25X0.15	1	○비석(유인해주최씨지묘-한자)/1974.음.10.21. ○묘지석있음(가12-600) ○왼쪽위에H144,왼쪽H118있음
213	H122	묘번무	무연	이*선	단장	비석	화강석	0.68X0.30X0.07	1	○비석(십자가+전주이씨*선(요셉)지묘-한자)1968.2.1? ○비석은시멘트재질임 ○위쪽H147,왼쪽H121,오른쪽H123있음
214	H12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H125,오른쪽위H127,왼쪽아래H126 ○아래쪽에151있음
215	H148	묘번무	무연	오*근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19X0.10	1	○비석(해주오공*근지묘-한자)/1971.4.6. ○묘지석있음(가12-774) ○오른쪽에H149,아래쪽에H127있음
				-		상석	콘크리트	0.65X0.45X0.10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1	화강석	8X0.5	1	
						석축2	화강석	5X0.6	1	
216	H15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X0.1	1	○비석(단양우공군섭지묘-한자)/1967.12.26. ○왼쪽에H151있고아래쪽에H148있음
217	H160	가12-733	무연	조*현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30X0.10	1	○비석(창녕조공*현지묘-한자)/1980.2.6.추 ○묘지석있음(가12-733) ○왼쪽에H159,오른쪽에H116있음.
						상석	화강석	0.60X0.45X0.05	1	
						석축1	화강석	6X0.6	1	
						석축2	화강석	6X0.8	1	
218	H191	가12-698	무연	김*현	단장	비석	화강석	1X0.31X0.15	1	○비석(광주김공*현지묘-한자)/1978.음.1.20.추 ○비석(유인강화노씨지묘-한자)/1972.음.5.24.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후 ○H191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위쪽:H193(그위에등산로)○왼쪽위:H190
						상석	콘크리트	0.70X0.50X0.10	1	
219	H192	가12-699	무연	강화노씨	단장	비석	화강석	0.8X0.35X0.15	1	○비석(광주김공*현지묘-한자/1978.음.1.20.후 ○비석(유인강화노씨지묘-한자/1972.음.5.24.후 ○H191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위쪽:H193(그위에등산로)○왼쪽위:H190
220	H19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가12-66(?)) ○왼쪽:H190○오른쪽:H194○아래:H191,H192 있음
221	H19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위:H113○오른쪽:H117○오른쪽위:H116
222	i2	나2-229	무연	심*자	단장	비석	화강석	1.2X0.6X0.4	1	○비석(연안이공*지묘-한자.1984.음.12.25.후 (유인청송심씨)지묘-한자/1996.음.11.16.후 ○오른쪽:i1○아래:J3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대리석	0.77X0.5X0.16	1	
						석축1	화강석	8X0.3	1	
						석축2	화강석	10X0.5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측백나무		1.5, 1.8, 2	3	
223	i7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1	화강석	6X0.2	1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해석불가 ○왼쪽위:i12○오른쪽위:i10 ○ 오른쪽 : i8 ○위에:i11있음
						석축2	화강석	10X2	1	
224	i41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3X0.2	1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위에:i58,i59○오른쪽위:i40 ○오른쪽아래:i38있음
225	i4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왼쪽위에H70,아래쪽에H15,왼쪽에H71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26	i54	IK-54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1X0.13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1968.음.1. ○묘지석(가12-165)확인 ○왼쪽:146○오른쪽:155○아래:145 ○오른쪽위에:153있음 ○비석뒷면상태가좋지않아판독어려움
227	i57	묘번무	무연	전주최씨	단장					○비석(강명옥어머님묘-한글) ○비석옆면,뒷면상태가좋지않아글자해독어려움 ○왼쪽:156○오른쪽위:158있음
228	i68	가12-185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가12-125?) ○왼쪽에169,오른쪽에167,위쪽에171있음.
229	i78	가12-192	무연	이*선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3	1	○비석(연안이공*선지묘-한자)/1983.음.2.13.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있음(가12-192) ○왼쪽:162○오른쪽아래:160 ○ 왼쪽아래 : 161 ○왼쪽위에:177있음
						상석	콘크리트	0.7X0.4X0.1	1	
						석축1	화강석	5X0.3	1	
						석축2	화강석	8X0.5	1	
						수목		회양목1,사철나무2	2	
230	i7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왼쪽:178○오른쪽:180○아래:160
231	i93	가12-226	무연	박*열	단장	상석	화강석	0.77X0.5X0.16	1	○상석에내용있음(면천박씨*열지묘-한글)/1953.음.10.25. ○비석없음,묘지석있음(가12-226) ○위에:1101○오른쪽위:1100○왼쪽에:192있음
						석축	화강석	4X0.5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돌받침	화강석		5	
232	i9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유인강능함씨지묘-한글/1958.음.3.16. 추 ○왼쪽아래:i33○오른쪽아래:i32○위에:i96
233	i104	가12-259	무연	전*봉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가12-259) ○왼쪽위:i197○오른쪽위:i198 ○ 왼쪽에 : i105 있음
234	i106	가12-628	무연	연일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5X0.15	1	○비석(유인연일정씨지묘-한자)/1969.음.10.7. 추 ○왼쪽아래:i107○오른쪽아래:i105 있음
235	i107	가12-249	무연	박문수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3X0.15	1	○비석(무안박공문수지묘-한글)/1986.10.28. 추 ○오른쪽위:i106 ○ 아래쪽 : i79 ○ 오른쪽에 : i105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7X0.5X0.16	1	
						석축	화강석	6X1	1	
						돌받침	화강석		5	
236	i108	가12-807	무연	윤*인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5	1	○비석(파평윤공*인지묘-한자/1987.윤.6.29./8.23.卒 ○묘지석있음(가12-807) ○위쪽:1187○오른쪽위:1188○왼쪽아래:175 ○왼쪽에:1109○왼쪽위에:1186
						석축1	화강석	6X0.3	1	
						석축2	화강석	4X0.5	1	
237	i117	가12-735	무연	이*근	단장	비석	화강석	0.9X0.33X0.15	1	○비석(전주이공*근지묘-한자)/1988.음.8.10.卒 ○왼쪽:H160,1116○아래:1119○위에:등산로
						상석	화강석	0.4X0.2X0.1	1	
						석축	화강석	6X0.5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38	i124	가12-789	무연	주*동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3X0.15	1	○비석(신안주공*동지묘-한자)/1982.윤.4.7./5.29.후 ○묘지석없음 ○왼쪽:i123○위쪽에:등산로○아래:i179
						상석	화강석	0.77X0.5X0.14	1	
						석축1	화강석	4X0.2	1	
						석축2	화강석	6X1	1	
						돌받침	화강석		5	
239	i127	가12-819	무연	김*옥	단장	비석	대리석	0.55X0.23X0.15	1	○비석(십자가+성도김*옥지묘-한글)/1985.2.28.후 ○묘지석(가12-819)있음 ○왼쪽:i126○오른쪽:i128○왼쪽아래:i178있음
						상석	화강석	0.4X0.2X0.1	1	
240	i142	가12-896	무연	홍*유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5	1	○비석(십자가+남양홍공*유지묘-한글)/1988.9.10.후 ○묘지석있음(가-1(?)-896) ○위에:등산로○오른쪽:L202○아래:i143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화강석	4X0.5	1	
241	i14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왼쪽위:i142(그위에등산로)○오른쪽위:L202 ○오른쪽:L201있음
242	i16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오른쪽:i160○아래:i163
243	i163	가12-841	무연	서*남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3X0.15	1	○비석(달성서공*남지묘-한자)/1985.음.2.3.췌/3.23.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위쪽:i161 ○오른쪽 아래 : I204 ○아래 : I203
						상석	콘크리트	0.9X0.5X0.1	1	
						석축1	화강석	6X0.8	1	
						석축2	화강석	10X1	1	
244	i189	가12-811	무연	함평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9X0.33X0.15	1	○비석(유인함평이씨지묘-한자)/1969.음.6.16.췌 ○묘지석있음(가12-81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위:1175○오른쪽:1190○왼쪽아래:1186 ○왼쪽:1184 ○ 오른쪽위 : 1174
						상석	콘크리트	1X0.6X0.14	1	
						석축	화강석	4X0.5	1	
245	i195	묘번무	무연	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15X0.15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병신년6.24. ○묘지석없음 ○위에1191,아래에1107,오른쪽에1192,왼쪽에1190있음
246	i197	가12-252	무연	-	합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가12-252) ○위쪽:1192○오른쪽:1198○왼쪽아래:1105
247	i202	묘번무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5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1963.10.24. 추 ○위쪽에1165,1164,아래쪽에1200있음
						상석	화강석	0.4X0.4X0.1	1	
						석축	화강석	6X1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48	i204	묘번무	무연	양성이씨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묘번이(가12-286,가12-296)으로추정 ○왼쪽위:i163○오른쪽:i205○왼쪽:i203있음
249	i212	가13-66	무연	박*병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5X0.15	1	○비석(밀양박공*병지묘-한자)/단기4294.4.11.卒 ○묘지석있음(가13-66) ○왼쪽에i213있고왼쪽아래i225있음
						상석	콘크리트	1X0.7X0.1	1	
						석축1	화강석	6X0.3	1	
						석축2	화강석	6X0.5	1	
250	i226	가13-40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3X0.15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자)/1982.음.9.6.卒 ○왼쪽에i222있고오른쪽에i223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묘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6X0.45X0.12	1	
						상석(바닥)	화강석	0.8X0.6X0.3	1	
						석축1	화강석	8X0.3	1	
						석축2	화강석	10X0.5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족발나무		0.5, 1.0	2	
251	1230	가13-35	무연	오*근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3	1	○비석(해주오공*근지묘-한자)/1979.음.3.19./4.15.후 ○묘지석있음(가13-35) ○왼쪽:1229 ○ 아래 : 1233 ○ 왼쪽아래 : 1236 있음
						상석	콘크리트	1X0.4X0.1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1	화강석	6X0.5	1	
						석축2	화강석	8X0.5	1	
252	J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J2○오른쪽:J4○위:G203있음
253	J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에G203있고오른쪽에J6,왼쪽아래J4있음
254	J11	나2-351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351)있음 ○왼쪽J10,오른쪽J12,위쪽J17,왼쪽위에G209있음
255	J1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1X0.11	1	○비석및묘지석없음 ○오른쪽위쪽에J55있음
						족백나무		2.0	3	
256	J17	나2-356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356)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위:G209○왼쪽아래:J10 ○ 아래 : J11 있음
257	J42	묘번무	무연	-	단장					-
258	J46	나2-305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4X0.8	1	○비석없음 ○묘지석(나2-305)있음 ○ 왼쪽 J47, 오른쪽에 J45 있음
259	J54	나2-368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368)있음 ○왼쪽위에J55,왼쪽아래에J60있음
260	J5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에J56있고오른쪽아래J54 있음
261	J5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위에J58,오른쪽위에J60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62	J6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아래J61있음
263	J63	나2-391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2-391)있음 ○왼쪽에J64 있음
264	J68-1	나2-396	무연	*영	단장	비석	화강석	0.6X0.18X0.09	1	○비석(*영아편히잠들어라-한글)/1978.74.후 ○묘지석없음 ○비석뒷면:아빠엄마가 ○오른쪽위에J68-2있음
265	J68-2	나2-395	무연	최*경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5	1	○비석(고최*경지묘-한자)/단기4289.5.?? ○묘지석없음 ○왼쪽아래J68-1있음.
266	J78	나4-1280	무연	유*석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1	1	○비석(고흥유공*석지묘-한자)/1981.음.10.3./10.30.후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안됨 ○왼쪽에J85있고위쪽에J84있음
						상석	화강석	0.4X0.2X0.1	1	
267	J7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127○)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위에J80-1있고위쪽에J80 있음.
268	J80	나4-1290	무연	김*숙 이*갑	합장	비석	화강석	0.8X0.33X0.15	1	○비석(용천이공*갑지묘-한자)1985.음.9.6.추 (김해김씨*숙지묘-한자)1981.음.5.16.추 ○왼쪽J80-1,오른쪽위J81,아래쪽J79,위쪽J82 있음
						상석	화강석	0.4X0.2	1	
						석축	화강석	6X0.5	1	
						축백나무		1.3	2	
269	J80-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위J82,오른쪽J80,오른쪽아래J79있음
270	J9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에J89있음
271	J96	묘번무	무연	이*?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1	1	○비석(십자가+여주이공*달지묘-한자)/1962. 음.2.9.추 ○왼쪽J97,오른쪽J95,아래쪽J38,왼쪽아래J37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있음
						석축	화강석	8X0.5	1	
						상수리묘		10.0	2	
272	J12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3X0.13	1	○비석(전주이씨용범???-한자)/단기4291.12.(??). ○묘지석없음 ○시멘트재질비석대부분땅에 묻혀있음 ○오른쪽위J126,아래쪽J152,왼쪽아래J151있음
273	J136	나4-80	무연	강*형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X0.1	1	○비석(진주강공*형지묘-한자)/1981.11.12. ○묘지석(나4-80)있음 ○위쪽J135,오른쪽위J130,오른쪽아래J142있음
						상석	콘크리트	1X0.6X0.2	1	
						석축1	화강석	9X0.3	1	
						석축2	화강석	6X0.5	1	
						향나무		1.0	2	
274	J140	묘번무	무연	-	단장	향나무		2.0	1	○비석(학생연안이공*승지묘-한자)/1978.12.23.후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유인진주유씨부좌지묘-한자)/1990.8.12. 추 ○왼쪽J139,오른쪽J141,왼쪽아래J91있음
275	J141	나4-1297	무연	이*승	단장	비석	대리석	0.6X0.24X0.13	1	○비석(학생연안이공*승지묘-한자)/1978.12.23. 추 (유인진주유씨부좌지묘-한자)/1990.8.12. 추
						상석	화강석	1X0.5X0.3	1	
						석축1	화강석	4X0.3	1	
						석축2	화강석	4X1.5	1	
						돌받침	화강석		5	
						향나무		1.5	1	
276	J14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오른쪽위에J142,J145,오른쪽에J144 있음.
277	J151	나4-83	무연	임*연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3	1	○비석(울진임공*연지묘-한자)/단기4292.10.20. 추 ○묘지석(나4-83)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에J150있고오른쪽에J112있음
278	J159	나4-185	무연	이*근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3	1	○비석(전주이공*근지묘-한글)/1979.음.4.20.췌 ○묘지석(나4-185)있음 ○왼쪽에J158,위쪽:J202(좌),J201(우)있음
						상석	콘크리트	0.4X0.3X0.1	1	
						석축1	화강석	9X0.3	1	
						석축2	화강석	9X0.5	1	
						축백나무		1.0	1	
279	J162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1	화강석	8X1	1	○비석및묘지석없음 ○오른쪽에J192,아래쪽에J163 있음
						석축2	화강석	4X0.5	1	
						나무		2.0	1	
280	J16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427)있음,자료에는묘번없음 ○위쪽에J166,왼쪽아래J168,오른쪽아래J169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81	J17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위쪽에J189,왼쪽위에J166,오른쪽위 J171, 왼쪽아래 J169 있음
282	J172	나4-462	무연	서*석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X0.1	1	○비석(고서*석지묘-한자) ○묘지석(나4-462)있음 ○위쪽에J171,아래쪽에도랑있음
						석축	화강석	6X1	1	
283	J189	묘번무	무연	진주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5X0.13	1	○비석(유인진주강씨지묘-한자)/단기4288.정 월.12.후 ○묘지석없음 ○오른쪽J188,왼쪽아래J165,오른쪽아래J171, 아래쪽에J166있음
284	J191	묘번무	무연	강릉유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5X0.15	1	○비석(십자가+유인강릉유씨지묘-한자)/1964. 3.26.후 ○묘지석없음 ○왼쪽에163,위쪽J192,왼쪽위에J162있음
285	J19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에J194,오른쪽에J196,아래쪽에J192,오른쪽위에J200있음
286	J19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에J199,위쪽에J220,왼쪽위에J219있음
287	J202	나4-17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177)있음 ○위쪽에J212,오른쪽위J213,오른쪽에J201위치
288	J219	나4-173	무연	한*범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3	1	○비석(십자가+청주한공*범지묘-한자)/1985.음.7. 7.卒 ○묘지석없음 ○왼쪽J218,오른쪽J220,아래쪽J199,왼쪽아래J200있음
						상석	콘크리트	0.6X0.4	1	
						석축	화강석	6X0.3	1	
289	J220	묘번무	무연	-	단장	상석	화강석	0.77X0.5X0.16	1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화강석	5X0.3	1	
						돌받침			5	
290	J233	나4-116	무연	인동장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1	1	○비석(유인인동장씨지묘-한자)/1981.음.11.14./12.9. ○묘지석없음 ○왼쪽에J232,오른쪽에J234,아래쪽에J230 ○위쪽에시멘트길있음
						상석	콘크리트	1X0.6X0.2	1	
						석축	화강석	6X1.5	1	
						묘뚜껑		5, 7	2	
291	J239	나4-124	무연	임*임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1X0.13	1	○비석(유인임천임씨지묘-한자)/1959.음.7.24. 卒 ○묘지석(나4-124)있음 ○위쪽에J238,왼쪽위J253있음
292	J25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에J236,위쪽에J237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293	J25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123)있음 ○왼쪽에J239,오른쪽위J241,오른쪽아래K324 있음
294	J256	나4-153	무연	유*익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3X0.13	1	○비석(거창유공*의지묘-한자)/1978.4.5.추 ○묘지석(나4-153)있음 ○왼쪽J252,왼쪽아래J263,오른쪽아래J262있음
						상석	콘크리트	0.3X0.2X0.1	1	
295	J263	나4-154	무연	강*원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1X0.1	1	○비석(진주강씨*원지묘-한자)/1963.8.20.추 ○묘지석(나4-154)있음 ○왼쪽위J252,오른쪽위J256,왼쪽아래J223있음
						상석	콘크리트	0.4X0.2X0.1	1	
						석축	화강석	1X0.5	1	
296	J265	나4-254	무연	김*태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7X0.15	1	○비석(김해김공*태지묘-한자)/1959.음.2.24.추 ○묘지석(나4-254)있음 ○오른쪽J267,아래쪽J277,오른쪽아래J27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음
						상석	화강석	0.3X0.2X0.1	1	
297	J267	나4-255	무연	김용백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5X0.15	1	○비석(고김용백지묘-한자)/단기4287.12.초1 ○묘지석(나4-255)있음 ○왼쪽J265,오른쪽위J268,아래쪽J275,왼쪽위에J266있음
298	J26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262)있음 ○왼쪽J268,아래쪽J270있음
299	J273	나4-297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1X0.1	1	○비석없음 ○묘지석(나4-297)있음 ○왼쪽위에J274,위쪽에J270,오른쪽위J271 ○오른쪽아래에J272있음
300	J276	나4-392	무연	양천허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15X0.15	1	○비석(양천허씨지묘-한자)/단기4265.7.5.후 ○묘지석(나4-392)있음 ○왼쪽위에J277,오른쪽위에J275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01	J282	나4-395	무연	오*주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1X0.11	1	○비석(십자가+함양오*주의묘-한글)/1990.6.8 .쭈 ○묘지석없음.비석뒷면내용없음 ○왼쪽J283,오른쪽J281,아래쪽J285있음
						석축	화강석	4X0.5	1	
302	J287	나4-404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404)있음 ○왼쪽위에J282,왼쪽에J285 있음.
303	J294	묘번무	무연	-	단장					-
304	J29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에J299있고왼쪽아래J300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05	J29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에J301있고 오른쪽아래에 J298, 아래쪽에 J300 있음
306	J301	묘번무	무연	*금	단장	석축	화강석	8X0.3	1	○비석없음 ○묘지석(나4-496)있음 ○오른쪽에J299,오른쪽아래J300 있음
307	J30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에J310,오른쪽J308,오른쪽위J306 있음
308	J317	나4-459	무연	유*옥	단장					○비석(고유*옥지묘-한자)/196(?).7.4. ○묘지석없음 ○왼쪽J318,아래쪽에J316있음
309	J327	나4-447	무연	신*의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5	1	○비석(평산신공*의지묘-한자)/1966.정월.7.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나4-447)있음 ○위쪽에J332,왼쪽에J328,왼쪽아래J354,아래쪽에J326있음
						상석	화강석	0.7X0.4X0.1	1	
310	J328	나4-446	무연	신*수	단장					○비석없고묘지석위쪽훼손됨(?-446) ○위쪽J330,아래쪽J354,오른쪽위J332 ○오른쪽J327,오른쪽아래J326있음
311	J330	나4-416	무연	의성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3X0.11	1	○비석(유인의성김씨지묘-한자)/기묘정월초4 추 ○묘지석있음 ○왼쪽위J331,오른쪽J332,아래쪽J328 ○오른쪽아래J327있음
312	J33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1X0.11	1	○비석(남원양공*순의묘-한글)/1974.10.17.추 ○묘지석(나4-415)있음 ○오른쪽J332,오른쪽아래J330,J328 있음
313	J333	나4-411	무연	김*환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5	1	○비석(경주김공*환지묘-한글)/1976.6.21.추 ○묘지석(나4-411)있음 ○왼쪽아래J332,오른쪽아래J334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콘크리트	0.6X0.4X0.1	1	
314	J334	나4-437	무연	제주양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5X0.21X0.13	1	○비석(십자가+유인제주양씨지묘-한글)/195? 3.3.29.췁 ○묘지석(나4-437)있음 ○왼쪽위J333,왼쪽에J332,왼쪽아래J327,아래에J325있음
315	J340	가13-6	무연	김*현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3X0.15	1	○비석(경주김공*현지묘-한글)/1988.음.7.19./ 8.30.췁 ○묘지석(가13-6)있음 ○왼쪽J341,오른쪽K317,아래쪽에시멘트도로임
						상석	화강석	0.77X0.5X0.13	1	
						석축1	화강석	6X1	1	
						석축2	화강석	9X1.5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측백나무		2.0	2	
316	J35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아래J349,오른쪽K314, 아래쪽에 K298 있음
317	J354	묘번무	무연	안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1	1	○비석(고순흥안씨지묘-한자/단기4287.7.19. ○묘지석없음 ○시멘트재질비석임,비석뒷면글자없음 ○위쪽J328,오른쪽J326,오른쪽위J327있음
318	J35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기독인전주이*희지묘-한자/1956.1.10./1958.2.10. ○묘지석없음 ○아래쪽J124,왼쪽아래 J127 있음
319	J35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아래J109,오른쪽J356,아래쪽에J108있음
320	K7-1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21	K9	묘번무	무연	총주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2X0.26X0.16	1	○비석(유인총주지씨지묘-한자)/1966.1.7.추 ○묘지석없음 ○왼쪽K11,위쪽K33,오른쪽위 K8 있음
322	K11	나4-1077	무연	윤*선	단장	비석	화강석	0.74X0.25X0.1	1	○비석(파평윤공*선지묘-한자)/단기4292.기해.11.21.추 ○아래쪽에K356,오른쪽에K10있음
323	K20	나4-1212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1212)있음 ○왼쪽에K18,오른쪽위K144,오른쪽에K19있음
324	K2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5	1	○비석(김해김공*영지묘-한자)/1981.음.10.16.추 ○묘지석없음,비석우측면에웅진군동남면전당리1동 ○왼쪽K21,위쪽K140,오른쪽에K23있음
325	K2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에K22,위쪽에K140,오른쪽에K2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26	K25	묘번무	무연	이*일	단장	비석	화강석	0.54X0.22X0.08	1	○비석(십자가+주님품에안긴이*일의묘-한글)/1957.2.11.후 ○묘지석찾을수없음,비석뒷면내용없음 ○왼쪽위K139,위쪽 K138, 왼쪽 K24, 왼쪽아래 K26 있음
						상석	콘크리트	0.6X0.42X0.05	1	
327	K32-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0	1	○비석(유인김해김*신지묘-한자)/1972.12.26. ○왼쪽위K23,위쪽K24,오른쪽위 K26 있음
328	K32-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4X0.15X0.15	1	-
329	K33	나4-1123	무연	이*철	단장	비석	화강석	0.7X0.27X0.12	1	○비석(익산이공*철지묘-한자)/1966.음.1.7.후 ○왼쪽 K32, 왼쪽아래 K11, 아래쪽 K9, 오른쪽아래 K8 있음
330	K3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위쪽K360,아래쪽K40,오른쪽아래K42,오른쪽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K39 있음
331	K39-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5	1	○비석(경주김공*봉지묘-한자)/1975.음.5.21. 추 ○묘지석있음(나4-559) ○왼쪽 K19, 왼쪽아래 K42, 오른쪽 K205 있음
332	K4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K34,오른쪽위K38,오른쪽에K40있음
333	K50	나4-588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588)있음 ○위쪽K61,아래쪽K49,오른쪽아래K51 있음
334	K5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학생광주김공지묘-한자) ○묘지석(나4-577)있음 ○비석은시멘트재질임(폭10cm,높이30cm가량으로매우작음,글자인식어려움),비석전면에자녀이름,기일날짜있음 ○왼쪽위K61,왼쪽에K50,왼쪽아래 K51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35	K61	나4-571	무연	장*호	단장	비석	화강석	0.58X0.25X0.08	1	○비석(결성장공*호지묘-한자)/1979.음3.11./4.7.卒 ○묘지석(나4-541)있음 ○비석뒷면마모로글자인식어려움 ○오른쪽아래K52,오른쪽위K59,아래쪽에K50있음
						상석	콘크리트	0.45X0.4X0.05	1	
						향나무		7.0	1	
336	K70	묘번무	무연	김해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08	1	○비석(유인김해김씨*자지묘-한글)/1977.6.4.卒 ○묘지석없음 ○왼쪽위K73,위쪽K72,오른쪽아래K69있음
						묘뚜껑		1.8	1	
337	K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K72,왼쪽아래K70,아래쪽에K6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38	K75	나6-160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6-160) ○왼쪽K74,아래쪽에K73,오른쪽에K72있음
339	K8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연안송공성문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왼쪽아래K83,오른쪽위K86,오른쪽아래K82있음
340	K8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K87,오른쪽아래K80,왼쪽아래K81있음
341	K8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K86,왼쪽아래K84,오른쪽K85 ○아래쪽K82,오른쪽아래 K81 있음
342	K102	나6-177	무연	김*만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X0.1	1	○비석(경주김공*만지묘-한글)/1977.10.15. 추 ○묘지석(나6-177)있음 ○위쪽K103,오른쪽K100,왼쪽아래K10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43	K103	나6-201	무연	하*동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진주하공*동지묘-한자)/1969.음.10.7. 추 ○묘지석(나6-201)있음 ○왼쪽위N230,아래쪽K102,오른쪽아래K100있음
344	K105	나6-163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6-163)있음 ○오른쪽아래K104,오른쪽위K102있음
345	K114	묘번무	무연	조*호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	1	○비석(한양조공*호지묘-한자)/1977.10.15 ○비석뒷면마모심함 ○묘지석(나6-89)있음 ○오른쪽아래에K113,오른쪽에K112있음
346	K118	나6-110	무연	강*암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1	1	○비석(진주강씨*암지묘-한글)/1979.11.3. 추 ○묘지석(나6-110)있음 ○오른쪽에K117,오른쪽위K11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6X0.4X0.1	1	
347	K12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6-105)있음 ○오른쪽아래K119,오른쪽에K122있음
348	K128	묘번무	무연	김*배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김해김공*배지묘-한자)/1977.8음.28./10.10. ○묘지석없음 ○비석쓰러져있음 ○왼쪽위K130,왼쪽아래K129,오른쪽아래K127 있음
349	K14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K142,아래쪽K21,오른쪽에K140있음
350	K144	묘번무	무연	-	개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아래K19,오른쪽아래K142,아래쪽에K143있음
351	K152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52	K157	나4-353	무연	연안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유인연안이씨지묘-한자)/1963.정월.3.추. ○묘지석(나4-353)있음 ○위쪽에K160있음
						상석	콘크리트	0.3X0.6X0.08	1	
353	K16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오른쪽 위에 K197 있고 왼쪽에 K162 있음
354	K162	묘번무	무연	정*철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십자가+해주정공*철지묘-한자)/1961.음.6.(?) ○비석뒷면,옆면땅에문혀글자인식어려움 ○왼쪽에K164,오른쪽에K161있음
						석축	화강석	3X0.5	1	
355	K16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작은직사각형기둥(높이30cm정도)있으나글자없음 ○왼쪽약간아래에K166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56	K166	나4-293	무연	김*신	단장	비석	화강석	0.6X0.3X0.1	1	○비석(경주김공*신지묘-한자)/기축윤7.6.(?) ○묘지석(나4-293)있음 ○비석마모훼손으로글자인식어려움,뒷면은자연석상태임 ○왼쪽J271,오른쪽위K164,왼쪽아래K149있음
357	K174	나4-245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245)있음 ○왼쪽위K176,왼쪽아래K169있음
358	K176	나4-24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247)있음 ○왼쪽위에J259,K177있고오른쪽아래K174있음
359	K190	나4-326	무연	이씨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찾을수없음 ○왼쪽K189,아래쪽K193,오른쪽 K191 있음
360	K191	나4-346	무연	장흥마씨	단장	비석	화강석	1X0.3X0.1	1	○비석(유인장흥마씨지묘-한자)/1988.12.4. 추 ○묘지석(나4-346)있음 ○왼쪽에K190,왼쪽아래K193,오른쪽아래K22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4X0.3X0.05	1	
						석축	화강석	8X0.5	1	
361	K194	나4-273	무연	김*충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경주김공*충지묘-한글)/1984.2.4.후 ○묘지석(나4-273)있음 ○아래쪽에K195있고오른쪽아래에K196있음
						석축	화강석	4X0.5	1	
362	K209	나4-545	무연	성*옥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	1	○비석(강릉함공*옥지묘-한자)/1977.음.11.26. 12.26.후 ○묘지석(나4-545)있음 ○왼쪽에K208,오른쪽에K210있음
						상석	콘크리트	0.55X0.45X0.05	1	
						석축	화강석	7X1	1	
363	K212	묘번무	무연	조*성	단장	비석	화강석	0.4X0.3X0.1	1	○비석(한양조공*성지묘-한자)/1977.음.9.26/ 11.7.후 ○묘지석없음 ○왼쪽K211,아래K220,오른쪽 K213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64	K215	나4-518	무연	경주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유인경주최씨묘-한자)/1983.10.30. ○묘지석일부파손(나4-518) ○왼쪽K214,왼쪽아래K217,오른쪽아래K216있음
						상석	화강석	0.4X0.3X0.1	1	
						석축	화강석	8X0.5	1	
365	K22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십자가+고김*웅지묘-한글)/1985.1.24. 추 ○묘지석(나4-543)있음 ○위쪽K209,아래쪽,K67, K222 있음
366	K229	나4-347	무연	김*서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	1	○비석(안동김공*서지묘-한글)/1971.2.15. ○묘지석있음(나4-347) ○왼쪽위K191,위쪽K236,오른쪽K230,오른쪽아래K228있음
						상석	화강석	0.7X0.5X0.05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화강석	5X0.5	1	
						돌받침	화강석		5	
						측백나무		1.3	2	
367	K230	나4-349	무연	김*배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349)있음 ○왼쪽K229, 위쪽K235, 아래쪽K228, 왼쪽위에K236있음
368	K234	나4-329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329)있음 ○왼쪽에K235, 왼쪽아래K230있음
369	K236	나4-328	무연	김씨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4-328)있음 ○왼쪽아래K191, 오른쪽아래K230, 아래쪽K229 ○오른쪽에K23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70	K239	나4-205	무연	김*덕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	1	○비석(십자가+집사김*덕지묘-한글)/1984.8.16. ○묘지석(나4-205)있음 ○위쪽에시멘트길,아래쪽K327,오른쪽에K240 ○오른쪽아래에K238있음
371	K27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왼쪽위에K278과K279있고오른쪽위에K272있음
372	K28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진양강공*수지묘-한자)/1976.9.16./병진8.22. ○왼쪽K280,오른쪽아래K272,아래쪽K274 ○왼쪽아래K279있음
373	K286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74	K295	나4-623	무연	해주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25X0.14	1	○비석(유인해주최씨지묘-한자)/1964.7.11. ○묘지석(나4-623)있음 ○비석마모로뒷면인식어려움 ○왼쪽K252,위쪽에K253,K253위에서멘트길 ○아래쪽에K293있음
						석축	화강석	3X0.5	1	
						석축	화강석	2X0.5	1	
375	K299	가13-56	무연	김해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유인김해김씨지묘-한자)/단기4294.음.5.7. ○묘지석(가13-56)일부파손 ○오른쪽에K300,아래쪽에J350,오른쪽아래K314있음
						상석	콘크리트	0.42X0.3X0.1	1	
376	K302	가13-46	무연	-	단장	상석	콘크리트	0.42X0.65X0.05	1	○비석없음 ○오른쪽에K301,왼쪽아래K311,아래쪽에K310,오른쪽아래에K30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77	K312	가13-14	무연	*이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십자가+하나님의어린생명*이-한글)/1971.4.10. ○묘지석(가13-14)일부파손 ○왼쪽K313,오른쪽K311,왼쪽위K314,오른쪽위K302,오른쪽아래J348있음
						석축	화강석	3X1	1	
378	K314	가13-42	무연	황*을	단장	비석	화강석	0.4X0.3X0.1	1	○비석(황*을의묘-한글)/1979.6.12.추 ○묘지석(가13-42)있음 ○위쪽에K299(좌)K300(우),왼쪽J350,왼쪽아래K298,오른쪽아래K312,아래쪽K313있음
						석축	화강석	4X0.5	1	
						소나무		6.0	1	
						상수리나무		10.0	1	
						측백나무		6.0	1	
379	K32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에K320있고아래쪽에시멘트길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80	K331	묘번무	무연	이*수	단장	비석	대리석	0.7X0.3X0.1	1	○비석(십자가+성도이*수지묘-한자)/1954.3.23.生, /1993.2.21.후. ○비석옆면:송의감리교회 ○풀은마르고꽃은시드나우리하나님의말씀은영원히서리라하라(제40장8절)이사야 ○왼쪽K330있음
						석축	화강석	3X0.5	1	
						측백나무		2.4	1	
381	K350	나4-690	무연	김해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유인김해김씨지묘-한자/1806(?).음.6.3.生 /1987.6.21.후 ○묘지석(나4-690)있음 ○왼쪽:K349○위쪽:K351
						상석	시멘트	0.4X0.3X0.1	1	
						석축	화강석	3X1	1	
382	K351	나4-694	무연	박*대	단장	비석	화강석	0.52X0.3X0.1	1	○비석(밀양박공*대지묘-한자)/1981.음10.21./11.17.후 ○묘지석(나4-69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위쪽K266,왼쪽아래K349,아래쪽에K350있음
						상석	콘크리트	0.38X0.27X0.05	1	
						석축	화강석	8X1.3	1	
						석축2	화강석	7X1	1	
383	K354	나4-699	무연	순흥안씨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X0.1	1	○비석(유인순흥안씨지묘-한자)/ ○비석에는묘번이나4-699로되어있음 ○묘지석에는나4-698로되어있음 ○왼쪽:K353○오른쪽:K355○아래쪽:K345 ○기일:1987.4.24.
						상석	화강석	0.71X0.5X0.15	1	
						석축	화강석	6X0.7	1	
						석축2	화강석	3X0.7	1	
						돌받침	화강석		5	
384	K356	묘번무	무연	박*남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X0.12	1	○비석(고밀양박씨*남지묘-한자)/임진년.12.22. ○묘지석없음 ○위쪽에K11,오른쪽위 K356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85	K357	나4-1254	무연	최*수	단장	비석	화강석	0.6X0.15X0.1	1	○비석(해주최공*수지묘-한자)/1970.12.4. ○묘지석(나41-1254)있음 ○비석마모로인해글자인식어려움 ○위쪽에K153,아래K137,왼쪽아래K138있음
386	K359	나4-496	무연	이천*금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23X0.1	1	○비석(이천서공*지묘-한자)/1965.1.4.生 ○묘지석없음 ○왼쪽K6,아래쪽K5있음
387	K360	나4-289	무연	오*환	단장	비석	화강석	0.8X0.25X0.1	1	○비석(유인해주오씨지묘-한자)/1984.3.20.卒 ○묘지석(나4-289)있음 ○아래쪽K38,오른쪽K201,오른쪽아래K39있음
388	L23	묘번무	무연	-	단장	상석	화강석	0.65X0.5X0.2	1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오른쪽에L24있고오른쪽아래L19,아래L20,왼쪽아래L21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1	화강석	5X0.5	1	
						석축2	화강석	6X1	1	
389	L26	나4-633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8X0.3X0.1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글)/1990.3.8.후 ○묘지석없음 ○왼쪽아래L23,아래쪽L24,오른쪽L25있음
						석축1	화강석	3X0.7	1	
						석축2	화강석	6X0.7	1	
390	L30	가13-125	무연	장*우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3X0.1	1	○비석(인동장공*우지묘)한글/1990.11.21. ○왼쪽:L29○아래쪽:L31
391	L37	가13-107	무연	최*식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05	1	○비석(경주최공*식지묘-한자)/1981.9.21.후 ○묘지석훼손되어인식불가 ○왼쪽에L38, 왼쪽위 L48, 위쪽에 L50 있음
						상석	시멘트	0.5X0.5X0.1	1	
						측백나무		1.3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392	L47	가13-173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3X0.25X0.1	1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L46,오른쪽L48,L49있음
393	L4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왼쪽에L48,오른쪽L50,왼쪽아래L37,오른쪽아래L38 있음
394	L68	가13-139	무연	손*렬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	1	○비석(십자가+밀양손공*열지묘-한자)/1989.8.17.졸 ○묘지석없음 ○왼쪽에L69있음
						석축	화강석	5X0.9	1	
395	L70	가13-145	무연	정*진	단장	비석	화강석	0.9X0.3X0.07	1	○비석(하동정공*진지묘-한글)/1952.12.1.卒 ○비석뒷면내용없음,묘지석일부훼손 ○왼쪽에L71,오른쪽에L69 있음
396	L85	가13-160	무연	김*래	단장	비석	화강석	0.78X0.3X0.05	1	○비석(김해김공*태지묘-한글)/1988.음.6.11./7.20.卒 ○왼쪽에L86,L87,오른쪽에L8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4X0.4X0.05	1	
						석축1	화강석	5X0.7	1	
						석축2	화강석	4X0.4	1	
397	L91	묘번무	무연	-	단장					-
398	L94	묘번무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45X0.3X0.07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글)/1972.11.11. ○묘지석있으나번호인식불가 ○왼쪽아래L95,오른쪽L93,아래쪽L96있음
399	L100	가13-393	무연	한*선	단장	비석	화강석	0.6X0.3X0.07	1	○비석(청주한공*선지묘-한자)/1983.음.2.10./3.24.후 ○왼쪽L101,오른쪽L99,위쪽 L143, L142 있음
						상석	화강석	0.75X0.6X0.2	1	
						석축1	화강석	5X0.5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2	화강석	3X0.4	1	
400	L10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왼쪽위에L102,오른쪽에L100,아래L55,왼쪽아래L54있음
401	L103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돌마감	3X0.6	1	○비석없음 ○묘지석(가13-192)있음 ○왼쪽위L140,왼쪽아래L105,위쪽L141,아래에L104있음
402	L106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L104,왼쪽위에L103,아래쪽L54,오른쪽위에L102있음
403	L113	가13-90	무연	한씨	단장					○부속물없음,묘지석(가13-90)있음 ○왼쪽위L114,오른쪽아래K299,왼쪽에L155있음
404	L118	묘번무	무연	-	단장	묘뚜껑류		6.0	1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L119,아래쪽L107,L105,위쪽에L138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05	L120	묘번무	무연	-	단장	상석	콘크리트	0.75X0.5X0.05	1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왼쪽위L121,오른쪽L119,아래쪽L108,위쪽에L137있음
406	L123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에L124,위쪽에L122있음
407	L127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에L128,오른쪽에L126 있음
408	L137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없음,묘지석있으나해석불가 ○왼쪽에L121,오른쪽위L138,아래쪽에L120,L119 있음
409	L139	묘번무	무연	-	단장					○묘지석있으나인식불가 ○비석없음 ○왼쪽에L138,오른쪽에L140,아래쪽에L104 있음
410	L141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3X0.3	1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L140,오른쪽에L143,위쪽에L153,L15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11	L142	가13-377	무연	김*수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2	1	○비석(김해김공*수지묘-한자)/1959.음.11.27 ○왼쪽위L144,아래쪽L100,왼쪽에L143있음
412	L149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위쪽에L162,왼쪽위에L163,왼쪽에L150,왼쪽아래에L146있음
413	L153	묘번무	무연	인동장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8X0.3X0.1	1	○비석(유인인동장씨지묘-한자)/을사년.음.7.5 .후 ○비석마모로비석뒷면해독어려움 ○왼쪽L159,오른쪽에L152,위쪽에L154있음
						상석	콘크리트	0.71X0.44X0.05	1	
414	L155	묘번무	무연	-	단장					-
415	L157	가13-354	무연	김*록 김*조	합장	비석	대리석	0.9X0.3X0.1	1	○비석(의성김공*록지묘-한글)/1967.음.5.7. (연안김씨*조지묘-한글)/2002.음.11.12. ○아래L136,오른쪽위L159,오른쪽아래L158,위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쪽에L160있음
						상석	화강석	0.75X0.5X0.15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416	L15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한양조공병순지묘-한자)/1976.음.5.8./6.5.후 ○왼쪽위L157,아래쪽L138,위쪽 L159 있음
417	L159	묘번무	무연	아*용, 예씨	합장	비석	화강석	0.9X0.35X0.15	1	○비석(경주이공*용지묘-한자)/1961.6.5.후 (유인청도예씨)지묘-한자)1955.4.15.후 ○왼쪽위L160,오른쪽아래L153,왼쪽아래L157,아래L158있음
418	L16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46X0.27X0.07	1	○비석(전주이공????-한자) ○왼쪽L156,오른쪽L164,아래쪽에L15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19	L168	묘번무	무연	정*환	단장	비석	화강석	0.8X0.3X0.08	1	○비석(광주정공*환지묘-한글/1972.음.1.15. 추 ○묘지석찾을수없음 ○왼쪽L167,오른쪽 L169, 위쪽에 L199 있음
420	L170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아래L133,오른쪽L161,위쪽에L172있음
421	L1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순천현공*경(?)지묘-한자)/1970.5.17. 추 (유인창원황씨지묘 ) ○왼쪽L172,왼쪽아래L170,아래쪽L161있음
422	L172	가13-326	무연	최*환	단장	비석	화강석	0.75X0.25X0.07	1	○비석(십자가+전주최공*환지묘-한자)/1986. 음.9.25./10.28. 추 ○위쪽:L169,L174있음
						석축	화강석	3X0.5	1	
423	L17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순천현공*경(?)지묘-한자)/1970.5.17. 추 (유인창원황씨지묘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L172,왼쪽아래L170,아래쪽L161있음
424	L176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5X0.6	1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위에L175,L174,위쪽에L195,L196있음
425	L193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L194,오른쪽L192,아래쪽L178 있음
426	L200	가13-241	무연	정*식	단장	비석	화강석	0.6X0.3X0.07	1	○비석(하동정공*식지묘-한자)/1978.음.9.3./10.4.추 ○왼쪽L201,오른쪽L199,아래쪽L166,L167있음
						상석	콘크리트	0.9X0.5X0.05	1	
						석축	화강석	3X0.3	1	
						측백나무		2.0	1	
427	L223	가13-213	무연	조*단	단장	비석	화강석	0.67X0.29X0.07	1	○비석(십자가+부교조*단의묘-한글)/1981.9.13. ○왼쪽L220,오른쪽L224,위쪽L22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시멘트	0.4X0.2X0.05	1	
428	M8	나10-211	무연	이*섭	단장	비석	화강석	0.40X0.20X0.10	1	○비석(십자가+집사연안이공*섭지묘-한자)/1971.2.1.(?) ○묘지석(나10-211)있음 ○왼쪽M18,오른쪽M7,아래쪽M162(좌),M163(우),위쪽에 M176 있음
429	M18	나10-212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오른쪽에M8있음
430	M23	나10-15	무연	최*선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30X0.10	1	○비석(경주최공*선지묘-한자)/1987.음.3.17./4.14.후 ○왼쪽M24,오른쪽M22있음
						석축	화강석	10X1	1	
431	M26	나10-14	무연	남양홍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35X0.10	1	○비석(유인남양홍씨지묘-한자)/1961.음.5.20.후 ○왼쪽에M25,위쪽에M23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50X0.40X0.10	1	
						석축	화강석	2X0.5	1	
						묘뚜껑		8.0	1	
432	M2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묻혀있는시멘트재질사각형부속물있음,묘번확인할수없음 ○왼쪽M28,오른쪽에M25,위쪽에시멘트길있음
433	M35	묘번무	무연	-	단장					○묘지석없음,부속물없음 ○오른쪽에M36,M37 있음
434	M4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고김기섭지묘-한자)/단기4291.7.16. ○묘지석있음(나10-50으로추정) ○왼쪽M48,아래쪽에M35,위쪽에M50있음
435	M53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십자가+유인평강채씨지묘-한자)/1958.3.6.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나10-49)있음 ○위쪽에M51,M52있음
436	M72	나10-56	무연	유*복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20X0.10	1	○비석(강릉유공*복지묘-한자)/1978.음.11.27./1.6.후 ○묘지석(나10-56)있음 ○왼쪽M73,오른쪽M71,위쪽M74,아래쪽:M45(좌),M46(우)있음
						상석	화강석	0.40X0.30X0.05	1	
						측백나무		1.3	1	
						석축	화강석	6X0.5	1	
437	M8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3X0.5	1	○비석(유인풍양조씨지묘-한자)/1977.6.5.후 ○묘지석(나10-115)있음 ○왼쪽M81,오른쪽M79있음
438	M82	나10-112	무연	-	단장					○부속물없음 ○왼쪽에M83,오른쪽에M81,위쪽에M47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39	M85	묘번무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에M86,아래쪽에M88,M97,M96있음
440	M94	나10-138	무연	이*남	단장	비석	대리석	0.80X0.30X0.10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자)/1978.2.1. ○왼쪽에M93,위쪽에M95 있음
						상석	화강석	0.60X0.50X0.10	1	
						석축	화강석	8X0.6	1	
						돌받침	화강석		5	
441	M96	나10-128	무연	석*도	단장	비석	대리석	0.90X0.30X0.10	1	○ 왼쪽에 M95, 왼쪽아래 M94 있음
						상석	화강석	0.75X0.50X0.30	1	
						석축	화강석	10X1.1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2	화강석	11X0.8	1	
						돌받침	화강석		5	
442	M97	나10-126	무연	김*도(호)	단장					○비석(원수원석*도거사지묘-한자)/1963.계묘 정월초사일후 ○왼쪽M95,왼쪽아래M94있음
443	M106-1	묘번무	무연	김해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		○비석(유인김해김씨지묘-한자)/1988.3.20. ○묘지석없음 ○왼쪽M142,오른쪽M106,위쪽에M139있음
						석축1	화강석	4X1		
						석축2	화강석	4X1		
444	M111	나10-24	무연	김*룡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20X0.10	1	○비석(김해김공*용지묘-한자)/단기4294.음.5. 19. ○묘지석(나10-24)있음 ○왼쪽위 M16, 오른쪽 M112, 왼쪽 M110 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45	M125	나10-267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15X0.10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1972.3.4.후 ○묘지석없음 ○오른쪽M124,왼쪽아래M126,아래N84있음
446	M134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콘크리트	0.6X0.22X0.1	1	○비석(고유인김해김씨지묘-한자)/병신년.9.20 ○왼쪽M133,오른쪽에M121있음
447	M140	묘번무	무연	경주김씨	단장					○비석(유인광산김씨지묘-한자)/1979.음.4.15./5.10.후 ○묘지석있음(나10-283) ○왼쪽위M138,오른쪽아래M139 있음
448	M148	나10-111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49	M14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십자가+상주박공*지묘-한글)/1974.음7.9.졸 ○비석이 묻혀있어 뒷면 확인 불가 ○왼쪽 M96, M97 오른쪽 위 M83, 오른쪽에 M147 있음
450	M157	나10-411	무연	오성황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0X0.20X0.10	1	○비석(십자가+유인오성황씨지묘-한자)/1970.10.3. ○왼쪽 M105, 왼쪽 위 M106, 위에 M107, M108 있음
451	M158	묘번무	무연	고성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20X0.10X0.10	1	○비석(학생고성이공??지묘-한자) ○묘지석 없음 ○아래쪽 M141, 오른쪽 위 M132, 위쪽에 M130 있음
452	M16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20X0.10X0.10	1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화강석	4X0.5	1	
453	M161	묘번무	무연	동래정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0X0.30X0.10	1	○비석(유인동래정씨지묘-한자)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위M18,오른쪽에M162있음
						상석	시멘트	1X0.7X0.1	1	
						상석	시멘트	1X0.5X0.1	1	
						석축	화강석	4X0.5	1	
454	M163	나10-223	무연	-	단장					○부속물없음 ○묘번(나10-223)확인
455	M167	나10-239	무연	나주임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20X0.10	1	○비석(유인나주임씨지묘-한자)/1971.음.정월.7.후 ○오른쪽M168,위쪽에M16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56	M168	나10-240	무연	-	단장					○부속물,묘지석없음 ○왼쪽위에M169,왼쪽에M167 있음
457	M170	묘번무	무연	금성리(나)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20X0.10	1	○비석(유인금성나씨지묘-한자)/1972.28.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10-○7) ○왼쪽아래M164,오른쪽아래M165있음
458	M1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시멘트재질의심자가있음 ○오른쪽위에M116있음
459	N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3X0.3X0.2	1	○비석(상부깨져서없어짐) (○○○○책 지묘-한자) ○묘지석(나10-151) ○왼쪽M153,아래쪽에N5있음
						수목		2.0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뚜껑		12.0	1	
						소나무		3.0	1	
460	N10	묘번무	무연	-	단장					-
461	N26	묘번무	무연	장*수	합장	비석	화강석	0.47X0.22X0.11	1	○비석(고장*주지묘-한자)/1968.3.2(?)5. ○묘지석일부파손(나6-18○) ○왼쪽N25,위쪽에N221있음
462	N28	나6-181	무연	심*난	단장	석축	화강석	6X0.6	1	○비석없음 ○묘지석(나6-181)있음 ○오른쪽N27,위쪽N23,오른쪽위N2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63	N33	나10-31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음(나10-317) ○위쪽에N34있음
464	N3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덕수이공*무지묘-한자)/단기4290.3.15. .후 ○묘지석없음 ○먼원쪽K134,먼원쪽아래K133있음
465	N41	나10-427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10-427)있음 ○오랜기간관리가안된것으로보임
466	N49	나10-352	무연	문*동	단장	비석	대리석	0.7X0.4X0.15	1	○비석(십자가+집사이*규지묘)/1993.1.11. 성도문*동지묘)/1990.4.30. ○묘지석찾을수없음 ○왼쪽N50,왼쪽위N208,오른쪽아래N47,위쪽N207있음
467	N6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없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왼쪽 N62, 왼쪽아래 N60, 오른쪽아래 N59 있음
468	N70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묘지석없음 ○왼쪽N68, 위쪽N60(좌), N59(우)있음
469	N7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오른쪽위에N69있고오른쪽에N11있음
470	N74	나10-288	무연	김*한	단장	비석	화강석	0.62X0.4X0.07	1	○비석(안동김공*한지묘-한자)/1972.음.8.26. ○묘지석(나10-288, 나10-298)있음 ○위쪽M109, 오른쪽위N78, 오른쪽아래N75, 아래쪽에N64있음
						석축1	화강석	6X0.5	1	
						석축2	화강석	5X0.5	1	
471	N75	나10-297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5X0.5	1	○비석없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나10-297)있음 ○왼쪽N78,왼쪽위N74,왼쪽아래N64, ○오른쪽아래N75-1,오른쪽위N76,아래쪽에N62있음
472	N7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위N78,오른쪽아래N77,아래쪽N75-1,왼쪽아래 N75 있음
473	N7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위쪽N80,왼쪽N78,아래쪽N77있음
474	N80	묘번무	무연	정*원 김*래	합장	비석	대리석	0.8X0.32X0.11	1	○비석(온양정공*원지묘-한자) (경주김씨*래지묘-한자) ○묘지석있음(나10-296)?으로보임 ○오른쪽N81,위쪽M128,아래쪽N79,왼쪽아래N78있음
						상석	화강석	0.25X0.32X0.02	1	
475	N86	묘번무	무연	-	단장	상석	시멘트	1X0.5X0.2	1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오른쪽에N85,아래쪽에N84있음
						석축1	화강석	5X1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2	화강석	5X1	1	
476	N95	나10-540	무연	장*천	단장	비석	화강석	0.62X0.27X0.09	1	○비석(인동장공*천지묘-한자/1979.음.8.2.卒)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위N93,오른쪽N96있음
477	N114	묘번무	무연	나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2X0.27X0.09	1	○비석(유이나주나씨지묘-한자).1976.음.3(?).2(?). ○묘지석없음 ○비석뒷면:마모로인해글자인식어려움 ○왼쪽위N111,오른쪽아래N125,아래쪽N123,왼쪽아래N124있음
478	N121	나9-2	무연	최*열	단장	비석	대리석	0.79X0.4X0.09	1	○비석(경주최공*열지묘-한글)1979.7.27.卒 ○묘지석(나9-2)있음 ○위쪽N125,아래쪽N134,왼쪽아래N133있음
						묘둘레석	대리석	1X1X0.2	1	
479	N12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N123,아래쪽N122(좌),N121(우),왼쪽위N11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80	N127	묘번무	무연	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7X0.4X0.1	1	○비석(유인청주한씨지묘-한글)/1980.음.3.22./5.6.쭉 ○묘지석없음 ○위쪽N124,왼쪽아래N169,왼쪽N126,오른쪽N146,아래쪽N168(좌),N167(우)있음
						상석	콘크리트	0.5X0.7X0.15	1	
						석축1	화강석	6X0.3	1	
						석축2	화강석	7X1.2	1	
						수목		2.0	2	
481	N13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일부파손으로인식불가 ○왼쪽아래N144,왼쪽N137,왼쪽위N134,위쪽N135 ○아래쪽N143있음
482	N145	나9-30	무연	경주김씨	단장	비석	대리석	0.82X0.31X0.11	1	○비석(유인경주김씨지묘-한자)/1986.음.7.4.쭉 ○묘지석없음,비석에묘번있음(나9-30) ○위쪽:N138(좌),N137(우),오른쪽N144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6X0.51X0.12	1	
						석축1	화강석	6X1.5	1	
						석축2	화강석	5X1.4	1	
						돌받침	화강석		6	
						꽃병	화강석		1	
						측백나무		1.5	1	
483	N15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묘지석없음 ○왼쪽N166, 오른쪽N154, 왼쪽위N146있음
484	N158	나6-38	무연	홍*원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1	1	○비석(남양홍공*원지묘-한자)/1977.음.5.29/ 7.15.후 ○묘지석(나6-38)있음 ○왼쪽N159, 오른쪽N157, 위쪽N228있음
485	N161	나6-50	무연	이*현	단장	비석	화강석	0.5X0.25X0.1	1	○비석(십자가+전주이공*현지묘-한글)/1986.9.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14. 후 ○묘지석(나6-50)있음 ○왼쪽N162,오른쪽N160,아래쪽N203있음
						석축	화강석	5X0.5	1	
						꽃병	화강석		1	
						측백나무			2	
486	N16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유인보성선씨지묘-한자)/1970.7.27.후 ○묘지석(나6-47)있음 ○왼쪽N167,오른쪽N155,위쪽N146있음
487	N167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2X0.5	1	○비석없음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N168,오른쪽N166,왼쪽위N126,오른쪽위N146, 위쪽 N124 있음
488	N169	나10-359	무연	이*섭	단장	비석	대리석	0.5X0.25X0.1	1	○비석(전주이공*섭지묘-한자)/1988.음.6.12./7.25.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N170,오른쪽N168,위쪽N126 있음
						측백나무		2.0	1	
489	N17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6X0.3X0.1	1	○비석(유인한양조씨지묘-한자)/1979.음.7.17.후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N174,왼쪽아래N176,아래쪽에N172있음
						석축	화강석	4X0.5	1	
490	N177	묘번무	무연	손*규	단장	비석	대리석	0.6X0.3X0.1	1	○비석(십자가+집사손*규지묘-한글)/1993.1.6.(소천)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불가 ○왼쪽에N178,위쪽에N104있음
						석축	화강석	4X0.5	1	
491	N187	묘번무	무연	박*재	단장	비석	화강석	0.5X0.3X0.1	1	○비석(밀양박공*래지묘-한자)/1979.음.5.15. ○묘지석없음 ○왼쪽N186,오른쪽위 N188 있음
492	N208	나10-355	무연	한*석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	1	○비석(십자가+성도한*석지묘-한자)/1984.6.2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 추 ○묘지석(나10-355)있음 ○오른쪽N207,오른쪽아래N49,아래쪽N50있음
						상석	시멘트	0.35X0.2X0.05	1	
493	N213	묘번무	무연		단장	석축	화강석	5X0.5	1	○비석,묘지석없음 ○왼쪽N212,오른쪽N214,아래쪽N224있음
494	N216	묘번무	무연	박씨	단장	비석	대리석	0.6X0.3X0.1	1	○비석(유인음성박씨지묘-한자)/1966.7.18.(음).6.1. 추 ○묘지석없음 ○왼쪽아래N215,오른쪽에N216있음
						상석	화강석	0.5X0.4X0.1	1	
						돌받침	화강석		5	
495	N219	묘번무	무연	-	단장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496	N22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묘지석없음 ○왼쪽아래N238, 오른쪽아래N233, 아래쪽N234 있음
497	N234	나6-20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6-20)있음 ○왼쪽아래N231, 위쪽N236, 오른쪽아래N237, 아래쪽 N222 있음
498	N240	나9-72	무연	배*영	단장	비석	화강석	0.4X0.3X0.1	1	○비석(경주배공*영지묘-한글)/1969.2. ○묘지석없음 ○왼쪽P170, 오른쪽N239, 오른쪽아래N245있음
499	P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P7, 오른쪽위P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00	P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찾을수없음 ○오른쪽위P4있음
501	P3	나7-164	무연	조*구	단장					○비석(한양조공*구지묘-한자)/1986.4.7.(음)/5.19.卒 ○묘지석찾을수없음 ○왼쪽아래P2있음
502	P5	나7-199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찾을수없음 ○왼쪽P9,오른쪽P2,오른쪽위P3,왼쪽아래P7있음
503	P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76X0.49X0.15	1	-
						돌받침	화강석		4	
504	P7	나7-174	무연	심*수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4X0.1	1	○비석(고청송삼공*수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시멘트재질비석있음 ○오른쪽위에P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05	P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묘지석없음 ○왼쪽아래P7있음
506	P1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6-491)있음 ○왼쪽위P20, 아래쪽P11, 오른쪽위P18있음
507	P21	나9-196	무연	유인원씨 아순	합장	비석	화강석	0.75X0.3X0.12	1	○비석(안성이공*순지묘-한자)1973.음.8.3.후 (유인원주원씨지묘-한자)1964.양.8.8.후 ○왼쪽위P23, 왼쪽아래P22있음
508	P22	나9-199	무연	원주원씨	단장	비석	콘크리트	0.8X0.26X0.12	1	-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09	P24	나9-176	무연	해주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X0.25X0.12	1	○비석(십자가+유인해주최씨의묘-한글)/1978.6.21.후 ○묘지석(나9-176)있음 ○왼쪽P25,오른쪽P23,오른쪽아래 P22 있음
						석축	화강석	3X0.4	1	
510	P27	나6-489	무연	창원황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35X0.12	1	○비석(유인창원황씨지묘-한자)/1971.음.5.12./7.4.후 ○묘지석(나6-489)있음 ○위쪽에P60(좌),P61(우)있음
						상석	화강석	1.2X0.7	1	
511	P31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먼아래쪽에C292있음
512	P3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2	1	○비석,묘지석없음 ○먼오른쪽위에P38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13	P50	나6-337	무연	김*순	단장	비석	대리석	1.1X0.4X0.3	1	○비석(십자가+집사김*순지묘-한자)/1956.5.20.후 ○묘지석없음,비석에묘번있음(나6-337) ○왼쪽P49,아래쪽에P45,위쪽 P111 있음
514	P60	나6-479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6-479)있음 ○위쪽에P64,왼쪽위P59,오른쪽에P61,아래쪽에P27있음
515	P63	묘번무	무연	-	단장	향나무		1.5, 2	2	○비석없음 ○왼쪽에P62,아래쪽에P25(좌),P24(우)있음
516	P68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P67,위쪽에P69,아래쪽에P66있음
517	P75	묘번무	무연	선*선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나9-161)있음 ○위쪽에P83,왼쪽위에P76,오른쪽에P73,오른쪽아래P17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18	P76	나9-181	무연	경주김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X0.3X0.15	1	○비석(유인경주김씨지묘-한자)/196(?)음.2.9. ○묘지석(나9-181)있음 ○오른쪽위P83,오른쪽아래P75,아래쪽에P70있음
519	P80	나6-317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나6-317)있음 ○왼쪽에P137,오른쪽에P81,아래쪽에P135있음
520	P83	나9-125	무연	청주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	1	○비석(유인청주한씨지묘-한자) ○묘지석(나9-125)있음 ○위쪽P82(좌),P86(우),아래쪽에P75,왼쪽아래P76있음
						상석	콘크리트	1X0.7	1	
521	P96	나6-270	무연	양*례	단장	비석	화강석	0.65X0.25X0.12	1	○비석(십자가+기독교인양*례지묘-한자)/주후1959.6.30.영면 ○묘지석없음 ○왼쪽P97,오른쪽P95,아래쪽P142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1	화강석	3X0.2	1	
						석축2	화강석	6X0.7	1	
522	P112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3X0.5	1	○비석,묘지석없음 ○왼쪽P113,오른쪽에P46,위쪽에P108있음
523	P122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십자가+창원황*균의묘-한글/1958.음.10.10.후) ○묘지석(나6-239)있음,자료에는묘번없음 ○왼쪽에P123,오른쪽에P121,아래쪽에C383있음
524	P133-1	묘번무	무연	밀양박씨	단장	비석	콘크리트	0.55X0.25X0.08	1	○비석(유인밀양박씨지묘-한자) ○묘지석없음 ○시멘트재질비석있음 ○오른쪽위P141,아래쪽:P138,오른쪽아래:P181
						석축	화강석	3.6X0.3	1	
525	P134	나6-320	무연	탐진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25X0.12	1	○비석(유인탐진최씨지묘-한자)/1968.음.4.15. ○묘지석(나6-320)있음 ○왼쪽P135,위쪽P81,아래쪽P69,오른쪽P77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음
526	P139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묘지석없음 ○왼쪽아래P95,오른쪽아래P94,오른쪽위P133-1,오른쪽 P38 있음
527	P142	묘번무	무연	신씨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5X0.1	1	○비석(유인영월신씨지묘-한자)/1974.9.3.추 ○묘지석(나6-256)있음 ○왼쪽위P97,위쪽P96,오른쪽위P95,왼쪽아래P103,아래쪽:P104,오른쪽아래P105있음
528	P145	나9-113	무연	-	단장					○비석없음,묘지석있음(나9-113) ○위쪽P144,오른쪽위P149있고오른쪽에P146있음
529	P147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2X0.5	1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위에P146,오른쪽에P148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연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30	P150	나6-290	무연	파평윤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2	1	○비석(유인파평윤씨지묘-한자)/1960.음.7.26.쭈. ○묘지석(나6-290)있음
531	P154	묘번무	무연	안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	1	○비석(죽산안공*봉지묘-한자)/1976.4.25./음.3.26.쭈 ○묘지석(나6-245)있음 ○왼쪽에P155,오른쪽아래에P98,아래쪽에P99 ○왼쪽아래P100있음
532	P155	묘번무	무연	윤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3	1	○비석(고파평윤공*영지묘-한자)/1967.음.6.24.쭈 ○묘지석없음,비석뒷면내용없음 ○오른쪽P154,아래쪽P100,오른쪽아래P99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33	P161	나6-287	무연	문*례	단장	비석	화강석	0.72X0.3X0.12	1	○비석(십자가+성도문*레지묘-한글)/1987.8.17. 추. ○묘지석(나6-287)있음 ○왼쪽P160,왼쪽아래P162,왼쪽위P156있음
534	P168	묘번무	무연	-	단장	석축	화강석	5X0.3	1	○쓰러진비석있음,앞내용은확인할수없음 ○오른쪽위P157,아래쪽P164,왼쪽아래P165있음
535	P175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4X0.3X0.1	1	○비석(고유인항(?)(?)경-한자)/단기4299.8.16.(?) ○묘지석없음 ○시멘트재질비석임,전면에만글자가있으나마모등으로인식어려움 ○오른쪽P176,위쪽P73,아래쪽P180,오른쪽위P174있음
536	P176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	화강석	0.6X0.2X0.1	1	○비석(고이연(?)성지묘-한자)/1971.7.24. 추. ○묘지석없음,비석뒷면글자없음 ○왼쪽P175,오른쪽P177,위쪽P174,왼쪽아래P180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537	Q7	묘번무	무연	-	단장					○비석없음 ○묘지석없음 ○왼쪽Q8,오른쪽위팔각정,위쪽에시멘트도로있음
538	Q14-1	묘번무	무연	-	단장	계단	적벽	11계단(계단 당 20EA)	1	○오른쪽Q12,아래쪽Q14,위쪽에시멘트도로,왼쪽아래 Q15 있음
539	Q33	나10-196	무연	최씨	단장	비석	화강석	0.70X0.3X0.10	1	○비석(유인경주최씨지묘-한자)/1985.음.12.30.후 ○묘지석없음 ○왼쪽에Q32있음
						상석	화강석	0.60X0.40X0.15	1	
						석축	화강석	8X0.5	1	
						석축2	화강석	5X0.5	1	
						돌받침	화강석		6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꽃병	화강석		1	
540	R25	묘번무	무연	-	단장	측백나무				○비석및묘지석없음 ○왼쪽아래R23있음
541	R51	나9-461	무연	전주이씨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30X0.10	1	○비석(유인전주이씨지묘-한자)/1982.음.9.14./10.19.후 ○묘지석(나9-461)있음 ○위쪽에R49,오른쪽아래R52있음
						석축	화강석	3X0.5	1	
						석축2	화강석	1.5X0.3	1	
542	R58	나9-464	무연	김*선	단장	비석	화강석	0.50X0.30X0.10	1	○비석(김*선의묘-한글)/1989.8.?.立. ○묘지석(나9-464)있음 ○오른쪽에R57,오른쪽아래에R56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시멘트블럭	3X0.5	1	
543	R59	나9-465	무연	김*욱	단장	비석	대리석	0.75X0.30X0.10	1	○비석(광산김공*욱지묘-한글)/1988.음.8.9.卒 ○묘지석찾을수없음,비석에묘번있음(나9-465) ○왼쪽에R57,왼쪽아래R56있음
						상석	화강석	0.60X0.40X0.10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석축	화강석		1	
544	R82	나8-257	무연	수원백씨, 허*대	합장	비석	대리석	0.8X0.6X0.15	1	○비석(김해허공*대지묘-한자)/1996.10.7.음.8.25.卒 (유인수원백씨지묘-한자)/1981.9.7.음.8.10.卒 ○비석에나8-257기록되어있음 ○왼쪽R83,오른쪽아래R91,아래쪽R89.R90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70X0.50X0.15	1	
						돌레석	화강석	1.7X2.5X0.5	1	
						돌받침	화강석		5	
						석축	화강석	4X0.9	1	
						석축2	화강석	2.5X1	1	
						꽃병			1	
						돌받침	화강석	0.2X0.2X0.05	1	
545	R93	나9-509	무연	고*옥	단장	비석	대리석	0.9X0.3X0.10	1	○비석(제주고공*옥지묘-한자)/1992.12.26. 추 ○묘지석(마8-549)있음 ○오른쪽R94,위쪽R90(좌),R91(우)있음
						상석	화강석	0.6X0.4X0.10	1	
						돌	화강석	0.6X0.7X0.05	1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무연	매장자(성명)	분묘형태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석축	화강석	6X0.5	1	
						석축2	화강석	3X0.5	1	
						돌받침	화강석		6	
546	R110	나10-673	무연	박*철	단장	비석	대리석	0.8X0.27X0.10	1	○비석(밀양박공*철지묘-한자/1993.음.12.26/1.18.췁 ○묘지석있으나,묘번인식어려움 ○오른쪽위R113,오른쪽R111,아래쪽R108있음
						상석	화강석	0.75X0.5X0.15	1	
						석축	화강석	3X0.4	1	
						석축2	화강석	3.5X0.4	1	
						돌받침	화강석		6	
						노간주나무		1.5	1	
547	R124	나8-336	무연	민*규	단장	비석	대리석	1X0.3X0.10	1	○비석(십자가+여흥민공*규지묘-한자)/1981.음.7.17.췁 ○묘지석없음 ○위쪽R122,왼쪽아래R128,왼쪽R125있음

연번	조서번호	묘번	유구연 구연	매장자 (성명)	분묘 형태	물건 종류	구조	규격	수량	기타사항
						상석	화강석	0.65X0.5X0.2	1	
						돌받침	화강석	0.65X0.5X0.03	1	
						석축	화강석	7X0.3	1	
						돌받침	화강석		5	
						꽃병	화강석		1	
						측백나무		1.0	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06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6.03. ~ 2019.06.17.(15일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9년 07월 15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07월 15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183	박**	인천광역시중구 참외전로 88-34 ****호 (전동, 나농빌라)	좌 동	2019.03.13 . 13:33.	서구 당하동 드림로	폭0.47미터 초과(폭2.97미터)	98라*** *	500,000	반송(수취 인불명)	
2	000184	윤**	경기도부천시 중동로280번길 63 , ****호 (중동, 중흥마을)	“	2019.03.14 . 10:06.	연수구 송도동 송도바리오대로	축하중1.35톤 초과(3축하중11.35 톤)	경기06 조****	500,000	반송(수취 인불명)	
3	000185	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미라15길 24 , **** (쌍용동, 대우타워아파트)	“	2019.03.14 . 13:59.	계양구 효성동 봉오대로	축하중1.50톤 초과(3축하중11.50 톤)	인천06 아****	700,000	반송(폐문 부재)	
4	000187	강*	서울특별시관악구 국회단지**** (봉천동)	“	2019.03.14 . 08:24.	서구 가정동 봉수대로	높이0.23미터 초과(높이4.23미터)	82가*** *	300,000	반송(폐문 부재)	
5	000207	김**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신평로172번길 **** (해럴드원룸)	“	2019.03.19 . 10:33.	서구 연희동 봉수대로	높이0.28미터 초과(높이4.28미터)	경기91 바****	300,000	반송(이사 감)	
6	000215	박**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로352번길 **** (가정동)	“	2019.03.22 . 10:20.	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축하중1.70톤 초과(4축하중11.70 톤)	인천06 바****	500,000	반송(폐문 부재)	
7	000223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암산로**** (십정동)	“	2019.03.25 . 13:52.	서구 가정동 봉오대로	축하중1.20톤 초과(4축하중11.20 톤)	인천06 아****	500,000	반송(폐문 부재)	
8	000228	김**	인천광역시서구 봉화로 60-17 , ****오류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3차1단지)	“	2019.03.22 . 14:39.	중구 향동 인중로(향동과적검 문소)	축하중1.79톤 초과(4축하중11.79 톤)	87로*** *	700,000	반송(폐문 부재)	
9	000234	장**	경기도시흥시 서촌상가2길 ****호 (정왕동)	“	2019.03.26 . 16:28.	중구 신흥동3가 축하대로	폭1.10미터 초과(폭3.60미터)	경기98 아****	1,000,000	반송(수취 인불명)	
10	000237	권**	인천광역시연수구 청량로155번길 ***** (옥련동, 메종드제이)	“	2019.03.26 . 15:04.	연수구 동춘동 앵고개로	높이0.28미터 초과(높이4.28미터)	경기94 사****	300,000	반송(폐문 부재)	
11	000257	박**	강원도평창군진부면송정택지1길 ****호 (성원아파트)	“	2019.04.01 . 10:12.	서구 신현동 봉수대로	폭0.24미터 초과(폭2.74미터)	인천98 자****	300,000	반송(수취 인불명)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6호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 시 발주청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기술검토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기준, 처리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에 따른 발주청의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 중 공무원 직군의 자격, 담당업무 및 부위원장의 직무위임 조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위원 청렴서약서 징구, 회의록, 관계서류의 보관, 준공 후 실명표지판 설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205호(송도동 미추홀타워 건설심사과)

- E-mail : lth10@korea.kr

- 팩스: 032-440-8617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심사과(전화: 032-440-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요청) ①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

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신기술 후보군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후보 신기술과의 차별성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가.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

나.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항: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8.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6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가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선정: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선정: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가. 필요: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가. 시행: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5.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 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고된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시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회의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 후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 중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실명표지판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3호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8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이 50%로 되어있어,
-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과 공영주차장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을 80%로 상향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서 정한 단서 조항(단, 나목은 50%퍼센트 감면) 삭제
  - 나목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 내용 중 1~6등급 삭제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 바. (생략)  
2. ~ 11.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11.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제32조(장애인 등록)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주차장 사업에 대한 비용이 아닌 주차 수입에 대한 검토임
- 주차장 회전율이 높은 문예회관 등 18개소의 2018년도 장애인 주차요금 징수는 3천7백752천원, 49,66건으로 감면효율을 80% 상향할 경우 년 2천2백651천원의 주차수입이 감소함.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14호

##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의 요율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정금고의 연체요율(약 3~4%)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납부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연체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
-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확대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 변경(안 제4조제3항)
- 상위 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6조제4호)
-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기관 확대(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을 “영 제14조제5항”으로, “따른다”로 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 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를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3호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공사·공단에”를 “공사

· 공단,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제  
2항에 따른다”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  
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생략)

제6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  
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  
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  
는 행위.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  
-----  
--- 따른다.

③ -----  
----- 경우에는 영 제  
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현행과 같음)

4. ----- 「소음  
·진동관리법」-----  
-----  
-----

5. 그 밖에 -----  
-----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

2.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3개월 -----

4. 제6조에 따른 -----

5. -----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

제8조(관리의 위탁) -----  
----- 각 호 -----

----- 공사·공단,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

1. 제3조에 따른 -----

2. 제5조제2항에 따른 -----

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3. 제6조에 따른 -----

-----

4. 제7조에 따른 -----

-----

5. 그 밖에 -----

-----

--

제10조(준용) -----

-----

-----

-----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 ○ 제80조(연체료의 징수)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80조(연체료의 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

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부담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

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사용자 연체료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관련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안 제4조)
-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교통공사에 공영버스차고지를 위탁대행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운송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 되는 것은 아님(안 제8조)

4. 작성자 :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5호

##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8조)

라.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6조)

마.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제18조)

바.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사.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아.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2장 아동친화도시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구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

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9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제시,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거주 하는 재학생 및 학교 밖 아동
2.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아동
3. 장애아동시설·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③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담당이 된다.

④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전학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5.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경우

6. 그 밖에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최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아동참여위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및 반영 등) ① 시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참여위원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1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생활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20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아동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체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조례안 제14조(지원 등)**

-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7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생활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8조(아동영향평가)**

- ①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조례안 제22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 억 원 미만인 경우

##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61,997	132,625	48,200	13,200	43,200	299,22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2,240	2,240	3,200	3,200	3,200	14,080
아동실태조사	59,757		30,000		30,000	119,757
	※여성가족 재단 출연금					
아동영향평가 용역		120,385				120,385
홍보			5,000			5,000
아동 참여위원회 수당 등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19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경기침체의 지속·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6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등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0(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u>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p><b>□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b></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li> <li>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li> <li>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li> <li>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li> <li>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li> <li>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li> </ol> </li> </ol> <p>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16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최초 설치 : 100,000천원/1회

- 운영비 : 20,000천원/년

- 인건비(4명) : 200,000천원/년

나. 추계 결과

1) 비정규직 지원센터 : 1,2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시설비	100,000	0	0	0	0	100,000
	운영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인건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재원 조달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국 비							
시비	소 계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일반회계	3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2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군 구
-----

인천광역시용진군고시 제2019-60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 ☎032-899-3914), 영흥면사무소 (☎032-899-3810)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6. 3.

### 인천광역시 용진군수

####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용진군 영흥면 선재리 3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결정(변경)(안) 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공공문화 체육시설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3번지 일원	10,511	10,511	-	2005. 6.27. (옹진군 고시 제2005-112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학교	· 기 정 : 10,511㎡ · 변경후 : 10,511㎡	○ 2015. 2.28. 폐교된 영흥초 선재분교에 가칭 '제2교직원수려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시설:학교)폐지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45호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237번지
  - 면 적 : 1m<sup>2</sup>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 내 역 :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5.28.~2024.05.27.(2019.05.28.~2019.06.17.)